

# 면지

## (표지와 같음)

###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예정도서목록(CIP)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연구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 저자: 서원선, 이찬우,  
고아라. -- 서울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p. ; cm

권말부록 수록  
ISBN 978-89-6921-217-7 93330 : 비매품

장애 이해 교육 [障碍理解教育]  
장애인 복지법(법률) [障碍人福祉法]

338.3-KDC6  
362.4-DDC23

CIP2016015974



## 연구진

연구 책임 : 서 원 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이 찬 우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사무총장)

고 아 라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원)

## 자문위원

우 주 형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교수)

조 한 진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 인 환 (한국장애인재단 사무총장)

김 웅 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사무관)

## ▷ 발간사

전통적으로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로서 비장애인과 비교해 차별 혹은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수천년 동안 부정적이었으며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시각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사회활동, 사회참여, 직업 유지 등의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은 장애인 재활에 부정적인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서 장애에 대한 그릇된 시각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유엔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과 UN ESCAP 인천전략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강조함과 동시에 부정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긍정적인 인식 형성을 위한 각국의 책임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의 중요성은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영국평등법(Equality Act),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여러 국가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미국장애인법에서는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대상, 범위, 내용 등을 제시함으로써 장애인이 교육·직업·일상생활 등 모든 사회 환경 속에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하게 시험편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형에 적합한 시험편의는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공정한 환경에서 시험에 참여하는 중요한 편의 서비스 중 하나이며 장애인이 본인의 잠재력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조치이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정당한 시험편의 제공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 법령 개정에 기초적인 자료와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모든 연구 참여자들이 제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용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의견으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귀한 의견을 주신 장애인단체 및 관련 기관의 실무담당자,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하는 시작부터 결론을 짓는 마무리 단계까지 연구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자문해주신 나사렛대학교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님,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님, 한국장애인재단 서인환 사무총장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김웅년 사무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책임을 맡아 진행한 서원선 부연구위원과 공동연구자인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이찬우 사무총장님, 우리 원 고아라 연구원에게 감사를 표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가 향후 장애 인식개선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개선정책의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2016년 6월

한국장애인개발원 원장 **황 화 성**



## 목 차

연구 요약 .....	1
<b>I. 서론</b> .....	29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31
2. 연구 범위 및 방법 .....	34
3. 연구수행체계 .....	36
<b>II.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b> .....	39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	41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현황 .....	57
<b>III.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b> .....	81
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해외 및 국제 법률·조약 .....	83
2. 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편의 해외 사례 .....	94
<b>IV.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b> .....	117
1. 조사개요 .....	119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123
3.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	132
4. 시험 실시 기관(규제대상 기관) 관계자 간담회 결과 .....	139
5. 소결 .....	140
<b>V. 결론 및 정책제언</b> .....	143
1. 장애 인식개선 .....	145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	151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	155
<b>부 록</b> .....	173



## ▶ 표 목 차

〈표 2-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범위 .....	41
〈표 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특강 .....	44
〈표 2-3〉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 .....	45
〈표 2-4〉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과정표 .....	46
〈표 2-5〉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내용 .....	47
〈표 2-6〉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내용 .....	47
〈표 2-7〉 국립재활원 장애발생 예방교육 현황(연도별 누계) .....	48
〈표 2-8〉 국립재활원 장애발생 예방교육 현황(2015년도) .....	49
〈표 2-9〉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장애체험교육 실적(2015년) .....	49
〈표 2-10〉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총괄 현황(2015년도) .....	50
〈표 2-11〉 EDI 프로그램 내용 .....	51
〈표 2-12〉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교육내용 .....	52
〈표 2-13〉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2015년도 기준) .....	53
〈표 2-1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인식개선 교육) .....	54
〈표 2-1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휠체어 럭비 체험) .....	54
〈표 2-16〉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창작인형극) .....	55
〈표 2-17〉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인식개선 교육 내용 .....	55
〈표 2-18〉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 인식개선 영상물 목록 .....	56
〈표 2-1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 목록 .....	57
〈표 2-20〉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 .....	62
〈표 2-2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	73
〈표 2-2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74
〈표 3-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CRPD 조문 .....	85
〈표 3-2〉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인천전략 주요 내용 .....	88
〈표 3-3〉 장애인 주간 행사 주요 내용 .....	90
〈표 3-4〉 IELTS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	106
〈표 3-5〉 일본 시험편의와 관련된 법령 .....	111
〈표 3-6〉 교원시험을 지원한 장애인에게 제공한 시험편의의 내용(전체 62개 현 중) .....	112
〈표 3-7〉 장애 유형 및 시험편의 지원사항 .....	113

〈표 3-8〉 자격취득 시험 시 장애인 시험편의	114
〈표 4-1〉 전문가의견조사 응답자	120
〈표 4-2〉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120
〈표 4-3〉 간담회 참석자	121
〈표 4-4〉 전문가의견조사 내용	122
〈표 4-5〉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터뷰 분석결과	132
〈표 5-1〉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59
〈표 5-2〉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160
〈표 5-3〉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별지	161
〈표 5-4〉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163
〈표 5-5〉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164
〈표 5-6〉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165



## ↘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 37



# 연구 요약





# 연구 요약

## I.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함. 2015년 12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장애인은 취업과 관련된 자격 및 채용 시험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특히 불충분한 시험편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하고 있음.
-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였음.
- 연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음.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정하였음.
- 첫째, 제2장에서는 인식의 개념, 장애 인식의 중요성, 장애 인식개선 방법 등을 고찰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였음. 또한 여러 장애인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등을 조사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도출하였음. 그리고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해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편의의 내용,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음.
- 둘째, 제3장에서는 국제적인 법규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의 방법, 내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구체적으로 국제조약과 일본에서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각각의 개념이나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를 모색하였음. 더불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종류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시험편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음. 특히 시험편의와 관련해 각 국의 법률 및 제도적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셋째, 제4장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와 관련된 장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음. 전문가의견조사는 서면을 통한 개별 면접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애 유형,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음.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 및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음. 이와 함께,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 기관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공 주체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고충 등을 분석하였음.

- 넷째, 제5장에서는 2장의 국내 현황, 3장의 국외사례 시사점, 4장의 전문가 의견조사 결과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마련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제시하였음. 이와 더불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였음.

## 2) 연구 방법

-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 등을 병행하였음.



## II.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분류

-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았으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크게 인권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교육으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함.
-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음.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권익 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힘찬 첫 걸음, 장애인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서 복지현장에서는 장애의 이해와 예방 중심, 장애체험 등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근로현장에서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시청각 교육, 강의식, 체험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음. 강사양성교육은 각 단체별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강사를 양성하는 추세임.

#### 2)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국립재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인식개선센터 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관별 교육 현황을 분석함.

##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현황

### 1)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개념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험 및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 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의 4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문’에 의하면 편의지원 대상 및 범위, 장애 유형별 시험편의 지원의 내용, 시험편의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음(인사혁신처, 2016).
-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 및 국가공인시험의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본 장에서는 현재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법률 등을 조사하여 법적 현황을 살펴봄.

###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 현황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임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 3)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 및 방법

#### (1) 인사혁신처

-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에 장애인 등 편의지



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상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특수·중복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음.

- 매뉴얼에 제시된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을 토대로 응시자가 본인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확인한 후 응시원서 접수 시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하고 해당자는 증빙서류를 제출함. 인사혁신처에서는 장애인 등록정보 조회 및 증빙서류를 검토한 후 적합 여부를 판단해 편의지원서비스 제공 여부를 안내함.

### (2)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

-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의 경우에는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시험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함. 국가전문자격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장애유형별 응시편의 제공 및 증빙서류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의 경우에는 2016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응시자는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이 신청 가능한

---

편의지원 내용과 제출서류를 확인하고 장애인 편의제공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 및 등급 선택 후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내용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증빙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함. 제출서류가 편의제공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서울시인터넷원서 접수센터에 검토결과를 게시하고 신청자는 이를 확인하여야 함.



### III.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 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해외 및 국제 법률·조약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8조(인식개선)에서는 장애인의 부정적 및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더불어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 제24조(교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해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히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25조(건강)에서도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음.

##### 2) 인천전략(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달성과 함께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과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장애인가족 옹호 단체,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시민 사회를 참여시키고,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 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상황을 평가·보고 함. 또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인식 강화를 위해 ‘장애인 권리 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과 같은 국가 및 하부국가 단위 캠페인을 수행함.

### 3) 일본

#### (1) 법적 근거

- 「인권교육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전문 9조 및 부칙 2조로 구성 되어 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2) 장애 인식개선의 사례

##### ① 장애인 주간

- 「장애자기본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도모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음(법 제7조).
- ‘장애인 주간’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공생사회(장애 여부에 상관 없이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이념 보급,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방법 혹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시 등임(남용현, 2011; 장애자기본법, 2016).

##### ② 장애인 고용 관련 인식개선

- 장애인 고용과 관련하여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고용에 대하여 사업주 및 기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고나 기타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법 제76조).
-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고용 지원 주간’을 설정하여 일본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후생노동성,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주 및 전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③ 교육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 일본에서는 각급(초·중·고) 학교에서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교육이 실시 되고 있음. 따라서 별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하기 보다는 법에서



적시한 과정의 하나로 통상적인 방식에 의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인권교육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6).

- 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 지방교육위원회의 관장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에 맞게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교육 방법은 연중 주제별로 ‘강조월간’, ‘강조주간’ 등을 설정하고 교과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을 실시함.

#### ④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

- 일본에서는 장애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연대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함.
-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권 감각 및 감수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호자와 가족 등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4) 시사점

- CRPD와 인천전략, 일본의 사례를 통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CRPD에서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음. 장애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역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인천전략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식개선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식개선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큼. 즉, 보다 구체적인 행동 전략 차원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일본의 홈페이지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공표는 공식적으로

-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정부 부처의 태도와 정책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부처의 참여를 높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할 수 있음.
- 넷째, 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교육과정과 교과수준에 따라 상이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되고 개별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2. 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편의 해외 사례

### 1) 미국

#### (1) 법적 근거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ADA, 2009).
-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ADA 타이틀 II(주정부 및 지방정부 서비스)와 ADA 타이틀 III(공공 편의 및 민간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에는 표준화된 시험 혹은 전문 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 응시자들의 시험편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 있음.
- 응시시험·전문 면허시험·자격과 관련된 시험 등을 주관하는 모든 민간, 주정부, 지방정부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 법학 및 의학 등 전문 영역과 관련된 시험, 각종 전문기술을 검정하는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은 ADA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함.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는 일반적 시험을 위한 환경이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들이 표준시험이나 전문시험을 볼 때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기구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시험을 주관하는 모든 주체는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편의를 요청할 경우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시험편의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장애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에는 응시자의 장애와 장애인 응시자가 요청하는 시험편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장애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되어야 함.

## (2) 시험편의의 사례

### ①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

-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에서는 시험시간 연장(50%, 100% 연장), 약물, 음식 및 화장실 사용을 위한 추가 휴식시간, 장애 유형에 따른 시험편의(예를 들어, 점자문제지, 확대경 사용,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시험장소 등)를 제공함.
- 컴퓨터를 이용해 응시하는 경우, 보조기기 및 장치를 제공하며, 장애유형에 따라 보조인력을 제공함. 장애로 인해 컴퓨터로 시험 응시가 어려운 경우 종이로 된 전통적인 시험을 실시하며 추가적 편의를 제공함. 또한 장애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형태의 시험지를 제공함.
-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모든 응시자들은 반드시 장애 혹은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함. 과거 3년 내에 채용 및 고등교육 기관 입학에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시험편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채용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음. 모든 증명서는 ETS에서 정한 의료전문의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ETS는 증명서를 작성한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 ②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이 가능한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는 시험 응시자들은 USMLE에 공식적으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요청할 수 있음. 대표적으로 휠체어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 높이 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책상, 추가 시험시간(시험시간의 1.25배, 1.5배, 2배), 추가 휴식시간(25%, 50%) 등을 제공함.

-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시험 실시기관에서 제시한 서류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USMLE, 2016). 장애인 응시자가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USMLE에서 실시하는 시험과의 연관성과 요청하는 시험편의가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기술해야 함. 과거에 공식적인 혹은 유사한 시험을 본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험편의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 시험편의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가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난독증,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아동시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USMLE, 2016).

### ③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 대학 시험: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PSAT 10, AP 시험 등

-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장애 학생들이 SAT와 같은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는 시험편의와 관련해 일반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시험편의 규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음.
- 첫째, 학생은 반드시 증명 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함. 공식적인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음.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는 장애로는 전맹 및 시각장애, 학습장애, 뇌성마비나 당뇨병과 같은 신체장애 및 건강장애, 운동장애 등이며, 이 외에도 공식적인 진단이 가능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 심리 및 정신평가 결과보고서나 의사의 진단 결과보고서 등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음.
- 둘째,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and PSAT 10, AP 시험에 한해서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을 보는데 반드시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야 함.



- 셋째, 요청한 시험편의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함. 즉 학생들은 요청한 시험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함.
-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음.
  - 시험출제 관련: 확대문제지(글자크기 14 pt., 20 pt. 등), 시험 문제지를 읽어주는 대독자, 하이라이터 사용, 구두 및 수화 문제 설명, 시각장애용 확대경, 색조 덮개, 점자 및 점자 그래프, 문어 응답에 대한 점자 단말기, mp3 파일을 이용한 오디오 문제지, 보조기기를 이용한 문제지 등
  - 답안작성 관련: 구두 받아쓰기와 대필, 테이프 녹음기, 철자수정 및 교정이 가능한 컴퓨터, 문법 체크가 가능한 컴퓨터, 복사 및 붙이기가 가능한 컴퓨터, 음성 녹음을 통한 답안 작성, 확대 답안지, 4측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시험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
  - 시험시간 및 시간조정: 추가 휴식, 시험시간 연장, 하루를 초과하는 시험시간 연장, 특정 시험시간 및 시험날짜 조정 등
  - 시험장소: 소그룹 시험, 개별시험장소, 시험감독관이 동석한 특별 시험장소, 응시자가 원하는 좌석배치 등

## 2) 영국

### (1) 법적 근거

-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최대한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누리고 있음.
-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은 영국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해지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음.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의무를 짐.
-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대표적인 주체로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주간 보호 시설, 여가 및 레크레이션 시설, 학교 및 기타 교육 기관, 기업 등을 들 수 있음. 장애인 혹은 장애 소비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

하는 주체는 이용의 편이성, 접근성 등을 보장 및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해야 함. (Equality Act, 2010).

## (2) 시험편의의 사례

### ① 영국 기업의 장애인을 위한 시험편의

-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하면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자 혹은 장애인 직원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음. 채용 및 응시와 관련해 평등법(Equality Act)에서 접근 가능한 응시서 및 양식, 접근 가능한 면접 장소, 장애 유형에 맞는 적성 및 능력 검정 시험, 채용 제안, 급여 지급을 포함한 고용 상태, 공정한 해고 및 복직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Equality Act, 2010).
- 평등법(Equality Act)에 기초해 채용과정 중에서 적성 및 능력 검정을 위한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들은 시험시간 연장(50%, 100% 등), 추가 휴식시간 제공, 특별 문제지 제공(점자, 확대, 화면독서 프로그램, 오디오 등), 시험장소 조정(개별 시험장소,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로 배정 등), 기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음(Equality Act, 2010).

### ②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험편의

- 영국의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들의 평가와 검정을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 평등법(Equal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중 하나로써 장애 학생 혹은 장애인 응시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영국 교육기관은 장애인 응시자 및 학생에게 시험시간 연장,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오디오 형태의 문제지, 대필자, 대독자, 수화통역 서비스, 텍스트 전환 서비스, 화면독서 프로그램, 화면 확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Equality Act, 2010).

### ③ 국제 영어능력 테스트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시험편의

- 국제 영어 능력 테스트 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시험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영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응시자의 장애 유무와는 상관없이 응시자의 영어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IELTS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IELTS에서는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시험편의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가 추가적으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시험편의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함(IELTS, 2016).

### 3) 일본

#### (1) 법적 근거

- 일본의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편의 제공의 근거는 2000년에 제정된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본계획의 책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3년 9월 노동 후생성이 ‘3차 장애자 기본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음.
- 장애자 기본계획서에는 2017년까지의 일본 정부의 장애자에 대한 정책이 명시되었으며 본 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은 총10개 영역으로 구분되어있고, 이 중 시험편의 제공에 관한 시책은 ‘행정서비스에 대한 배려’ 중 ‘국가자격에 관한 배려 등’에 근거하고 있음.

#### (2) 시험편의의 사례

##### ① 장애인 공무원 임용

- 일본에서는 공무원 임용 시험 시 각 모집부문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음.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경우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실시하고 있음. 시험을 신청할 때 원서 상에 편의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시험시간 연장, 점자 시험, 확대시험지 등과 같은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수첩)를 제시해야 함(홍자영 외, 2007).

## ②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 교원 모집의 경우 일반전형 이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및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음.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장애로 인해 시험 시 특별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입시 지원 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각 지방교육청마다 시험편의 사항 및 편의지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음.
- 공통적으로 모집원서에 개개인의 장애 편의지원 필요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지원을 하고 있음.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 시 교원시험의 실기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62개 현 중 39개 현이 실시하고 있음(홍자영 외, 2007).

## ③ 사법시험 장애인 시험편의

- 장애인 응시자가 사법시험을 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음. 장애인 응시자는 사법시험을 신청할 때 신체장애인 편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의사진단서 및 신체장애인수첩 복사본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시각장애인(약시), 상지장애인에게는 사법시험위원회에서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청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청기의 종류나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및 사용설명서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해야 함. 전파수신 기능을 이용한 보청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이한 시험편의가 제공됨(홍자영 외, 2007).

## ④ 자격시험의 시험편의

- 장애인 시책 추진위원회(내각부 소속)는 2006년부터 자격취득시험 시 통일된 편의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장애인의 지식,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장애 상태에 따라서 점자 시험, 수화 통역, 이동 도우미에 의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음. 실기시험 시 보조공학기기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 4) 시사점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법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제도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음. 해외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미국 법무부와 장애인법에서는 시험의 범위와 영역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장애인의 사회 자립과 관련해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임.
  - 둘째, 미국장애인법 및 영국평등법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란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장애로 간주하고 있음. 미국 혹은 영국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장애의 의료적 손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일상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사회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음. 이는 의료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시험편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와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셋째,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양한 증명 서류를 통해 장애 정도와 시험편의의 종류를 판정하고 있음.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의료 전문가에 의한 단순한 의료적 소견만을 참고하여 장애의 정도를 부적절하게 이해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의 시간적 및 경제적인 부담 역시 줄일 수 있음.
  - 넷째, 국외의 시험의 경우,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융통성 있는 시험편의 제공은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응시자에게 최적의 시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추가적인 시험편의의 제공은 일률적인 시험편의 제공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최상의 시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결국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음.

## IV.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 1. 조사개요

-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하위법령 작성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및 시험 실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간담회를 실시함.
- 전문가의견조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를 키워드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를 선정하였음.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및 동법 제46조의2와 관련한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관련 하위법령 개정 등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질의함.
-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별지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서식,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등에 대해 묻는 형태로 이루어짐.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대상과는 다른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선정하였으며, 법률 전문가도 포함하였음.
- 간담회는 시험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각 기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음.

### 2. 조사결과 및 시사점

- 질적조사 결과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전문가의견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결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또한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시행령에서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



여 효과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둘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교육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셋째, 장애인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비교적 수요가 많은 TEPS(영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시험 등과 같은 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는 장애인들에게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최근 취업난과 청년실업 등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 취득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함.
- 넷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제공 내용과 관련한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재 시험마다 제공되고 있는 편의의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시험의 특성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에서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될 필요가 있음.

## V. 결론 및 정책제언

### 1. 장애 인식개선

#### 1) 인식개선 교육 실시 주체의 범위

- 첫째, 현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음.
- 둘째,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 기관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의 일정 규모 이상의 사기업이나 단체를 포함하도록 추가적인 법 개정이 필요함.

#### 2) 인식개선 교육 내용

- 첫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참여자들은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음.
-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요하며, 장애와 관련된 단순한 지식으로는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음.
-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 넷째,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다섯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비장애인 전문가들 중에서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음.
-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내용이 필요함.
-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시켜야하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함.

### 3) 인식개선 교육 방법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음.
-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조사자들 중 많은 수가 장애체험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음.
-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4)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참여자 실인원, 교육 내용, 교육 실시 횟수, 교육 강사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 둘째, 교육 후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정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식개선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식개선의 변화를 적절히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음.
- 셋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업무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같은 기관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 5)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지원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음.
- 둘째,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셋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강사들의 질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음.
-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기관 설립이나 지정이 필요함.

## 6) 기타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홍보가 ‘장애인의 날’ 등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음.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과 관련해 홍보가 ‘장애인의 날’ 등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 1)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둘째,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사기업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음.
- 일반 사기업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규정이 필요함.



## 2)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기준·방법

-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 둘째, 시험편의 제공해야하는 주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그룹인터뷰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구체적인 시험편의 범위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셋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의료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음.
-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기관이 제공하도록 홍보 및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함.
- 장애유형에 따라 시험편의 제공할 때 의료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해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장애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 및 분석함.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됨.
-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 및 국제조약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인식개선과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인 개선을 위해 활용함.
-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라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마련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한계점 및 문제점, 장애인의 권리 및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





## 제1장 서론





# 1. 서론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인식(attitude)이란 사회적 환경 속에서 특정 사람, 단체, 계층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감정적 혹은 정서적인 사고나 견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Triandis, 1971). 직업현장에서의 차별적 채용, 대인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혐오나 기피, 특정 상황에 대한 차별적인 견해 등은 모두 사회적 인식의 대표적인 사례이다(Evans, 1976). Olkin(2000)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타인 혹은 사회현상의 중심적인 특성(central characteristics), 확장(spread), 매력적 요소(attractiveness)에 의해서 특정 견해나 인식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모든 사람들은 각자 중심 및 주변 특성을 소유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외모, 친절한 성격, 우수한 학력 등은 중심 특성에 해당하며, 장애 역시 한 개인의 중심 특성 중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중심 특성은 한 개인의 주변 특성 혹은 드러나지 않은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심리적 현상을 확장이라고 한다. 중심 특성이 매력적이거나 바람직한 경우에는 드러나지 않은 특성 역시 중심 특성과 동일 혹은 유사하다고 인식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반대로 중심 특성이 부정적이면 주변 특성 혹은 개인과 관련된 기타 여러 특성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되기도한다. 이러한 심리적인 과정을 통해 장애라는 중심적인 특성이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한 개인의 주변 특성 역시 부정적인 것으로 인식된다(Olkin, 2000).

역사적으로 장애인들은 위험한 존재, 무능력한 존재, 나약한 존재 등과 같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간주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그릇된 시각과 불평등한 대우로 인해 많은 수의 장애인들은 심리적으로 분노, 우울, 우려, 불안 등과 같은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용활동 및 사회참여에도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Corrigan, 2004).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라는 상호의존적인 환경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의 인식은 다른 사람의 심리적 혹은 정서적인 변화나 인식 형성에 영향을 미치거나 타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어떠한 단체나 집단에 대해서 특정한 인식 혹은 편견이 사회 내에 존재한다면 그러한 특정 집단의 구성원들은 사회 속에서 활동하는데 있어 유사한 편견이나 부정적인 인식에 의한 차별 등을



겪을 수 있다(Smart, 2009). 즉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개개인의 사회참여나 고용활동에도 유사한 부정적 편견을 초래할 수 있으며 결국 장애인의 삶의 질과 사회통합을 향상시키는데 부정적인 결과를 유발하기도 한다(Smart, 2009).

과거 수년 동안 장애와 관련된 여러 종류의 법률 및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장애인의 교육적·경제적·사회적인 접근성은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여러 형태의 사회적 제도나 정책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Corrigan, 2004; Olkin, 1999; Smart, 2009). Smart (2009)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을 갖는 이유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장애인들은 효용성의 논리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인 부담이나 장애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투여되는 비용,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에 투여되는 비용, 장애인의 사회자립을 위해 지출되는 세금 등을 경제적 효율성의 논리로 접근해 장애인에게 투여되는 사회적 지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다.

둘째, 장애에 대한 부정확하며 불합리한 정보나 지식은 장애에 대한 모호성을 증대시키며 이로 인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TV, 영화, 신문 기사 등 대중매체에서 그려지는 장애의 부정확한 모습은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유발시키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일부 영화 속에서 정신장애인을 위협하거나 예측 불가능한 존재로 표현하는 장면들은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셋째, 일부 비장애인들은 특정 장애나 질환이 전염이 가능하다는 막연하고 부정확한 정보에 기초해 전체 장애인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한다. 보통 장애가 전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일부 전염이 가능한 질환을 전체 장애의 특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전염 가능한 질병에 의한 두려움 때문에 다수의 장애인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기도 한다.

넷째, 일부 사회나 국가에서는 장애 발생 원인과 관련해 장애인 혹은 그 가족들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있으며, 장애와 관련된 어려움을 장애인 당사자 혹은 장애 가족에게 전적으로 맡기기도 한다. 장애에 대한 도덕적 혹은 개별적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집중적으로 전가하거나 강조하는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자립하거나 재활하는데 있어 여러 형태의 차별이나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종교나 문화에 따라서 장애를 신의 저주나 벌로 간주하는 경우에 장애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전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적인 특성과 능력을 강조하는 문화 속에서 장애의 원인을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경향도 흔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사회 속에서 장애인들은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부정적인 인식을 경험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 및 고용 현장에서의 차별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사회자립을 직접적으로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피해성과 심각성은 중대하다(Smart, 2009). 특히 채용과 관련해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장애인이 본인의 능력이나 적성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없게한다는 점에서 그 문제성은 심각하며, 결국 채용 과정에서의 부당한 처우는 장애인의 고용 기회의 박탈로 연결될 수 있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경제적인 자립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장애인의 사회자립과 직업재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현대 사회 속에서 고용을 위한 공정한 기회의 제공과 이를 위한 채용 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경제적 및 사회적 자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Parker & Patterson, 2013). 장애인의 고용 및 채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정당한 편의 제공은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제공되어야 할 사회적 편의 서비스 중 하나이다. 만약 장애인이 자격 및 채용시험에 참여하는 과정 중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차별로 인해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재활에 부정적 결과를 유발할 수 있다.

1990년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y Act, ADA), 2009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으로 인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장애인을 위한 적절한 시험편의 제공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 인식개선 및 적절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적·법률적인 변화 역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ADA, 1990).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취업과 관련된 자격 및 채용 시험에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불충분한 시험편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위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였다. 연구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용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제도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 2. 연구 범위 및 방법

### 1)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고 장애 인식개선의 보다 효과적인 구성과 계획을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관련된 하위 법령 개정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고용활동의 보장을 위해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하위 법령을 작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범위를 정하였다.

첫째, 제2장에서는 인식의 개념, 장애 인식의 중요성, 장애 인식개선 방법 등을 고찰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도출하였다. 또한 여러 장애인 단체나 기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방법, 대상 등을 조사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 도출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 제공과 관련해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시험편의의 내용, 대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둘째, 제3장에서는 국제적인 법규 및 해외 사례를 통해 장애 인식개선의 방법, 내용 등을 분석하고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국제조약과 일본에서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 및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며 그러한 각각의 개념이나 접근 방법이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지를 모색하였다. 더불어,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종류 및 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미국, 영국, 일본의 자격 및 채용시험과 관련된 시험편의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특히 시험편의와 관련해 각국의 법률 및 제도적인 특징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상황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셋째, 제4장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와 관련된 장애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는 서면을 통한 개별 면접 형식으로 실시되었으며 장애 유형,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와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말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내용의 문제점 및 개선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제공기관의 담당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제공 주체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나 고충 등을 분석하였다.

넷째, 제5장에서는 2장의 국내 현황, 3장의 국외사례 시사점, 4장의 전문가의견 조사 결과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를 토대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 및 정책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안하였다.

## 2) 연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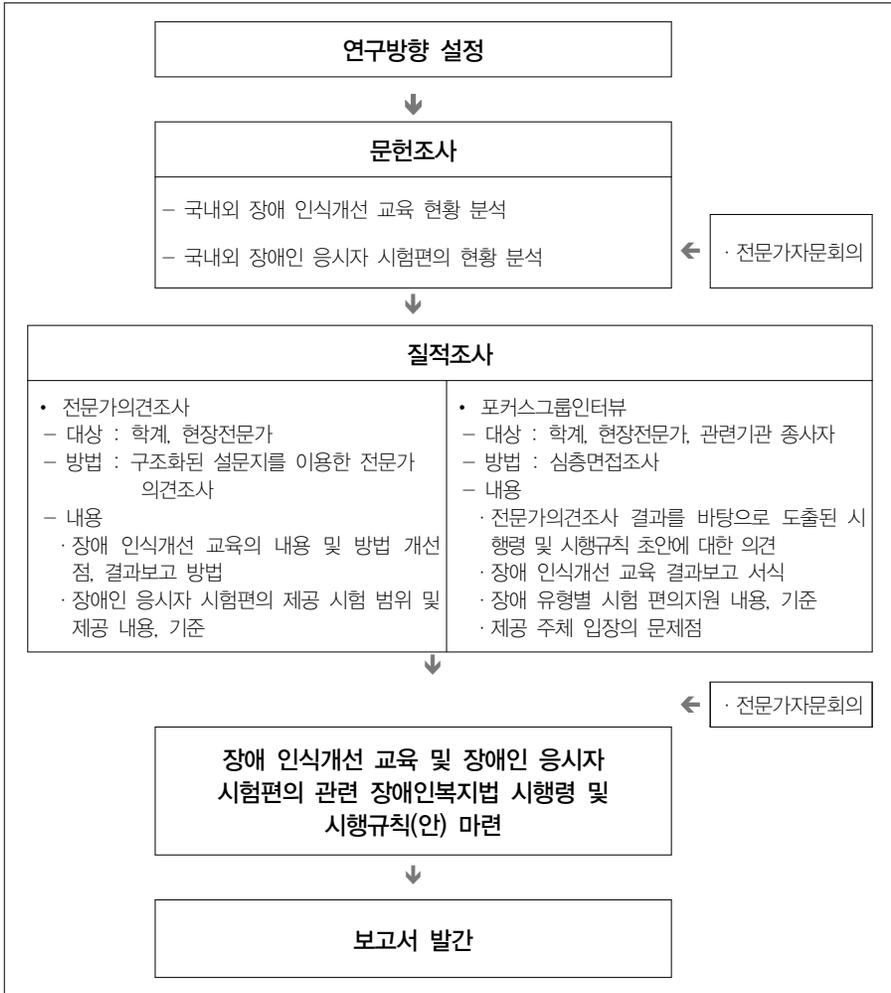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정책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조사,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간담회 등을 병행하였다.



첫째, 학계 및 장애 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총 2회에 걸쳐 연구 방향, 연구내용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였고, 이를 통해 연구내용의 충실도와 연구의 객관성 및 타당성, 연구결과의 적합성 및 기여도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 둘째, 장애 인식개선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국내 현황을 조사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개념과 실태를 분석하였다. 셋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장애 인식개선 및 시험편의의 개념 및 방법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장애 인식개선의 방법 및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 전문가 총 8명을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끝으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 및 법률전문가를 포함한 10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법률 개정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제공주체 기관 및 단체 담당자 6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인터뷰 형식으로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 3. 연구수행체계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로, 연구의 실행과정을 도식화한 수행체계는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 제2장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 II.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현황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분류

본 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크게 인권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교육으로 나누어 조사 및 분석하였다.

〈표 2-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범위

주제	목적	대상	교육방법	주요기관	
인권교육	장애인인권, 인권일반,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	공무원, 일반시민, 장애인	강의, 사이버 교육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센터	
장애 인식 개선 교육	복지 현장	아동, 청소년, 비장애인, 전문가 등	강의, 현장체험	국립재활원, 복지관,	
	교육 현장	장애학생과 비장애 학생의 통합교육, 장애체험	학생, 교직원	강의, 강사초청, 시청각자료 활용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근로 현장	고용주의 인식개선	사업주, 비장애인근로자	사이버강의, 집체교육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대국민 언론	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대국민 홍보	국민, 학생	UCC공모, 방송, 영상물	장애인먼저운동 실천본부 인식개선센터
강사양성교육	인식개선강사양성	장애인, 비장애인	강의, 실습	한국척수장애인 협회	



인권교육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와 장애인인권센터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서울시 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 권익 옹호와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인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전남장애인인권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함께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위한 힘찬 첫걸음, 장애인 인권교육과 장애인차별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복지현장에서는 장애의 이해와 예방 중심, 장애체험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는 장애학생과 비장애인 학생의 통합교육을 중심으로, 근로현장에서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을 위주로 교육하고 있다. 또한 방송콘텐츠를 이용하여 대국민 언론 홍보를 하기도 한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시청각 교육, 강의식, 체험교육, 인터넷 강의 등의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강사양성교육은 각 단계별로 장애인 당사자로 구성된 강사를 양성하는 추세이다.

## 2)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법적 근거

현재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등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 (1)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 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 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권리를 가진다.

②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장애인은 상담 및 치료, 법률구조, 그 밖에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괴롭힘 등의 피해를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 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사적인 공간, 가정,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유기, 학대, 금전적 착취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거나 수치심을 자극하는 언어표현, 희롱, 장애 상태를 이용한 추행 및 강간 등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 등을 근절하기 위한 인식개선 및 괴롭힘 등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장애여성에 대한 차별금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여성에 대한 차별요인이 제거될 수 있도록 인식개선 및 지원책 등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고, 통계 및 조사연구 등에 있어서도 장애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있어서 장애여성임을 이유로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거나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① 사업주는 장애인의 고용에 관한 정부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가진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하여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적절한 고용관리를 할 의무를 가진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채용·승진·전보 및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상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사업주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교육교재 등을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7., 2010.6.4.>



###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내용

#### (1)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교육활동뿐 아니라 인권교육을 함께 하는 기관과 단체의 활동도 공유함으로써 인권교육을 또 하나의 권리로 인정하며, 누구든지 기본적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과 관련된 교육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국가인권위원회, 2016).

##### ① 집합교육과정

집합교육을 통해 지식 습득뿐만 아니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교육생 상호간 사례 공유, 정책사례 발굴 등을 통해 인권역량 강화 및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며, 상호간 유대관계 및 협력체계의 강화를 통해 교육효과를 증대하고 있다.

##### ② 인권특강

각 기관이 요청하는 인권특강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 대상자들에게 인권교육의 기회를 넓히고 대국민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인권감수성 향상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

〈표 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특강

	운영횟수	기당인원	교육일수	교육시간	교육일정	교육대상
인권특강	연중실시	20명 이상	협의추진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 등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 ③ 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은 위원회 업무소개·홍보와 동시에 학교·시민·공공분야의 대상에 따른 인권감수성 증진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인권에 대한 이해와 친화력 및 인권감수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친근한 인권체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이다.

〈표 2-3〉 국가인권위원회 방문프로그램

교육과정명	운영 횟수	기당 인원	교육 일수	교육 시간	교육일정	교육대상
방문 인권교육 프로그램	연중실시	20~40	프로그램 운영 - 2시간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	공직자, 일반시민, 학생 등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 ④ 사이버교육

##### ○ 공직자 대상 사이버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공직자 사이버인권교육은 공직자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공무원 상시학습이 인정되는 무료 교육 과정이다. 교육대상은 공무원(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직공무원)이다.

##### ○ 교원 대상 사이버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교원 사이버인권교육은 교육 현장에서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교원 직무연수가 인정되는 무료 교육 과정이다. 교육대상은 교원(전국 유, 초, 중, 고등 교원 및 교원전문직)이다.

##### ○ 시민 대상 사이버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시민 사이버인권교육은 일반시민의 인권의식 향상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과정으로, 사이버 인권교육과정 이수 인증이 되는 정기 강좌와 연계나 수강 가능한 열린 강좌로 구성된 무료 교육 과정이다. 교육대상은 일반시민(인권 및 시민단체 활동가, 학생 등)이다.

##### ○ 모바일서비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의 모바일 인권교육은 사이버 인권교육과 같은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이버교육과 모바일교육이 진행된다.



〈표 2-4〉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인권교육 과정표

연번	분 야	교 육 과 정	학습차시
1	인권일반	인권의 이해	15차시
2		차별예방과정	15차시
3		차별예방과정1(장애인차별예방과정)	10차시
4		차별예방과정2(성차별예방과정)	10차시
5	심화	장애인차별예방심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이해)	15차시
6		성희롱예방	5차시
7	국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이해	15차시
8		세계인권선언	15차시
9	전문	행정과 인권	10차시
10		군대와 인권	10차시
11		경찰과 인권	15차시
12		선생님을 위한 인권플러스	16차시
13		학교폭력예방교육	15차시
14		정신장애인의 이해	15차시
15		이주민과 인권	15차시
16		노인 관련 시설에서의 노인과 인권	10차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6). <https://edu.humanrights.go.kr>

## (2) 국립재활원

국립재활원에서는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이념에 기초해 장애발생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장애체험교육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편의시설의 필요성 등 장애인 인식개선을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고 있다.

국립재활원에서는 전국적으로 미취학아동, 초·중·고등학생, 성인 등을 대상으로 장애발생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초·중·고·대학생, 시·도의원, 행정기관 직원, 학부모, 교직원,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장애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발생예방 교육내용은 〈표 2-5〉와 같다(국립재활원, 2016).

〈표 2-5〉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내용

분 야	소요시간		교육 내용
	40분	80분	
교육소개	5	10	우리나라 장애인 현황 및 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 배경, 국립재활원 및 강사 소개
장애의 이해	10	15	장애와 장애유형 이해, 뇌와 척수 손상에 대한 설명, 장애인 인식개선 내용 등
동영상	-	15	장애발생예방 동영상(장애인들의 사고사례 등)
사고사례	10	20	사고사례(강사 본인) 소개 및 질의응답
사고 및 장애발생 예방법	15	15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 5계명, 학교와 생활주변의 사고 및 장애발생예방법 등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장애체험교육은 국립재활원 방문교육(원내교육)과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원의 교육)으로 구분된다. 방문교육은 1회 교육 가능인원이 40~50명으로 장애 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휠체어 사용법,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사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과 휠체어·시각장애 체험, 주택·편의시설 견학 등 체험교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찾아가는 장애체험’ 교육은 1회 교육 가능인원이 80명 내외로 장애 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의 중요성, 휠체어 사용법, 시각장애인용 흰 지팡이 사용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강의식 교육과 휠체어 및 시각장애체험 등의 체험교육이 있다(국립재활원, 2016).

〈표 2-6〉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내용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내용	교육 자료	소요 시간
휠체어체험	설명	휠체어 이동, 조작 방법	프레젠테이션	20분
	체험	경사로, 배수로덮개 통과, 360° 회전 등	휠체어	40분
시각장애 체험	설명	안내, 단독 보행, 장애물 확인, 이동 방법	프리젠테이션	20분
	체험	도로교통 체험관 이용	흰지팡이, 안내	40분
장애인식개선	강의	장애에 대한 이해(장애의 개념, 유형 등), 장애인에 대한 공감	프리젠테이션	50분
견학	견학	휠체어 체험장, 도로교통 체험장, 주택 체험장		40분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국립재활원의 장애발생예방교육은 실제 사고로 뇌손상 및 척수손상을 입은 장애인 강사가 직접 교육하며, 동영상 시청과 강사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된다.

〈표 2-7〉 국립재활원 장애발생 예방교육 현황(연도별 누계)

년도	목표 인원	교육 인원	달성율	교육대상					교육 횟수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인	
2005		1,045							10
2006		8,203							51
2007		8,803							75
2008	7,000	18,335	261.9		15,607	2,260		468	119
2009	15,000	16,233	108.2	60	13,105	2,340	190	538	117
2010	14,000	17,873	127.7	1,072	14,194	1,855	239	513	527
2011	14,500	65,255	450.0	4,752	42,582	13,914	1,665	2,342	1,127
2012	50,000	82,797	165.6	9,690	54,381	14,147	2,698	1,881	1,454
2013	74,000	87,825	118.7	8,215	57,182	15,201	6,148	1,079	1,802
2014	94,308	95,526	101.3	5,154	73,220	11,152	5,412	588	1,946
2015	96,744	131,198	135.6	12,000	88,043	20,414	9,203	1,538	2,600
총계		533,093		40,943	358,314	81,283	25,555	8,947	9,828
대상별 비율				7.7	67.2	15.2	4.8	1.7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표 2-8〉 국립재활원 장애발생 예방교육 현황(2015년도)

월별	대상별												대상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성인		계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횟수	인원	
1월	-	-	1	29	2	70	-	-	1	25	4	124	의창도서관 외 3개 기관
2월	1	10	13	754	-	-	-	-	2	66	16	830	서울 쌍문초 외 5개 기관
3월	13	543	148	5,739	69	3,175	5	660	2	100	237	10,217	하탑중 외 64개 기관
4월	117	5,353	590	29,343	57	3,981	43	2,435	8	365	815	41,477	가락중 외 316개 기관
5월	27	1,501	163	7,498	69	3,684	51	3,006	6	240	316	15,929	중앙중 외 131개 기관
6월	13	464	95	4,218	13	817	15	770	3	110	139	6,379	월영초 외 59개 기관
7월	10	815	61	2,322	49	3,385	-	-	4	112	124	6,634	서강초 외 39개 기관
8월	5	433	8	523	6	365	3	320	1	10	23	1,651	양산시보건소 외 12개 기관
9월	19	928	250	15,050	19	949	3	420	4	140	295	17,487	온신초등학교 외 104개 기관
10월	22	880	161	10,147	10	1,264	22	666	5	107	220	13,064	가천초등학교 외 91개 기관
11월	26	818	197	9,985	12	643	6	548	4	163	245	12,157	감정초등학교 외 82개 기관
12월	9	255	83	2,435	54	2,081	15	378	5	100	166	5,249	강하초등학교 외 36개 기관
계	262	12,000	1,770	88,043	360	20,414	163	9,203	45	1,538	2,600	131,198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표 2-9〉 국립재활원 찾아가는 장애체험교육 실적(2015년)

월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합계
교육 횟수	2	6	19	20	17	6	16	7	15	17	21	146
인원	451	712	1,728	2,141	2,030	539	1,537	1,510	1,414	1,226	3,509	16,797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표 2-10〉 국립재활원 장애체험교육 총괄 현황(2015년도)

월별	대상별											프로그램				대상기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성인		계		이론교육	힐체어	시각	편의시설	기관명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교육 횟수	인원					
1월	-	-	2	91	-	-	1	29	2	428	5	548	519	548	519	-	목포과학대 등 5개 기관
2월	4	264	-	-	-	-	1	30	2	448	7	742	742	742	742	-	청암대 등 3개 기관
3월	17	1,301	-	-	-	-	4	166	3	423	24	1,890	1,170	1,290	793	-	광주시청 등 13개 기관
4월	16	1,487	1	129	-	-	2	91	6	635	25	2,342	2,338	2,263	2,263	-	취경초 등 18개 기관
5월	13	1,055	3	180	1	14	5	139	7	959	29	2,347	2,317	2,347	2,347	-	강동대 등 20개 기관
6월	5	459	-	-	-	-	1	25	2	102	8	586	285	586	586	-	등마초 등 5개 기관
7월	12	907	1	140	-	-	-	-	4	519	17	1,566	1,566	1,566	1,366	-	강월초 등 10개 기관
8월	1	100	2	143	1	280	3	92	5	1,086	12	1,701	1,701	1,201	865	-	용인시청 등 11개 기관
9월	10	744	-	-	2	108	1	33	12	872	25	1,757	1,582	1,757	1,435	-	강북경찰서 등 17개 기관
10월	14	1,099	1	27	1	57	1	4	9	333	26	1,520	960	1,520	1,428	-	국립공주 병원 등 15개 기관
11월	10	1,038	5	770	1	31	3	97	7	1,718	26	3,654	3,433	2,608	1,587	-	문화재청 등 17개 기관
계	102	8,454	15	1,480	6	490	22	706	59	7,523	204	18,653	16,603	16,428	13,931	-	

출처: 국립재활원 (2016). www.nrc.go.kr

### (3)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교원, 공무원을 우선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국민, 학생, 장애인과 가족까지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EDI행동프로그램을 핵심컨텐츠로 장애이해 및 에티켓, 차별금지법 이해, 장애인 우수사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표 2-11〉 EDI 프로그램 내용

교육과정명	교육과정 구성	교육방법
고용평등 인식개선교육 (8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의 이해</li> <li>• 장애유형별 이해하기</li> <li>• 장애인과 함께하기</li> <li>• 장애인 차별금지법 대한이해</li> <li>• 직장내 성희롱이란?</li> <li>•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 및 판단요건</li> <li>• 성희롱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의무</li> <li>• 성희롱 예방을 위한 근로자의 역할</li> </ul>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4회차)과 성희롱예방교육(4회차)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교육과정
함께 일하는 세상을 위한 하모니 (7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통계로보는 장애</li> <li>•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1</li> <li>•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2</li> <li>• 유형별 장애특성 이해하기 3</li> <li>•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해하기</li> <li>• 고용전후 고려할 사항 고용상 장애차별이 아닌 경우</li> </ul>	장애를 특정한 사람들만의 문제로 인식하거나 막연한 거리감 또는 불편함을 느끼는 것에 대한 장애인 인식개선을 하기 위한 과정으로 직장, 사회 등에서 생기는 다양한 사례 학습으로 현장감과 사실감 부여
장애 및 에티켓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개념 및 시대적 변천</li> <li>• 장애인 응대 에티켓</li> </ul>	장애의 개념 및 시대적 변천에 대해서 알아보고, 기본적인 장애에 대한 이해와 에티켓을 학습하기 위한 과정
장애인차별금지법과 정당한 편의제공 (2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차별금지</li> <li>• 정당한 편의제공 매뉴얼사례</li> </ul>	장애인 차별금지법의 제정목적·대상을 이해하고 장애인 차별행위 및 차별예외조항에 대해 학습하는 과정
장애, 함께 생각해보기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장애인?</li> <li>• 장애유형별 이해 I · II</li> <li>• 장애인의무고용제도와 장애인차별금지</li> </ul>	장애와 각 장애유형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장애(인)에 대한 바른 표현법 및 장애인의무고용제도 등에 대하여 학습할 수 있는 과정
장애인과 함께하기 (4회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례를 통한 장애인과 함께하기 I · II · III · IV</li> </ul>	'장애인고용 우수업체 사례' 및 '지원고용제도를 통한 지적장애인의 취업 사례'를 통해 장애와 직무에 대한 이해와 생각을 넓힐 수 있는 과정

출처: EDI 사이버연수원 (2016). <https://cyedu.kead.or.kr>



교육방법은 아동용 애니메이션 제작, 대학생 서포터즈 지원, 장애인 스포츠 체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이해, 기업맞춤형 교육, 토크콘서트 등으로 진행하고 있다.

한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의 명단공표제도와 연계한 인식개선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하반기 기준, 장애인고용 저조기업 명단공표제도 연계 교육인원이 2014년 13,154명에서 2015년 22,996명으로 증가하여 교육 요구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만족도 역시 84.19점(교육여건에 따라 73점~98점)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표제외율이 17.5% 상승하였으며, 장애인근로자가 1,288명(191개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로 인해 장애인 고용율 평균도 0.173%(263개소)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16).

#### (4)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는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사업 ‘비상(飛上)’과 ‘함께 가는 내일(Work)’을 중심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역량을 계발함으로써 장애인도 다양한 가능성을 가진 근로 주체임을 알리고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고, 미래 직업인이 되는 청소년에게 다양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 특히, 취업준비 장애인, 비장애인 청소년, 교직원, 일반 시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016).

〈표 2-12〉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교육내용

사업명	
비상(飛上)	함께 가는 내일(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 공익광고 제작 및 홍보</li> <li>: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광고 영상/스토리보드부문 금상 작품을 광고영상으로 제작·홍보하여 사회 일반의 장애인에 대한 편견 및 선입견을 제거하고, 장애인 인식개선을 도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양한 교육 자료 개발을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li> <li>- 중·고등학생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만화집 제작/배포, 교재활용</li> <li>- 교육 결과자료집 제작 및 배포</li> </ul> </li> </ul>

사업명	
비상(飛上)	함께 가는 내일(Work)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역량강화를 통한 장애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내일(Work)은 맑음' 콘테스트 공모전을 준비 중이거나 취업이나 재취업을 리망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공모 부문 관련 직업 진로 교육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진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청년 취업지원 및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토크 콘서트 '희망충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전국의 중·고등학교 청소년(장애·비장애), 교직원 및 취업을 준비 중인 장애청년, 장애인 가족 등</li> <li>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방적인 전달 위주의 교육 형식에서 벗어나 청년장애인 및 청소년들과 사회 여러분야에 유명 장애인 및 장애문화예술 전문가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소통의 장 마련</li> <li>전문 사회자 및 장애관련 사회분야의 전문가로 패널 섭외</li> </ul> </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li> <li>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li> <li>작품현상공모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대상: 운문, 산문, 사진, 컴퓨터그래픽, 미술</li> <li>자격제한 없음: 광고영상/스토리보드</li> </ul> </li> <li>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심사 및 입상작품 선정</li> <li>장애인 고용 인식개선 콘테스트 시상식 및 경연대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인 인식개선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장애청소년 Best Frie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애청소년 Best Friend 홍보 동영상 제작 및 배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장애청소년의 학습 및 일상생활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Best Friend와 근로현장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지원하고 있는 근로지원인의 활동 모습을 촬영하여 사회일반의 장애인 인식개선 및 근로지원인에 대한 긍정적 이해 도모</li> </ul> </li> <li>장애청소년 Best Friend 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 전국 중·고등학교 내 장애학생을 돕는 장애청소년</li> <li>내용: 장애청소년의 원만한 학교생활 적응을 돕고 또래 청소년의 장애인 인식개선에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을 선발하여 표창</li> </ul> </li> <li>활동 사례집 제작 및 배포</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상작품 전시회</li> <li>온라인 및 전국순회 입상작품 전시회 개최</li> </ul>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016). www.kesad.or.kr

〈표 2-13〉 청소년 및 교직원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현황(2015년도 기준)

대상	내용	계획	실적
청소년	학교 수	100개교	119개교
	참가자 수	46,000명	47,039명
교직원	학교 수	15개교	18개교
	참가자 수	500명	837명

출처: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내부자료 (2015)

### (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한국척수장애인협회는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통해 사회통합을 실현하고 장애인강사가 교육대상자에게 직접 인식개선 교육을 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또한 전국적으로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운영하여 강사를 양성하며 인식개선 교재를 제작하고 있다(한국척수장애인협회, 2016).

- 실시대상 : 학생(유치원, 초, 중, 고등, 대학생), 활동보조인, 장애인강사
- 교육내용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체험
- 교육방법 : 인식개선 교육, 인권교육, 장애체험, 인형극, 휠체어력비체험, 직업토크쇼, 3인3색(문화공연)

〈표 2-14〉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인식개선 교육)

대상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파견기관	57곳	11곳	10곳	13곳	11곳	12곳
교육회수	129회	14회	35회	33회	28회	19회
교육인원	4,651명	388명	1,612명	1,106명	786명	759명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내부자료(2015)

〈표 2-15〉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휠체어 력비 체험)

NO.	강의기관 및 학교	횟수	인원수	일자
1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3. 13.
2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4. 3.
3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6. 19.
4	금부초등학교	1회	100명	2015. 10. 19.
5	양동초등학교	1회	40명	2015. 10. 20.
6	만호초등학교	1회	100명	2015. 10. 21.
7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0. 23.
8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0. 30.
9	광주 화정남초등학교	1회	120명	2015. 11. 11.
10	광주 유덕초등학교	1회	120명	2015. 11. 12.
11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1. 13.
12	금천고등학교	1회	30명	2015. 11. 27.
총계			690명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내부자료(2015)

〈표 2-16〉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 인식개선 교육 현황(창작인형극)

NO.	강의기관 및 학교	횟수	인원수	일자
1	용인 신촌초등학교	1회	100명	2015. 4. 20.
2	제암초 병설유치원	1회	200명	2015. 4. 22.
3	포천 가산초등학교	1회	97명	2015. 11. 10.
4	대진 유치원	1회	180명	2015. 12. 1.
5	과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1회	200명	2015. 12. 4.
총계			777명	

출처: 한국척수장애인협회 내부자료(2015)

### (6)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인식개선센터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해소하고 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장애인을 먼저 배려함으로써 더불어 살아가는 21세기 선진복지공동체를 가꾸기 위한 취지로 설립되었다. 사회 각계 지도층 인사들이 뜻을 모아 1996년 4월에 ‘장애인먼저실천중앙협의회’로 출범하여 다양한 실천 활동을 통해 국민들의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였고, 2003년 12월부터는 사단법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복지·교육기관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장애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개발 및 보급하여 긍정적인 장애 인식을 형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다음과 같다(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표 2-17〉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인식개선 교육 내용

구분	내용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학생 백일장	매년 4월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여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와 관련된 글짓기 대회를 개최하여 학령기 때부터 올바른 장애인식을 심어주고 장애차별을 예방할 수 있는 문화 형성
대한민국 1교시’ 방송 제작 및 송출	초등학생의 눈높이에 맞춘 장애이해교육 방송을 제작하고 현장에서의 활용도와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교수-학습 지도자료를 함께 개발하여 배포함으로써 통합교육에 기여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사회통합 기반 마련
청소년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영상물 제작	미래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들의 올바른 장애이해를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식개선 영상물을 제작하여 ‘장애인의 날’ 방송하고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영상으로 배포 청소년, 교육전문가, 장애인복지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현장 중심의 교육 자료 개발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http://www.wefirst.or.kr>



한편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사업에 다양한 영상물을 활용하고 있으며 영상물의 목록 및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2-18〉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 인식개선 영상물 목록

제작 년도	제목	주요 장애	제작	출연	상영 시간	내용
2008	마이 프렌즈	발달 장애 (자폐성)	극본: 서재순 연출: 김진옥	정선경, 홍지민김형규, 한보배	24분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 와의 우정을 통해 장애를 가 진 친구를 이해하는 과정을 그린 내용
2009	굿 프렌즈	발달 장애 (자폐성)	극본: 광영일 연출: 채종성	정선경, 홍지민김형규, 한보배박건태, 김병만	34분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에 대한 편견을 바뀌어나가는 중학생의 이야기를 담은 내용
2010	그대로 도 괜찮아	청각 장애	극본: 박범수연출: 홍경철	정선경, 수혜 안재민, 김정난이일화, 이재포	44분	댄스를 좋아하는 청각장애를 가진 고등학생이 학교생활 등 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모와 선생님의 편견 어린 시선을 이겨내는 내용
2011	슈퍼맨, 하늘 날다	뇌병변 장애	극본: 백병훈연출: 백병훈	정선경, 박건태김형기, 김해인	41분	뇌병변장애를 가진 친구와 장 애학생 도우미가 진정한 친구 로 발전하는 모습을 담은 내 용
2012	우리는 외계인 이다	발달 장애 (자폐성) 등	극본: 최형자연출: 백성현	정선경, 강이석김유리, 김희정	52분	키가 작아서 고민하던 중학생 이 발달장애를 가진 친구를 통해 스스로 자신감을 되찾는 내용
2013	하늘 벽에 오르다	시각 장애	극본: 하원준연출: 최상진	정선경, 김동준김보라, 손병호최원영	54분	시각장애를 가진 17세 소녀의 도전과 이를 바라보는 한 소 년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는 과정을 담은내용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http://www.wefirst.or.kr>

이 외에도 성인을 대상으로 다양하고 체계적인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를 개발하고 보급함으로써 장애차별을 예방하고 장애 인식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표 2-19〉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장애 인식개선 콘텐츠 목록

제목	제작년도	내용 및 상영시간	총합편
아름다운 소통 - 공공기관편 -	2010	Part 1. 장애인 안내 에티켓(3분 27초) Part 2. 민원창구응대 에티켓(3분 47초) Part 3. 전화응대 에티켓(2분 37초)	9분
아름다운 소통 - 편의시설편 -	2011	Part 1. 건물 내부에 설치된 편의시설(4분 22초) Part 2. 건물 외부에 설치된 편의시설(4분)	7분 13초
아름다운 소통 - 직장에서 장애를 가진 동료에 대한 에티켓 -	2012	Part 1. 지체장애인 편(3분 08초) Part 2. 청각장애인 편(3분 16초) Part 3. 시각장애인 편(2분 53초)	7분 2초
아름다운 소통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	2013	Part 1. 괴롭힘 등의 금지(3분 11초) Part 2. 정당한 편의제공(3분 26초) Part 3. 웹 접근성(3분 29초)	7분 53초

출처: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홈페이지, <http://www.wefirst.or.kr>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는 효과적인 장애 인식개선이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전문 인력 지원 등을 통하여 전 국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인식개선센터는 장애 인식개선 자료 제공의 장이되고 있으며, 지역사회 및 전 국민에게 장애 차별을 예방하고 올바른 장애 인식을 심어주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현황

### 1)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개념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재할,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근무시간의 변경 또는 조정, 훈련 제공 또는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등을 포함하여 시험 및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비교해 동등하게 대우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동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 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6).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의 4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문’에 의하면 편의지원 대상 및 범위, 장애 유형별 시험편의 지원의 내용, 시험편의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6).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의 장애인 시험편의와 관련해서 국가공인시험의 장애인 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시각, 청각, 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뇌성마비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 대필자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어언어문화연구원 시행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청각, 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이 제공되고 있다(장애인뉴스, 2015).

이러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현재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내용과 방법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기초적인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관련 법률 등을 조사하여 법적 현황을 살펴보았다.

##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법적 근거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공무원임용법」, 「공무원임용시험령」,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 (1)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 (2) 공무원임용법

**제26조(임용의 원칙)** 공무원의 임용은 시험성적·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따라 행한다. 다만, 국가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이공계전공자·저소득층 등에 대한 채용·승진·전보 등 인사관리상의 우대와 실질적인 양성 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전문개정 2008.3.28.]

## (3) 공무원임용시험령

### 제4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

-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시험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합격을 결정할 때 필요한 경우 관계 자료를 출신학교의 장 등으로부터 수집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실시 사항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민간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두어 시험의 시행, 합격자 결정 등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2.11.27]  
[전문개정 2009.2.6]

## (4) 장애인검정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장애인 수험자에 대한 검정응시 편의제공 방법, 처리절차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이 시험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 3)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 및 방법

### (1)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에서는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에 장애인 등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5).



- 법적근거(공무원임용시험령 제4조제4항)
  -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신체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다양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 수험생 등의 응시편의 도모
  
- 적용시험
  - 공개경쟁채용시험
    - 5급, 7급 및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 경력경쟁채용시험
    -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등
  
- 지원대상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 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상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로서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체장애인 : 중증 상지지체, 경증 상지지체, 하지지체로 구분
    - 뇌병변장애인 : 중증 및 경증장애인으로 구분
    - 시각장애인 : 시각장애1~2급, 3급2호·4급2호, 시각장애3~6급으로 구분
    -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2~6급
  - 특수·중복복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임산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지원절차



출처: 인사혁신처 (20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①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서비스 확인

- 아래의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을 토대로 본인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 확인

〈표 2-20〉 장애유형 및 시험단계별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 장애	중증 상지지체 (1~3급)	시험시간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 상지지체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하지지체	휠체어 전용책상 (휠체어 사용자),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없음	
뇌 병변 장애	중증 뇌병변 (1~3급)	시험시간 연장, 대필(선택형 시험),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 뇌병변 (4~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답안작성용 컴퓨터 (논문형 시험)	없음	
		시험시간 연장	의사진단서	

장애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1~2급, 3급 2호, 4급 2호중 점자 사용 필요성을 인정 받은 자	점자문제지	없음 (단, 3급2호, 4급 2호는 의사진단서)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전담도우미 지원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관련서식 점자 지원 관련서식 확대 제공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 점자답안지, 축소 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3~6급	시험시간 연장 ※ 5간연장 불가 ※ 6논의 교정 시력이 0.3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없음 (단, 6급은 의사진단서)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답안작성용 컴퓨터(논문형 시험)	없음	
청각 장애	2~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 기기 지참 허용	없음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의사전달보조위원 (수화통역사등)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 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편의지원 서비스 결정	의사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편의지원 서비스 결정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높낮이 조절 책상,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 대장증 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 (논문형시험)	별도시험실 배정 (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 소견서 및 의사 진단서(서로 다른 (상급) 종합병원에서 발급 받아야 함)	

출처: 인사혁신처 (20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 ②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

- 신청기간 : 응시원서 접수기간과 동일한 기간 내에 신청 접수
  - ※ 제2차(논문형) 및 제3차(면접)시험은 前 단계의 합격자 발표일에 안내하는 기간 내에 별도로 편의지원 신청
- 신청방법 :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응시원서 접수시 본인의 장애 유형에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
  - ※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때, 응시원서 접수사이트의 '장애인 등 편의제공' 화면의 하단에 ①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②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필요성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함

## ③ 증빙서류 제출(해당자만 제출)

- 제출기간 : 인사혁신처가 지정한 기한 내에 제출
- 제출방법 : 등기우편(제출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방문제출
- 제출처 : 정부서울청사 16층 채용관리과
- 구비서류 :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의사진단서(소견서) 원본 1부 등
  - \* 중증장애인 수험생 중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 시험 당일의 세부 운영절차 등의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그 희망의사를 화면 하단에 기재하여야 함.

### 〈 의사진단서 등 증빙서류 제출대상 〉

제출대상		미제출 대상
진단서	- 경증장애인(4~6급)으로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자 - 시각장애인(3급2호, 4급2호)으로 점자문제지를 신청한 자 - 시각장애인(6급)으로 시험시간 1.5배 연장을 신청한 자 * 시각장애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에 한함	- 중증 뇌병변 지체·청각 장애인 - 시각장애인 일부
소견서	- 임신부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한 자	
진단서 또는 소견서	-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 신체장애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 인사혁신처가 해당 수험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신청한 편의지원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함	
진단서 및 소견서	- 과민성대장증후군과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에 해당하는 자로 제2차(논문형)시험에서 시험 중 화장실 이용 서비스를 신청한 자	

###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작성 샘플 〉

- ① 장애유형 및 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② 장애로 인해 시험에 응시할 때 불편한 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항목을 참조하여 제공받  
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 〈 의사진단서(소견서)발급 내용 예시〉

장애유형 및 정도		예시
시각 장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 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4~6급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특수 및 중복장애 등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증빙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 전년도 국가직 공채시험에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 서비스를 받은 수험생은 동일한 편의지원 서비스에 한해 당해연도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함
- 장애인 편의지원 제도의 악용 가능성을 없애기 위해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전문의 진단서(소견서) 원본만을 인정. 다만, 임신부의 경우는 병원·의원급 의료기관(현재 다니고 있는 산부인과 포함)에서 발급받은 의사소견서를 인정함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www.hira.or.kr) → [병원·약국찾기]을차례로 클릭하여 지역별 종합병원을 조회할 수 있음



-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자는 본 안내자료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 (<http://gosi.kr>)에 게시된 답안지·문제지 견본 등을 가지고 종합병원 전문 의에게 진찰(상담) 받은 후 진단서(소견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람
-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는 진단서(소견서)에는 본인의 장애유형 및 정도, 지원 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서비스와 그 필요성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하고, 진단서(소견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할 경우에는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
- 상이등급자가 제출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에는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 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증빙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 종합병원에 가실 때,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장애등급기준표”를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람

#### ④ 장애인 등록정보 조회 및 증빙서류 검토

- 신청자의 장애(상이) 등급 등을 보건복지부 및 국가보훈처에 조회
- 제출서류를 토대로 장애인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판단

#### ⑤ 편의지원서비스 제공 여부 안내 등

-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여부 사전안내
- 시험별 일시·장소 공고시 편의지원 요령 및 내용 설명
- 시험당일, 중증장애인 전담 도우미 배치

####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기준

장애 유형별로 제공되는 편의지원 서비스는 다음과 같으며, 장애인 수험생 등은 응시원서 접수 시에 본인에게 필요한 편의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음

- **지체장애인:** 필기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와 거동이 불편한 하지 지체로 구분하고, 상지지체는 중증과 경증으로 나누어 편의지원 서비스를 제공

〈중증 상지지체 :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는 상지 지체장애 1~3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p>《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 (1.5배) ②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③확대문제지 ④확대답안지 ⑤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⑥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경증 상지지체 : 상지 지체장애 4~6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p>《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확대문제지②확대답안지 ③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④별도시험실 배정(좌석 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확대문제지②답안작성용 컴퓨터 ③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④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 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거동 및 응시에 불편함이 있는 하지지체 장애인〉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p>《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 ②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 뇌병변장애인 : 중·경증 장애인으로 구분하여 편의 제공

〈중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1~3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p><b>〈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문제지에 직접 답안 표기 후 대필 실시 ③확대문제지 ④확대답안지 ⑤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⑥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b>〈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b>〈면접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③전담도우미 지원 ④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 ⑤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경증장애인 : 뇌병변장애 4~6급〉

구분	주요내용
구비서류	없음. 다만 시험시간 연장을 신청한 경우는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지원내용	<p><b>〈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허용 ⑤별도 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b>〈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⑤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b>〈면접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 시각장애인

〈시각장애 : 1~2급, 3급 2호, 4급 2호〉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다만, 3급 2호, 4급 2호인 자가 점자문제지 제공을 신청한 경우는 점자 사용 필요성이 기재된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진단서상 응시자의 시야각도와 해당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p>《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7배)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컴퓨터 ③점자문제지 ④점자 답안지 ⑤확대문제지 ⑥확대답안지 ⑦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⑧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p>《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음성지원 S/W가 탑재된 컴퓨터 ③점자문제지 ④점자 답안지 확대문제지 ⑥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 서식 점자 지원 ⑤관련서식 확대 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시각장애 : 3~6급(3급2호, 4급2호 제외)〉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다만, 시각장애 6급인 자가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는 의사진단서 제출 필요 ※ 의사 진단서로 응시자의 시력과 해당 편의제공이 필요한 사유가 확인 가능하여야 함
지원내용	<p>《제1차시험 : 선택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5배) ②확대문제지 ③확대답안지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 ※ 3급1호, 4급1호, 5급1호는 시험시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5급2호 및 6급은 시험시간 연장 신청 불가 ※ 다만, 6급중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0이하일 경우는 의사 진단서를 첨부하여 시험시간 연장 신청 가능(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에도 동일하게 적용)</li> </ul> <p>《제2차시험 : 논문형 필기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시험시간 연장(1.2배) ②확대문제지 ③답안작성용 컴퓨터 ④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면접시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②전담 도우미 지원 ③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④관련 서식 점자지원 ⑤관련서식 확대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선택할 수 있음</li> </ul>

○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2~6급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없음.
지원내용	<p><b>《필기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수화통역사등 의사전달 보조요원 배치 ②응시요령 및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공 ③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b>《면접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③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배치 ④필답으로 면접진행 ⑤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⑥관련서식 서면 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li>※ *언어장애인이거나 뇌병변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험시 의사소통이 어려움이 있는 자는 청각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내용에 준해서 편의지원 신청이 가능함</li> </ul>

○ 기타 편의지원이 필요한 자

- 기복장애 및 일시적 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임신부 및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

구분	주요내용
제출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중복 장애 및 일시적 장애가 있는 자: 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필요</li> <li>※ 인사혁신처가 해당 수험생의 장애유형 및 정도, 신청한 편의지원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을 요구함</li> <li>○ 임신부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의사소견서 제출 필요</li> <li>※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급/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소견서 제출 가능</li> <li>○ 제2차 (논문형)시험에서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으로 편의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자 : 서로 다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와 소견서를 함께 제출 필요</li> </ul>
지원내용	<p><b>《필기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①수화통역사등 의사전달 보조요원 배치 ②응시요령 및 시간알림 등 서면자료 제공 ③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p><b>《면접시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면접시간 20분 연장 ②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③의사전달 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④필답으로 면접진행 ⑤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 ⑥관련서식 서면 제공 중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복수로 신청할 수 있음</li> </ul>

○ 중증장애인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을 위해 관련 시험정보를 우편 또는 e-mail로 안내(가족·지인 등도 안내 받을 수 있음)

- 중증 시각, 상지지체 및 뇌병변장애인 중 희망자(응시원서 접수시 신청)
  - 장애인 편의지원 서비스 제공 내용, 시험당일의 세부 운영절차, 시험장소 등 안내

- 장애인 수험생 등의 시험장 접근·이동 및 응시편의를 높이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장애인 전용시험장을 임차하여 활용함
  - 시각각장애인,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중증, 1~3급)
    - 각종 편의시설이 갖춰진 장애인 특수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를 전용시험장으로 선정·활용
    - 특수학교 교직원을 시험감독관으로 차출·운영
      - ※ 중증장애인 수험생의 수와 시험장 임차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경증, 4~6급)
    -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시험장 위주로 배정
    - 시험장 1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인접한 시험실에 우선 배정
    - 실별 수용인원을 축소하여 수험생 좌석 간격 확대
- 중증장애인 수험생이 안정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전담 안내도우미 배치 및 보호자 대기실 마련 등 비상시에 대비하고 있음
  - 시각, 지체 및 뇌병변장애인(중증, 1~3급)
    - 시험전일, 시험장 안내 및 응시요령 등 교육(희망자에 한함)
    - 중증장애인 전담 안내 도우미 배치
    - 시험장 내에 보호자 대기실 마련
    - 면접위원에게 응시자의 장애유형 사전공지(희망자에 한함)
    - 필요시, 119 구급대 대기 조치

## □ 기타 참고사항

- 언어장애인 편의서비스 신청 가능여부
  - 언어장애인이나 뇌병변 장애에 수반된 언어장애, 안면장애 등으로 면접시험에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자는 청각장애인에 준해 편의지원 서비스 신청이 가능함
-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 제공 범위
  - 5급공채(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포함) 장애인 응시자 및 7·9급 공채 장애인 구분모집 응시자에게는 시험시간 연장 서비스가 제공되나, 7·9급 공채의 일반인 모집에는 시험시간 연장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음

○ 시험시간연장시, 화장실 사용 가능여부

- 교시당 시험시간이 140분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험감독관 동행 하에 화장실 이용이 허용됨
- 이때, 화장실 이용시간은 시험시간에 포함됨
- 시험별 시험시간 운영현황(음영처리된 경우에 한해, 화장실 이용 허용)

구분	정상 시험시간
5급 1차	90분
5급 2차	120분
7급 필기	140분
9급 필기	100분

➔

시험시간 연장		
1.2배	1.5배	1.7배
-	135분	155분
145배	180분	-
-	210분	350분
-	150분	170분

○ 확대 축소문제지 및 확대답안지(선택형) 종류

- 확대문제지는 A3용지로 제공되며, 확대비율 118%(14pt), 150%(18pt) 중 하나를 선택
- 축소문제지는 A4용지로 제공되며, 축소비율 82%(10pt)로 제공 (확대독서기 사용자만 신청)
- 확대답안지는 A3규격의 기입형과 표기형 답안지 중 하나를 선택
- 확대문제지와 확대답안지를 제공받는 응시자에게는 별도로 일반 문제지와 일반 답안지를 제공하지 않음

(2)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

국가기술 및 국가전문시험의 경우에는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 등으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장애인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험편의 제공을 받기 위해서는 원서접수 시 해당 장애 표기 및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하고,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내에 해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 시험장 관할 시행기관으로 제출하면 된다. 국가전문자격별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장애유형별 응시편의 제공 및 증빙서류 안내'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2016).

국가시험의 일종인 사회복지사 시험의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다.

〈표 2-21〉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유형(등급)		필 기 시 험	
		편의제공 내용	증빙서류
시각 장애	- 1급~2급 - 3급2호, 4급2호중 점자사용 필요성 을 인정받은자	시험시간 1.5배 연장 음성지원컴퓨터(사회복지사 및 공인중개사만 해당) 문제지대독 및 답안대필(시각장애 1,2급용) 점자문제지(사회복지사 및 공인중개사만 해당) 점자답안지,(사회복지사 및 공인중개사만 해당) 확대문제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단, 3급2호,4급2호 는 점자사용 필요 성이 기재된 ④호)
	3급 4급 5급 6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0이하일 경우에 시간연장 가능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단, 시각장애6급 은 ④호)
	기타 (시각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시험시간 1.5배 연장	④호
뇌병변 · 지체 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시험시간 1.5배 연장 대필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경증 뇌병변 (4급~6급)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하지지체	시험시간 1.5배 연장	④호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①,②,③호중 하나
청각 장애	2급~6급	수화통역사 배치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①,②,③호중 하나
기타 장애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 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④호
	임신부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확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 증후군(논문형시험)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시험중 확장실 사용 허용	④호 (서로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받아야 함)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 증빙서류

- 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인은 시장·군·구청장이 발행한 장애인등록증빙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1부.
- ② 국가유공자에우 및 지원에 관한 법시행령 제14조제3항에 의한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제1항에 의한 장애급여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관계기관이 발행한 보형급여확인원 원본 1부.
- ④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사진단서(의사소견서 포함) 1부.

##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1.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
  - ※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c.or.kr)의 병원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후 해당되는 병원에서 발급해야 하며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발급일자 : 해당 시험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발급(원본)
3.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 ① 장애유형 및 등급(정도)에 대한 구체적 진술
  -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③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장애유형 및 정도에 따른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예시) 점자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를 신청할 경우  
 -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진단서(소견서) 기재 내용이 다를 경우 의사진단서(소견서)에 의함
- 임신부 수험생의 경우에도 임신주수, 편의지원 내용과 그 필요성이 모두 기재되어야 함

〈표 2-22〉 의사진단서(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장애유형 및 정도		예 시
시 각 장 애	3급2호 4급2호	상기인은 시각장애 3급2호이며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시험시 문제 판독에 점자 자료가 요구되는 자로서, 점자문제지 및 시험시간 연장, 음성지원 컴퓨터가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6급	상기인은 시각장애 6급이며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기 타	상기인은 편안 약시와 무수정체 장애에 해당되는 자로서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문제 판독이나 일반 답안지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경 증	상기인은 뇌병변장애 4급이며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손상된 자로서 손, 목의 운동장애로 인해 시험시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시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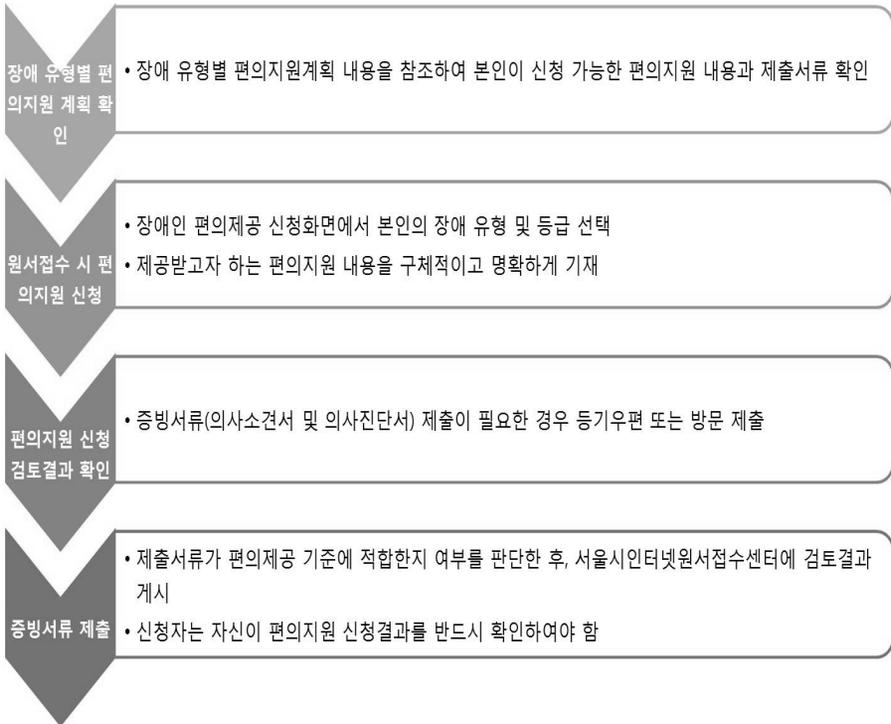
### (3)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서는 다음과 같은 장애유형별 응시자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 □ 적용대상

- 2016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자
  - 일시적인 신체장애 등으로 인해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및 임신부 등

#### □ 신청절차





□ 편의지원 제공 신청 시 유의사항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를 사전에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있는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등을 확인

\* 상이등급자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의 장애등급표를 기준으로 본인이 어떤 장애유형과 등급에 해당되는지 참조하여 편의지원을 신청

○ 원서접수시 장애편의지원 유형 체크 후 하단의 입력란에 본인의 장애등급, 지원받고자 하는 편의 내용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

○ 별도의 장애인 증명서 제출은 하지 않으며,

- 원서접수 시 편의지원 신청자로부터 장애 등급 및 유형 등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으로부터 조회 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음.

- 단, 증빙서류(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가 필요한 편의지원 항목을 신청할 경우 해당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2014~2016년도 서울시 및 국가직 시험에 서류를 제출하여 편의지원을 받았던 수험생이 동일한 내용의 편의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서류제출을 면제함.

해당시험	세부 조건
2014. 4.19. 시행 국가직 9급 시험	1. 당시 제출서류가 2014. 3. 25. 이후에 발급받은 것일 것 2. 당시 제출한 서류의 전문가가 인정한 편의지원 내용과 이번에 신청하는 내용이 동일할 것
2014. 6.28. 시행 서울시 시험	
2014. 7.26. 시행 국가직 7급 시험	
2015. 3.14. 시행 서울시 사회복지직 시험	
2015. 4.18. 시행 국가직 9급 시험	
2015. 6.13. 시행 서울시 시험	
2015. 8.29. 시행 국가직 7급 시험	
2016. 3.19. 시행 서울시 사회복지직, 기술직 시험	
2016. 4. 9. 시행 국가직 9급 시험	

▶ 이 외의 시험에 응시한 경우 증빙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함.

□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제출서류

장애유형	편의지원내용(복수 신청 가능)	제출서류	
시각 장애	1급, 2급, 시야 10도 이내의 3급·4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시간 1.7배 연장</li> <li>·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li> <li>※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없음</li> <li>· 시야 10도 이내의 3급·4급은 의사진단(소견서) 원본 1부</li> </ul>
	3급, 4급, 5급,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li> <li>※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li> </ul>	·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시간 1.5배 연장</li> <li>✓ 5~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 만인 경우만 시간 연장 신청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출서류 없음</li> <li>· 5~6급(좋은 눈의 교정시력 0.3 미만)은 의사진단서 원본 1부</li> </ul>
	기타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li> <li>※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li> </ul>	· 제출서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시간 1.5배 연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진단서 원본 2부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li> </ul>
	뇌병변 및 지체장애	중증 뇌병변 (1급, 2급, 3급) 중증 상지지체 (1급, 2급,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시간 1.5배 연장</li> <li>· 대필</li> <li>·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li> <li>· 보조공학기 허용</li> <li>· 별도 시험실 배정</li> <li>· 휠체어 전용 책상</li> </ul>
경증 뇌병변 (4급, 5급,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시간 1.5배 연장</li> <li>· 대필</li> </ul>	· 의사진단(소견서) 원본 1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li> <li>· 보조공학기 허용</li> <li>· 별도 시험실 배정</li> <li>· 휠체어 전용 책상</li> </ul>	· 제출서류 없음
경증 상지지체 (4급, 5급, 6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축소)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li> <li>· 보조공학기 허용</li> <li>· 별도 시험실 배정</li> <li>· 휠체어 전용 책상</li> </ul>	· 제출서류 없음
하지지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시험실 배정</li> <li>· 휠체어 전용 책상</li> </ul>	· 제출서류 없음
청각 장애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통역사 배치</li> <li>·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li> <li>· 보청기 등 지참 허용</li> </ul>	· 제출서류 없음
기타 장애	임신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중 화장실 이용</li> </ul>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특수 및 중복장애 일시적인 신체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별도 시험실 배정</li> <li>· 낮낮이 조절 책상</li> </ul>	· 제출서류 없음
		· 장애정도 등 검증 후 결정	· 의사진단(소견서) 원본 2부 (상이한 종합병원에서 각 1부씩 발급)

※ 시간연장 내용이 포함될 경우 반드시 종합병원 의사진단서로 제출(소견서 불인정)

※ 확대문제지 : B4규격의 118%, 150%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B4규격의 82%로 축소 / 확대답안지 : A4규격의 표기형

※ 수학, 과학, 경제학원론 등 일부 과목의 경우 점자문제지 및 음성지원컴퓨터가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



□ 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발급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 ※ 단, 임신부의 경우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것도 허용
  - ※ 종합병원 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www.hira.or.kr](http://www.hira.or.kr)
    - [병원·약국 찾기] 서비스에서 조회
- 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는 원본만 유효하게 인정
- 발급일자 : 2014.3.25. 이후 발급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① 장애유형 및 등급에 대한 구체적 진술

장애유형	장애정도(등급)
시각장애	좌/우 각각의 교정시력 및 시야
뇌병변장애	장애 등급 및 장애정도에 대한 구체적 내용
임신부	임신주수, 필기시험일 현재 출산예정 여부

②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

- ◇ 응시동작 관련 불편사항

③ 편의지원 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

- ◇ 편의지원 신청가능 내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 모두 기재

○ 의사진단서/소견서 예시

장애유형		의사소견서 예시
시각장애	3급~4급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6, 우 0.05이고, 양안의 시야는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자로서 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응시가 불가하오니, 음성 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시각장애	5급~6급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2, 우 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뇌병변 장애	경증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4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임신부		상기인은 임신 ( )주, 필기시험 예정일(2016.3.9)을 전후하여 출산이 예상되는 산모로서, 자궁의 확대로 인한 방광 압박으로 인해 요의를 참기 힘들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어 시험 중 화장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 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다음의 경우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음

- ✓ 원서접수 시 신청한 내용과 의사소견서 내용이 다를 경우
- ✓ 증빙서류(의사소견서 및 진단서)의 형식이 올바르지 못할 경우
- ✓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 제3장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 Ⅲ.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관련 해외사례

#### 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해외 및 국제 법률·조약

##### 1)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 (1) 개관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은 신체 장애, 정신 장애, 지적 장애를 포함하여 장애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UN 인권 협약이다. CRPD는 21세기 최초의 국제 인권법에 따른 인권 조약이며,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UN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2008년 4월 3일까지 중화인민공화국, 사우디 아라비아를 포함한 20개국이 비준하였고,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되었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비준국은 165개국이다. 유럽연합의 경우 2010년 12월 23일에 함께 집단 비준한 바 있다(Wikipedia, 2016).

2001년 12월 제56차 UN 총회에서 멕시코의 제안으로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촉진하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적 국제조약" 결의안을 56/168로 채택하였다. 제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장애인권리협약 특별위원회는 총 8회 개최되었고, 약 70개국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참여하였다. CRPD에서는 기본적으로 전 세계의 장애인들이 사회적·문화적·경제적인 차별과 편견을 겪고 있으며 장애로 인해 사회참여의 제약은 물론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CRPD는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를 범국가적으로 천명한 대표적인 국제 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CRPD는 전문과 제1조의 목적을 비롯해 총 50개 조문으로 이루어진 협약과 총 18조로 이루어진 선택의정서로 구성되어 있다. 각 조문은 장애인의 기본적인 인권 및 권리, 사회참여, 경제적 자립, 건강한 생활 등 여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동 및 편의, 여성장애인 차별(multiple discrimination), 인식개선과 관련된 영역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강하게 천명하고 있다(CRPD, 2010).



## (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조항

CRPD의 전문 (m)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강조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촉진이 인류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을 상당히 발전시킬 수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CRPD, 2010).

제8조(인식재고)에서는 장애인의 부정적 및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과 더불어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제8조(인식재고)에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과 관련해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 (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
- (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
- (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

이와 더불어,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 (a)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 및 지속
  - (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
  - (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보다 증대된 사회적 인식의 촉진
  - (iii) 직장 및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 촉진
- (b) 모든 영역을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
- (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미디어 기관들이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권장
- (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증진

CRPD 제8조(인식재고) 뿐만 아니라 타 조문에서도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제24조(교육)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과 관련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히 확장

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CRPD, 2010).

또한, 제25조(건강)에서도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CRPD, 2010).

〈표 3-1〉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CRPD 조문

조문명	주요내용
서문	(m)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의 촉진이 인류의 발전 및 사회·경제적 발전과 빈곤 퇴치에 있어 강화된 소속감 상당한 진보를 가져올 것임을 인정하며,
제8조 인식 제고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이며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가족 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심 고취;</li> <li>(b) 성별과 연령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그리고 유해한 관행 근절;</li> <li>(c) 장애인의 능력과 이들이 기여한 바에 대한 인식 증진</li> </ol> </li> <li>2.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a) 효과적인 대중인식 캠페인을 추진, 지속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i)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 증진;</li> <li>(ii)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및 보다 증대된 사회적 인식의 촉진 ;</li> <li>(iii) 직장과 고용시장에서 장애인의 기술, 실적, 능력과 기여에 대한 인정 촉진;</li> </ol> </li> <li>(b) 모든 영아를 포함하여 모든 단계의 교육제도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태도 양성;</li> <li>(c) 본 협약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모든 미디어 기관들이 장애인을 묘사하도록 권장;</li> <li>(d) 장애인과 이들의 권리에 대한 인식 훈련 프로그램 증진</li> </ol> </li> </ol>
제24조 교육	4. 이러한 권리의 실현을 돕기 위하여 당사국은 장애인을 포함하여 수화, 그리고/또는 점자 언어 활용이 가능한 교사 채용과 각 교육단계별 전문가 및 담당자 교육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그러한 훈련은 장애인식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절한 확장적이고 대안적인 방식, 수단, 그리고 형식의 의사소통, 교육기술 및 자료의 사용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25조 건강	당사국은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 없이 최고로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당사국은 의료관련 재활을 포함하여 성별에 민감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2) 인천전략(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

### (1) 개관

UN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UN ESCAP) 회원국은 201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인천에 모여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을 위한 행동방향을 정립하였다. 아·태장애인 10년(2003-2012) 이행 최종평가를 위한 정부간 고위급회의는 대한민국 정부의 초청으로 ESCAP이 주관하여 이루어졌으며, 제2차 아·태장애인 10년을 결론짓고 새로운 10년을 시작하였다. 정부간 고위급회의에서 회원국들은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에 관한 장관선언문과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실천을 위한 인천전략(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sia and the Pacific)을 채택하였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인천전략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그리고 세계에서 처음으로 지역차원에서 합의된 장애포괄적인 개발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년여에 걸친 정부와 시민사회 이해당사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마련된 인천전략은 10개의 목표와 27개의 세부목표, 62개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인천전략은 장애인권리협약과 아·태장애인을 위한 포괄적이고 장벽 없는 권리에 기반한 사회를 향한 비와코 새천년 행동계획에 기반하고 있다. 인천전략은 다음과 같은 주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다(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 장애 포괄적인 개발과 장애인권리협약 비준 및 이행의 촉진
- 시간제한적이고 측정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 포함
- 장애인권리협약 원칙에 기반

인천전략의 주요 원칙은 개인의 천부적인 존엄성, 선택의 자유를 포함한 자율 및 자립에 대한 존중, 비차별,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와 통합, 인간의 다양성과 인류의 일부로서 장애인의 차이에 대한 존중과 수용, 기회의 균등, 접근성, 남성과 여성의 평등, 장애아동의 발전적인 역량에 대한 존중과 정체성 유지를 위한 권리의 존중 등이다. 이와 더불어, 인천전략의 주요 목표 중에는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국가적 및 지역적인 노력과 협력을 제시하고 있고, 장애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이 아·태 지역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UN ESCAP, 2016).

## (2) 장애 인식개선 관련 조항

인천전략 서문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재고하고 혁신적 모범사례 개발 및 정책 참여 등을 통해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있다. 아·태지역 장애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보호하기 위해 인천전략 7(정책방향)-a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이행·평가·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7(정책방향)-m에서는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UN ESCAP, 2016).

그리고 인천전략에서는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인천전략의 성공적인 달성과 함께 장애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UN ESCAP, 2016).

- a. 인천전략의 이행에 다양한 분야의 전국적인 관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부부처 및 기관과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 장애인가족 옹호 단체, 연구기관, 민간부문 등 시민사회를 참여시킨다.
- b. 인천전략의 목표와 세부목표 달성에 관한 국가행동계획을 개발하고 그 이행상황을 평가·보고한다.
- c. 인천전략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모든 부문과 행정기관에 널리 배포되도록 한다.
- d.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위해 '장애인 권리 실현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과 같은 국가 및 하부국가 단위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 e. 정책 입안의 기초자료 제공을 위해 장애인 실태에 관한 연구를 권장하고 지원한다.

〈표 3-2〉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인cheon 전략 주요 내용

조문명	주요내용
서문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의 권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인식을 제고하고 혁신적 모범사례 개발 및 정책 참여 등을 통해 현재의 성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한 시민사회, 특히 장애인의 단체 및 장애인을 위한 단체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고 주목하며,
정책방향 7-a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하고 이행하며 평가하고 강화한다.
정책방향 7-m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제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 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장애 관련 국가조정기구의 임무	c 인cheon 전략을 자국어로 번역하고 접근 가능한 형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 하여 모든 부문과 행정기관에 널리 배포되도록 한다. d 아태장애인 10년에 걸쳐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강화하기위해 '장애인 권리 실천 캠페인(Make the Right Real Campaign)' 과 같은 국가 및 하부국가 단위의 캠페인을 수행한다.

### 3) 일본

#### (1) 법적 근거

일본은 「장애자기본법」에서 모든 장애인에 대해 개인의 존엄성이 존중되고 그 존엄성에 걸맞는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으로서 사회, 경제, 문화 기타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 동 법에서는 누구도 장애인에 대해 장애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기타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장애자기본법, 2016).

또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은 전문 9조 및 부칙 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본 법률은 2000년 12월 6일에 법률 제147호로 문부과학성에서 제정되었다. 전문은 크게 다음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부록 2 참조).

- 1조 목적
- 2조 정의
- 3조 기본이념
- 4조 국가의 책무

- 5조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 6조 국민의 책무
- 7조 기본계획의 책정
- 8조 연차보고
- 9조 재정상의 조치
- 부칙구성(1조 시행기일, 2조 재검토)

## (2) 장애 인식개선의 사례

### ① 장애인 주간

「장애자기본법」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인식개선을 위해 국민들로 하여금 장애인 복지에 대해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도모하고, 사회 전 분야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더욱 독려하기 위하여 ‘장애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다(법 제7조). 현재 매년 12월 3일-9일까지 1주일을 ‘장애인 주간’으로 지정하여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로 하여금 ‘장애인 주간’의 취지에 따라 각종 인식개선 사업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 동안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며, 내각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주요 사업의 계획 및 활동 결과를 내각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을 통해 추구하고자하는 주요한 목표는 다음과 같다(남용현, 2011; 장애자기본법, 2016).

- 공생사회(장애 여부에 상관없이 개인의 인격과 개성을 존중하는 사회)의 이념 보급
- 장애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
- 일반 국민이 일상생활 가운데 쉽게 실천 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 방법 혹은 이와 관련한 다양한 아이디어의 제시 등

‘장애인 주간’ 동안에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장애인과 접할 수 있는 각종 교류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각종 우수사례 소개 및 장애체험행사 개최 등 국민 각 계층이 폭 넓게 참가할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주간’에 전국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마음의 고리를 넓히는 장애인 이해 증진 사업’이라는 체험행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이해와 관련된 작문 및 포스터 입상

작품을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하여 장애인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장애인 주간’에 중앙 행정기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실시하는 주요 행사내용은 <표 3-3>과 같으며, 행사 추진 계획과 결과를 모든 국민이 볼 수 있도록 각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다(남용현 외, 2011).

<표 3-3> 장애인 주간 행사 주요 내용

행사 명칭	대상자	내용	주최기관
장애체험 교실	대학생	휠체어 체험, 보조공학기기 체험, 고령자 모의 체험 및 요양체험을 통해 심리적 장벽 제거 추진	국토교통성 관동운송국
교통장벽 제거 비교체험 코스	지자체 사회복지협의회 직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장애인에 대한 교통장벽 제거, 관련시설 설계, 감독 및 유지관리 등 업무에 장애인의 편익이 반영되도록 함	국토교통성 긴키지방사무소
모범장애인 장관 표창	장애인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하여 타인에게 모범이 되는 장애인에 대한 후생노동성 장관 표창	후생노동성
인권주간	국민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을 실시하기 위해 연간 강조사항을 알리는 각종 인식개선 활동을 전국적으로 실시함	법무국
장애인주간 연속 세미나	국민	장애인을 지원하는 민간단체가 3일간 연속으로 교육, 복지, 고용과 관련된 테마로 세미나 개최	대학 직업재활협회 고령·장애자고용 지원기구
인권주간 인식개선활동	국민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슬로건을 확산시키기 위한 전시회 등 실시	지방법무국
전국 특별지원 교육진흥협의회	학교관계자 학생부모 관련단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전국 현황 및 추진정책에 대해 관계자가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	문부과학성 초등교육과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 공로자 표창	관련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과 관련하여 공로자에 대한 내각부 장관 표창	내각부
장애인식개선 관련 광고	국민대상	장애인 인식개선을 위한 신문, 방송 홍보책자, 팸플릿을 제작하여 배포	도쿄도 가나가와현 와가야마현
장애인 제작 상품 전시 판매회	국민	장애인이 제작한 물건 및 제품의 전시 및 판매	고지현 센다이시

출처: 남용현, 윤경인, 홍지영, 정광진 (2011). 2011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 ② 장애인 고용 관련 인식개선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장애자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장애인고용을 방해하는 요인의 해소를 위해 장애인 고용에 대하여 사업주 및 기타 일반 국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광고나 기타 개선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법 제76조).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매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장애인고용 지원 주간’으로 설정하여 일본 고령·장애자고용지원기구, 후생노동성, 지자체가 협력하여 사업주 및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장애인고용 우수 사업주를 표창하고 장애인고용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한다. 한편 장애인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후생노동성은 2009년부터 ATARIMAE 프로젝트를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장애인, 관련분야 종사자는 물론 기업 및 ‘장애인고용에 무관심한 사람’을 포함한 국민 대다수를 대상으로 인식개선을 실시하는 사업이다. 프로젝트와 관련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도 접근이 가능하며,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각종 정보 제공, 장애 인식개선 운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의 사업을 ‘ATARIMAE 프로젝트 사무국’이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를 통해 일본에서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원인이 ‘장애인의 근로 의욕 혹은 능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기업이나 비장애인들의 편견과 무관심 때문’임을 강조하고 있다. ‘ATARIMAE 프로젝트’ 사이트 운영을 통해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장애인 고용의 가능성을 교육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과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사이트 내에 ‘ATARIMAE 선언’이라는 코너를 설치하여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각계 각층의 유명인사 및 연예인 등 시민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장애인이 일하는 것이 당연한 일본을 만들자’라는 메시지를 게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고용주와의 인터뷰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게시하고 있다(남용현 외, 2011).

## ③ 교육기관의 장애 인식개선

일본에서는 각급(초·중·고) 학교에서 인권 교육의 일환으로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하기 보다는 법에서 적시한 과정의 하나로 통상적인 방식에 의해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인권교육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6).



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중·고 및 특수 학교)에서 인권교육의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방교육위원회의 관장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 층에 맞게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의 내용을 보면 대략 8개의 목표 과제 영역을 제시하고 1년 동안 월간 계획에 의해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8개의 목표 과제 영역은 동화문제, 여성문제, 개인존중, 장애인, 고령자, 외국인, 인권일반, 기타인권 등이다. 이중 장애인 인권에 대한 교과명은 ‘인간의 존중과 기본적인 인권’이며 교육목표는 차별문제 해소와 적극적인 약자보호(구제), 장애인 체험을 통한 장애인 이해, 새로운 인권이 주장되는 이유 이해하기 등이다. 교육 방법은 연중 주제별로 ‘강조 월간’, ‘강조주간’ 등을 설정하고 교과활동, 특별활동, 체험활동 등을 실시한다.

#### ④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연대

일본에서는 장애 인권교육 및 인식개선 교육에 따른 연대 역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가정과 지역사회 연대가 활발하다. 학생들의 장애에 대한 인권 감각 및 감수성의 육성을 위해서는 교육 기관에서의 학습 성과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보호자와 가족 등의 이해를 촉진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관계 기관과의 연대 및 협력을 위해서 인권교육과 계발을 위한 유치원, 학교, 사회교육기관, 인권옹호위원회, 지방 법무국 등 유관 기관과의 연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익법인, 민간 자원봉사단체, 기업, 대학, 연구기관, 시민단체 등과도 연대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교육기관(학교)간 협력과 연대를 위해서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등과 연대하여 학생 주기별 교육에 상호 협력하여 합동연수 등을 기획 및 실시하며 학교간 정기적인 연대협의회 개최나 상호 공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기타 자원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학교간 커리큘럼 정비를 통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교육을 실시하며 전문가를 통한 유용한 지식 수용, 유관 단체를 통한 체험활동 자문 체제와 지방 공공 단체나 교육위원회의 지원 체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6).

#### 4) 시사점

장애 분야의 전 세계적인 기준 및 표준인 CRPD를 비롯하여 아·태 지역의 국제적인 장애 규범인 인천전략 등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세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범과 해외 사례를 토대로 제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RPD의 전문 (m)에서는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와 다양성에 기여한 장애인들의 가치 있는 현재 및 잠재적 역량에 대한 인식, 그리고 장애인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의 완전한 향유를 강조하고 있으며, 동시에 제8조(인식재고)에서는 장애인의 부정적 및 차별적인 인식의 문제점 및 인식개선의 중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특히, 제8조(인식재고)에서는 인식개선을 위해 각 당사국이 취해야하는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적절한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렇게 장애 인식개선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관련 사항을 제시함으로써 CRPD에서는 인식개선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과 사항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장애인에 대한 따돌림이나 여성 장애인과 관련된 인식개선 내용을 포함하여 보다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영역 및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인천전략에서도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구체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인식개선을 위한 각 국가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인천전략 7(정책방향)-a에서는 장애로 인한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권리 실현을 지원하기위해 입법·행정 및 기타 조치를 채택·이행·평가·강화하도록하고 있으며, 7(정책방향)-m에서는 새로운 아·태장애인 10년 동안 아·태지역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행동을 개선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아·태장애인 10년의 이행기체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예산 지원을포함하여 인식개선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도록하고 있다. 이러한 인천전략의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식개선 혹은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우리나라의 인식개선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즉, 보다 구체적인 행동 전략 차원에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일본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주간’ 동안 장애인 인식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며, 내각부는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한 주요 사업의 계획 및 활동 결과를 내각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고 있다. 홈페이지를 통한 인식개선 활동에 대한 공표는 공식적으로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정부 부처의 태도와 정책을 알 수 있는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러한 공식적인 정보 공개는 장애인식개선의 관심과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하나의 유의한 방법이다. 즉,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에 대한 현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언론을 이용한 사회적 관심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정부 부처의 참여를 높여 사회 전반적으로 장애 인식을 개선할 수 있다.

끝으로, 일본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는 인식개선 교육은 통상의 학교(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방교육위원회의 관장으로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고등학교까지 학년 층에 맞게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과제별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교육과정과 교과수준에 따라 상이한 교육 방법을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개별적이고 차별화된 인식개선의 내용과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장애 인식개선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유용한 방법 중 하나이다. 현재 학년 수준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우선적으로 학생들의 학습 수준이나 특성에 부합하는 차별화 되고 개별적인 교육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 장애인 응시자 대상 시험편의 해외 사례

### 1) 미국

#### (1) 법적 근거

1990년에 제정되고 2009년에 개정된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는 시험 참여를 통한 경쟁과 관련하여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비교해 공정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시험을 주관하는 주체는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시험편의가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장애인들은 자신의 능력이나 재능을 적절하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에 기초해 ADA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ADA,

2009).

미국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에서는 2010년 9월에 ADA 타이틀 II(주정부 및 지방정부 서비스)와 ADA 타이틀 III(공공 편의 및 민간 시설)과 관련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정을 발표하였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규정은 표준화된 시험 혹은 전문 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 응시자들의 시험편의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규정은 응시시험·전문 면허시험·자격시험 등을 실시하는 민간, 주정부, 지방정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 법률 및 의학시험과 같은 전문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주체, 미용사·전기배관사 등과 같은 전문기술 자격 시험을 실시하는 단체·업체 등이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 제공해야할 편의와 각 단체·업체들이 시험 주관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Department of Justice, 2015).

응시시험·전문 면허시험·자격과 관련된 시험 등을 주관하는 모든 민간, 주정부, 지방정부나 고등학교 및 대학교를 포함한 고등교육 기관, 법학 및 의학 등 전문 영역과 관련된 시험, 각종 전문기술을 검정하는 시험을 주관하는 단체나 기관은 ADA에서 제시하는 정당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ADA에 의해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의 종류와 범위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ADA, 2009; Department of Justice, 2015).

- 고등학교 학위와 동등한 검정고시(예를 들어, GED 등)
- 고등학교 입학시험(예를 들어, SSAT, ISEE 등)
- 대학교 입학 시험(예를 들어, SAT, ACT 등)
- 법대, 의대 등 전문대학 입학 시험(예를 들어, LSAT, MCAT 등)
- 일반 대학원 입학시험(예를 들어, GRE, GMAT 등)
- 상용기술 자격시험(예를 들어, 미용사 검정 시험 등)
- 전문자격시험(예를 들어, 사법고시, 의사면허시험, 임상평가지험 등)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는 일반적 시험을 위한 환경이나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들이 표준시험이나 전문시험을 볼 때 자신들의 능력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조기구나 서비스를 제공하기도한다. 대표적인 시험편의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ADA, 2009; Department of Justice, 2015).



- 점자 및 큰글자 확대 시험지
- 화면독서 프로그램
- OMR 답안지 작성을 위한 대필자 및 서술형 답안 작성을 위한 대필자
- 시험 시간 연장
-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시험장소
- 시험집중을 위한 개별 시험장소
- 청각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물리적 촉진
- 시험 중 의약품 복용(예를 들어, 당뇨병 환자가 시험 중 혈당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ADA에 의하면 장애가 있는 응시자는 필요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자격이 있다. ADA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인이란 주요한 일상생활(예를 들어, 보기, 듣기, 학습하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등)과 주요한 신체기능(예를 들어, 신경, 내분비, 소화기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신적 혹은 신체적인 손상을 입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 유무에 대한 판정을 위해서 종합적이며 광범위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복용하고 있는 의약품, 의료보장기구, 일상적인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제외한 저시력 보조기구, 의수 및 의족, 보청기, 달팽이관 이식, 혹은 이동보조기기 등에 의한 신체적인 개선은 고려하지 않고 판정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하지만 특정 복용 약물에 의한 부작용, 특정 의료적 치료나 처치에 따른 부담 등은 장애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한다. 일상생활에 대한 중대한 제약은 손상이 생활 조건에 미치는 정도와 장애인이 그러한 활동을 지속하는 기간에 의해서 결정된다.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수행가능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다고 판정한다(ADA, 2009).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은 장애인의 시험 점수가 반드시 장애인의 능력, 성취도, 혹은 시험이 측정하고자하는 재능을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ADA에 의하면 응시와 관련된 시험, 채용시험, 전문면허시험, 전문자격시험, 전문기술시험 등 표준화 및 전문적 시험을 보는 장애인 응시자에게는 접근이 가능한 시험 장소에서 시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상응하는

접근 가능한 시험 장소에서 시험을 보도록 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적절하게 시험에 참여하도록 필요한 보조기기, 시험 방식의 조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해야하며 이러한 추가적인 조치 역시 가능한 시험편의의 사례로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된 시험편의가 시험이 평가하고자하는 능력이나 시험 목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급 계산기 사용이 시험편의이고 시험의 목적이 방정식을 푸는 것이며 계산기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등의 단순 계산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산기 제공은 시험편의로 인정된다. 그러나 시험의 목적이 장애인 응시자의 기초적인 수리 계산 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계산기 제공은 부적절한 시험 편의로 간주된다(ADA, 2009; Department of Justice, 2015).

또한, 시험을 주관하는 모든 주체는 장애인 응시자가 시험편의를 요청할 경우에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시험편의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편의를 위해 장애를 증명하는 공식적인 서류를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요청은 합리적이며 요청하는 정보는 반드시 시험편의에 국한되어야 한다. 장애를 증명하기 위한 문서는 응시자의 장애와 장애인 응시자가 요청하는 시험편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기록되어야 한다. 문서의 내용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정도 및 특성과 응시자가 참여하고자하는 시험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상이하다. 인정 가능한 문서의 종류로는 다음과 같다(Department of Justice, 2015).

-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추천서 및 소견서
- 과거 시험편의 제공 기록
- 교육 관계자에 의한 관찰
- 전문 심리평가 및 전문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진단 경력

## (2) 시험편의의 사례

### ① 미국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

미국 교육평가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는 미국내 일반 대학원에 진학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학원 입학 시험(Graduate Record Examination, GRE)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 및 특수한 건강상태로 인해 특별한



편의가 필요한 응시자들을 대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GRE 시험과 관련된 대표적인 시험 편의로는 다음과 같다(ETS, 2016).

- 시험시간 연장(50%, 100% 연장)
- 약물, 음식 및 화장실 사용을 위한 추가 휴식시간
- 장애 유형에 따른 시험편의(예를 들어, 점자문제지, 확대경 사용,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시험장소 등)

컴퓨터로 GRE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보조기구나 장치를 제공한다(ETS, 2016).

-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키보드
- 인텔리키스 키보드
- 터치패드가 부착된 키보드
- 화면확대 프로그램
- 선택이 가능한 최전면 및 후면 배경 색깔
- 트랙볼 마우스

이와 함께,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음의 보조인력을 제공한다(ETS, 2016).

- 대독자
- 대필자
- 구두통역사
- 수화통역사

장애 때문에 컴퓨터를 이용해 시험을 볼 수 없는 경우 종이로 된 전통적인 시험을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다음의 시험편의를 제공한다(ETS, 2016).

- 필기를 지원하는 보조인력
- 점자 사용을 위한 점필과 점판
- 퍼킨스 점자단말기

이와 더불어, 장애인 응시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시험지를 제공한다

(ETS, 2016).

- 점자문제지
- 확대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 음성녹음 문제지
- 음성출력이 가능한 촉각 문제지
- 음성 출력이 가능한 확대 문제지

전통적인 시험편의와 더불어, ETS에서는 특정 건강상태로 인해 시험편의가 필요한 응시자를 대상으로 편의를 제공하기도 한다. 특정 건강상태란 주요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종류의 질병이나 질환을 말하며, 구체적으로 소화기능, 면역기능, 호흡기능, 순환기능, 내분비기능에 영향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당뇨병, 뇌전증, 만성통증과 같은 질환은 공식적으로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 가능하며 일부 의료 전문가에 의해서 진단이 가능한 질환의 경우에는 제한된 시험편의만 제공되기도 한다. 건강상태와 관련해 제공되는 일부 제한적인 시험편의의 예로는 다음과 같다(ETS, 2016).

- 특수조명
-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책상과 의자
- 약물 및 영양 섭취를 위한 추가 휴식
- 별도 시험장소

특정 건강상태로 인해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문의사 혹은 자격을 갖춘 의료인이 작성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에는 건강상태의 정도, 필요한 시험편의,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구체적인 사유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시각장애인 지팡이, 지팡이, 목발, 휠체어, 의지보조기, 안내견 등과 같은 이동보조 기기나 보청기, 증폭기와 같은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은 별도의 승인 없이 시험 중에 이용가능하며 심장 박동수 측정기, 인슐린 펌프와 같은 특정 건강상태 유지를 위한 기기 역시 시험 중 사용할 수 있다(ETS, 2016).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모든 응시자들은 반드시 장애 혹은 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적인 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과거 3년 내에 채용 및 고등교육 기관 입학에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시험편의 대상으로 인정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채용



기관이나 교육기관으로부터 증명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다. 과거 2년 내에 ETS로부터 시험편의를 받은 적이 있고 동일한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 모든 증명서는 ETS에서 정한 의료전문의 혹은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되어야 하며 ETS는 증명서를 작성한 전문가에게 직접 연락해 증명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다음의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ETS, 2016).

- 2배 시험 시간 연장 혹은 추가 휴식 시간을 요청하는 경우
- 신체적 및 정신적인 장애로 인해 시험유형과 관련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 장애 진단이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 과거 2년 내에 ETS에서 제공한 시험편의와 다른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ETS에서 제시하는 시험편의가 본인의 장애와 맞지 않는 경우

시각장애 혹은 저시력 장애로 인해 화면 확대 프로그램, 선택 가능한 전면 및 후면 배경 색상 조절,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화면독서 프로그램, 오디오 음성 문제지, 대독자, 대필자, 점자 사용을 위한 점필과 점판, 퍼킨스 점자정보 단말기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장애 증명은 필요하지 않다(ETS, 2016).

## ②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미국 의료시험 위원회(National Board of Medical Examiners, NBME)는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프로그램을 대신하여 의료면허 시험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명이 가능한 장애나 질환을 갖고 있는 시험 응시자들은 USMLE에 공식적으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제공 가능한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다(USMLE, 2016).

- 휠체어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
- 높이 조절이 가능한 컴퓨터 책상
- 추가 시험시간(시험시간의 1.25배, 1.5배, 2배)
- 추가 휴식시간(25%, 50%)

응시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다음 서류나 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USMLE, 2016).

- 응시자의 장애의 특성과 장애가 일상생활에 미치는 정도를 기록한 자기소개서
-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예를 들어, 심리 및 정신평가 결과보고서, 의료 기록지, 학업성적표, 상사 혹은 지도교수의 소견서, 직업평가 결과보고서, 임상평가 결과보고서, 과거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된 증명서 등)
- 종합평가 보고서(예를 들어, 전문의가 본인의 전문 분야를 명시하고 직접 날인한 공식적인 평가 결과보고서 등)

장애인 응시자가 작성하는 자기소개서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애와 USMLE에서 실시하는 시험과의 연관성과 요청하는 시험편의가 시험을 보는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한다. 과거에 공식적인 혹은 유사한 시험을 본 경우에는 제공받은 시험편의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출할 수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중 시험편의를 받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나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가 학습장애, 주의력결핍장애, 난독증, 발달장애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아동시기와 관련된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USMLE, 2016).

### ③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 대학 시험: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PSAT 10, AP 시험 등

미국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장애 학생들이 SAT와 같은 대학 입학 시험을 보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는 시험편의와 관련해 일반적인 편의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세부적인 시험편의 규정 및 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는 학생들은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학생들은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장애 학생서비스부(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SSD)로부터 시험편의에 대해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예를 들어,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PSAT 10, AP 시험 등)과 관련된 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로



부터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College Board, 2016).

첫째, 학생은 반드시 증명 가능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공식적인 진단 결과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없다.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는 장애로는 전맹 및 시각장애, 학습장애, 뇌성마비나 당뇨병과 같은 신체장애 및 건강장애, 운동장애 등이며, 이 외에도 공식적인 진단이 가능한 장애의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다. 심리 및 정신평가 결과보고서나 의사의 진단 결과보고서 등으로 장애를 증명할 수 있다.

둘째, 대학위원회(College Board)는 SAT, SAT 과목별 시험, PSAT/NMSQT and PSAT 10, AP 시험에 한해서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학생이 가지고 있는 장애는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시험을 보는데 반드시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일기, 쓰기, 장시간 착석과 같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의 대다수 시험은 필기시험으로서 기타 신체 기능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험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셋째, 요청한 시험편의가 학생에게 필요한 것이어야 한다. 즉 학생들은 요청한 시험편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시험시간 연장을 요청한 학생은 본인의 장애로 인해 전통적인 시험시간 동안 시험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반드시 증명해야 한다(College Board, 2016).

대학위원회(College Board)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다(College Board, 2016).

- 시험출제: 확대문제지(글자크기 14 pt., 20 pt. 등), 시험 문제지를 읽어주는 대독자, 하이라이터 사용, 구두 및 수화 문제 설명, 시각장애 용 확대경, 색조 덮개, 점자 및 점자 그래프, 문어 응답에 대한 점자 단말기, mp3 파일을 이용한 오디오 문제지, 보조기기를 이용한 문제지 등
- 답안작성: 구두 받아쓰기와 대필, 테이프 녹음기, 철자수정 및 교정이 가능한 컴퓨터, 문법 체크가 가능한 컴퓨터, 복사 및 붙이기가 가능한 컴퓨터, 음성 녹음을 통한 답안 작성, 확대 답안지, 4측 연산이 가능한 계산기(시험에서 허용하는 경우) 등
- 시험시간 및 시간조정: 추가 휴식, 시험시간 연장, 하루를 초과하는 시험시간

- 연장, 특정 시험시간 및 시험날짜 조정 등
- 시험장소: 소그룹 시험, 개별시험장소, 시험감독관이 동석한 특별 시험장소, 응시자가 원하는 좌석배치 등

## 2) 영국

### (1) 법적 근거

영국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은 2010년 전부터 존재하던 여러 종류의 반차별 법률과 조항을 통합하여 제정된 단일 법률이다. 평등법(Equality Act)은 기존 법률들을 간략하게 재구성해 법률의 전체적인 이해를 높였으며 법률 간의 충돌이나 불일치를 제거하여 차별 및 불평등과 관련해 통일된 법적인 규정을 제시하고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 의해서 장애인들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나 불평등한 대우로부터 권리를 보장받고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하여 최대한 동등한 사회적 대우를 누리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등법(Equality Act)에 의해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인과 공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영역은 다음과 같다(Equality Act, 2010).

- 고용
- 교육
- 상품, 서비스, 시설물에 대한 접근성
- 토지 및 자산의 구매 및 대여

평등법(Equality Act)은 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보장할 뿐만 아니라 장애 부모, 자녀,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들의 권리까지 동시에 보장하고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 의하면 장애를 신체적 혹은 정신적인 장애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러한 장애가 일상적인 활동을 수행하는데 장기적이고 중대하게 영향을 미쳐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서 말하는 중대함의 의미는 장애의 정도가 사소하거나 평범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옷입기와 같은 일상적인 행동을 하는데 있어 일반 혹은 보통의 경우보다 상당 시간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장애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서 말하는 장·지속적이란 장애가 최소 12개월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감염으로 인해 호흡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처럼 일상생활에 중대하게 영



향을 미치는 장애가 12개월 이상 지속되어야 한다(Equality Act, 2010).

평등법(Equality Act)은 영국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평등해지도록 사회 전반에 걸쳐 여러 부분에서 공정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지역사회 내에서 상품, 서비스, 시설을 이용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장애인 및 비장애인 등 모든 이용자가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법적인 책임을 진다.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표적인 주체로는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주간 보호 시설, 여가 및 레크레이션 시설, 학교 및 기타 교육기관, 기업 등을 들 수 있다. 장애인 혹은 장애 소비자에게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주체는 이용의 편의성, 접근성 등을 보장 및 개선하기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공정한 이용과 참여를 위해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서비스 제공 주체의 법적인 의무이며 제공 가능한 편의의 예로는 서비스 규정의 변경, 물리적 접근을 위한 건물 및 건축 구조물의 변경 혹은 개조, 정보 및 자료 접근을 위한 정보 통신 기기의 제공 및 보조기기의 제공, 서비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컴퓨터 및 컴퓨터 보조 프로그램의 사용 등을 들 수 있다(Equality Act, 2010).

## (2) 시험편의 사례

### ① 영국 기업의 장애인을 위한 시험편의

평등법(Equality Act, 2010)에 의하면 고용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자 혹은 장애 직원을 차별하는 경우에는 불법적인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 채용 및 응시와 관련해 평등법(Equality Act)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시험편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Equality Act, 2010).

- 접근 가능한 응시서 및 양식
- 접근 가능한 면접 장소
- 장애 유형에 맞는 적성 및 능력 검정 시험
- 채용 제안
- 급여 지급을 포함한 고용 상태
- 공정한 해고 및 복직

평등법(Equality Act)에 기초해 채용과정 중에서 적성 및 능력 검정을 위한 시험에 참여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들은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다(Equality Act, 2010).

- 시험시간 연장(50%, 100% 등)
- 추가 휴식시간 제공
- 특별 문제지 제공(점자, 확대, 화면독서 프로그램, 오디오 등)
- 시험장소 조정(개별 시험장소, 접근 가능한 시험장소로 배정 등)
- 기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시험편의 제공

## ② 장애 학생들을 위한 시험편의

영국의 교육기관은 장애 학생들의 평가와 검정을 위해 적절하고 공정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다. 평등법(Equality Act)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편의 중 하나로서 장애 학생 혹은 장애인 응시자들은 교육 현장에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영국 교육기관에서 장애인 응시자 및 학생에게 제공하는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내용과 종류는 다음과 같다(Equality Act, 2010).

- 시험시간 연장
- 점자 문제지, 확대 문제지, 오디오 형태의 문제지
- 대필자, 대독자
- 수화통역 서비스
- 텍스트 전환 서비스
- 화면독서 프로그램, 화면확대 프로그램

## ③ 국제 영어능력 테스트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시험편의

국제 영어 능력 테스트 시스템(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 IELTS) 시험은 영어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적인 시험 중 하나로서 고등교육 기관 입학이나 국가 이민 심사를 위한 참고 자료로 주로 이용되고 있다. IELTS 시험은 과거 21년 넘도록 영어의 4영역(듣기, 쓰기, 말하기, 읽기)을 평가하는 전문적인 영어능력 시험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으며 현재에도 영어능력을 검정하는 표준화된 평가로 인정받고 있다. IELTS는 영국위원회(British Council), IDP: 호주 IELTS, 캠브리지 영어 평가원과 공동으로 운영되고 있다(IELTS, 2016).



IELTS 시험은 기본적으로 응시자의 영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도록 개발되었으며 응시자의 장애 유무와는 상관없이 응시자의 영어 능력을 평가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IELTS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장애인 응시자는 장애 정도를 증명할 수 있는 최근 2년내의 공식적인 증명서나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IELTS 시험과 관련해 장애인 응시자가 제공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시험편의는 다음과 같다(IELTS, 2016).

〈표 3-4〉 IELTS에서 제공하는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장애유형	제공 시험편의
시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점자 문제지</li> <li>- 확대 문제지</li> <li>- 답안작성을 위한 필기자</li> <li>- 점자 워드프로세서</li> </ul>
청각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 증폭기</li> <li>- 듣기의 구화형 문제</li> </ul>
학습장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워드 프로세서</li> <li>- 음성 알림 프로그램</li> <li>- 읽기와 쓰기시험에 추가시험 시간</li> </ul>

IELTS에서는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시험편의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가 추가적으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장애인 응시자는 본인의 장애 특성에 적합한 시험편의에 대해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 증명해야 한다(IELTS, 2016).

### 3) 일본

#### (1) 법적 근거

일본에서는 장애인의 생활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장애인 스스로가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장애운동이 시작되었다. 1988년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대한 전국적인 움직임으로서 ‘교통액세스 전국행동’이 결성되었고, 1989년에 제1회 자립생활 문제연구 전국집회가 열렸으며, 1991년에 지적장애인 권리옹호센터가 개설되었고, 이듬해부터 지적장애인의 당사자 운동이 조직화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993년에 장애인 관련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기본법」이 제정되었

으며, 같은해 11월에 ‘장애인 종합정보 네트워크’가 발족되었다.

「장애인기본법」은 장애인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 이념을 정하고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등의 책무를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장애인을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고 장애인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경제, 문화 그 밖에 모든 분야의 활동에 참가를 촉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제1조). 이 법의 제3조에서는 장애인은 개인의 존엄이 중시되고 그 존엄에 적합한 처우를 보장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기본법, 2016).

또한, 일본의 경우 「장애인종합지원법」, 「사회서비스법」에 의한 자립생활의 지원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장애인기본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 옹호 운동의 전개, 시민 옴부즈맨 제도 등과 같이 당사자와 시민들의 감시를 강조하게 되었다. 1997년에는 인권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권옹호시책추진법」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인권옹호추진심의회’를 설치하였다. ‘인권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에 관한 국내 행동 계획을 책정하였고, 2000년에는 ‘인권옹호 시책 추진심의회’로부터 인권 교육 및 「인권 계몽의 추진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게 되었다. 자치단체 수준에서는 1995년 인권 교육을 위한 국제연합 10년 추진본부가 설치된 것과 관련하여 시 단위에서도 추진본부를 설치하기 시작하였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이용권, 의료 및 재활서비스권 등 매우 구체적이고 포괄적인 영역에 있어 차별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장애인도 평등하게 노동의 권리, 교육의 권리, 지역에서 자립하여 생활할 권리 등을 가질 것,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의 원인이 그 장애인의 개인적 속성에 기인하지 않고 오히려 장애인을 둘러싼 사회에 차별에 근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국가, 또는 국민에 의한 차별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나아가서는 차별이나 천대를 받은 경우에 그 인권을 회복하기 위한 유효하며 적절한 구제 수단을 장애인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 본 법률에서는 장애인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제2장 노동, 제3장 교육, 제4장 결격조항의 금지, 제5장 부동산, 제6장 교통·이동지원 시스템, 제7장 물건과 서비스, 제8장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제9장 참정권, 제10장 사법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1장에서는 법률의 적정한 실시를 위한 행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노동권과 관련해서 장애인의 노동에 관한 권리, 채용에 관한 차별의 금지,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금지, 합리적 배려의 의무, 또한 이에 관한



다른 권리자와의 조정, 의학적 검사(예: 신체검사)의 금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교육권과 관련해서는 장애아동이 교육받을 권리, 국가정책의 목적, 차별의 추정, 최선의 권리, 보호자에게 부담이 없는 교육의 보장, 통합교육의 추진, 동일학적의 보장, 교육기관의 선택권, 특별한 요구의 보장, 통합교육추진위원회의 설치, 대학 등 고등교육·전문교육의 보장을 정하고 있다. 한편 결격조항을 정한 규정의 무효는 장애를 이유로 자격, 면허 등의 부여를 거절 또는 박탈하는 등 제한적 법 규정은 무효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부동산의 취득, 거주, 이용할 권리, 부동산 처분에 대한 불이익 행사 금지, 부동산 처분에 대한 허가·동의권자의 불이익 행사 금지, 부동산 형태의 변경 등을 다루고 있으며, 교통·이동지원 시스템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차별 받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사업자의 설치의무, 사용자의 이용거부 금지, 장애인의 손해배상 청구권, 국가 및 지자체의 안내도우미 배치 의무, 지역사회의 종합적 정비 등을 정하고 있다. 물건과 서비스에 있어서 장애인은 상품, 시설, 기타 서비스를 제공받음에 있어 차별 받지 않도록 하며, 서비스 이용에서의 수화나 점자, 음성서비스 편의제공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물리적 장벽이나 손해배상청구권,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보접근권에 있어서는 정보를 알고 전달할 권리, 국가 및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나 서비스에 대해 공고의 의무, 설명의 의무, 재해의 공지 의무, 정보통신 접근성 준수 의무, 정보통신의 이용지원, 구제신청 등을 다루고 있다. 장애인의 참정권에 있어서는 입법사항에 대한 알권리, 선거정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사법에 있어서는 인권과 재산의 보호를 받기 위해 법적원조를 받을 권리를 제시하고, 사법서비스의 제공기간의 합리적 배려 의무, 손해배상 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인권리위원회의 설치, 위원회의 구성, 사무국, 법의 지침이나 실무지침 작성과 집행상황에 대한 조사, 법령 제·개정에 대한 제언 등의 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일본의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를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장애인이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과 환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02).

이 뿐만 아니라, 시험응시에 따른 편의 제공의 근거는 2000년에 제정된 「인권교육 및 인권개발 추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기본계획의 책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13년 9월 노동 후생성이 ‘3차 장애인 기본계획’을 수립 및 발표하였다. 장애인 기본계획서에는 2017년까지의 일본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정

책이 명시됐으며 본 계획의 분야별 시책의 기본방향은 총10 영역으로 구분되어있고, 이중 시험편의 제공에 관한 시책은 ‘행정서비스 등에 대한 배려’중 ‘국가자격에 관한 배려 등’에 근거하고 있다. ‘장해자 기본계획’의 분야별시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1. 생활지원

- 1) 상담지원 체제 구축
- 2) 재택서비스 충실
- 3) 장애아동 지원 충실
- 4) 서비스의 질 향상
- 5) 인재의 육성, 확보
- 6) 복지용구(용품) 연구개발 및 신체장애자 보조견 육성 등
- 7) 장애복지 서비스의 등의 단계적 검토

#### 2. 의료·보건

- 1) 보건·의료 충실
- 2) 정신보건·의료 제공 등
- 3) 연구개발 추진
- 4) 인재육성·확보
- 5) 난치병에 관한 시책 추진
- 6) 장애 원인이 되는 질병의 예방·치료

#### 3. 교육,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등

- 1) 인클시브 교육 시스템 구축
- 2) 교육환경 정비
- 3) 고등교육에 있어서의 지원 추진
- 4) 문화예술 활동, 스포츠 등의 진흥

#### 4. 고용, 취업, 경제적 자립지원

- 1) 장애자 고용 촉진
- 2) 종합적인 취로 지원
- 3) 장애특성에 맞는 취로 지원 및 다양한 취업 기회 확보
- 4) 복지적 취로 향상
- 5) 경제적 자립 지원



## 5. 생활환경

- 1) 주택 확보
- 2) 공공 교통수단의 무장해화(배리어 프리) 추진
- 3) 공공시설의 무장해화(배리어 프리) 추진
- 4) 장애자를 배려한 마을 만들기의 종합적인 추진

## 6. 정보 액세스빌리티

- 1) 정보통신에 있어서의 정보 액세스빌리티의 향상
- 2) 정보제공 충실
- 3) 의사소통 지원 충실
- 4) 행정정보의 무장해화(배리어 프리)

## 7. 안전, 안심

- 1) 방재대책 추진
- 2) 동일본 대지진 피해 부흥
- 3) 방범대책 추진
- 4) 소비자 트러블 방지 및 장애로부터의 구제

## 8. 차별해소 및 권리옹호 추진

- 1) 장애를 이유로 받는 차별해소 추진
- 2) 권리 옹호 추진

## 9. 행정 서비스에 대한 배려

- 1) 행정 기관에 대한 배려 및 장애인 이해 촉진
- 2) 선거 등에 대한 배려
- 3) 사법 수속에 대한 배려
- 4) 장애인 국제교류 추진

## 10. 국제협력

- 1) 국제적인 행사 참가
- 2) 정부 개발 원조를 통한 국제 협력
- 3) 국제적인 정보 제공
- 4) 장애인 국제교류 추진

## (2) 시험편의의 사례

### ① 장애인 공무원 임용

일본에서는 국가에 소속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이라 하고, 지방 공공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을 지방공무원이라고 한다. 공무원의 종류를 크게 일반직과 특정직으로 나누고 있으며, 응시자격 및 응시 요건에 따라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신규 채용제도는 경쟁시험에 의한 채용으로 채용시험은 크게 1종·2종·3종 시험으로 나뉘어져 있다. 채용시험 중 1종 시험은 우리나라 행정고등고시에 해당하며, 2종 시험은 7급, 3종 시험은 9급 공채시험에 해당하고 각 모집부문에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국가직 및 지방직에서도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인 구분모집이 아닌 경우도 장애인을 위한 배려를 실시하고 있다. 시험을 신청할 때 원서 상에 편의지원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표적으로 시험 시간 연장, 점자 시험, 확대시험지 등과 같은 시험편의를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 상태를 인정받을 수 있는 증명서(장애인 수첩)를 제시해야 한다(홍자영 외, 2007).

〈표 3-5〉 일본 시험편의와 관련된 법령

국가시험명, 국가자격명	시험 법령	장애인 시험편의 지원				
		점자 문제지 및 해답지	확대 문제지 및 해답지	워드프로세 서 이용	시험시간 연장	개호인 인정
국가공무원채용 I종	인사원규칙8-18 제3호제1항 제1호	○	○	○	○	○
국가공무원채용 II종	인사원규칙8-18 제1호제1항 제2호	○	○	○	○	○
국가공무원채용 III종	인사원규칙8-18	○	○	○	○	○

출처: 홍자영, 최종철, 이효성, 진홍섭, 한정훈 (2007).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② 장애인 교원 임용시험

교원 양성의 경우 교원자격 면허 취득 후, 국립 유치원이나 초·중등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교원 모집의 경우 일반전형 이외에 장애인을 대상으로 특별전형 및 구분모집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교원 확대를 위해 장애로



인해 시험 시 특별한 편의가 필요한 경우 입시 지원 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각 지방교육청마다 시험편의 사항 및 편의지원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통적으로 모집원서에 개개인의 장애 편의지원 필요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며 개별 지원을 하고 있다. 장애인 구분모집 시험 시 교원시험의 실기시험을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해 주는 제도를 지방자치단체 62개 현 중 39개 현이 실시하고 있다(홍자영 외, 2007).

〈표 3-6〉 교원시험을 지원한 장애인에게 제공한 시험편의의 내용(전체 62개 현 중)

장애유형	배려 내용	실시중인 현의 수
시각장애인	점자시험 인정	50
	확대문자 시험 및 답안지 확대	48
	보조공학기기 사용 인정	39
	시험시간 연장(1.5배)	44
	시험 시 점자보조원	19
청각장애인	수화통역 배치 사례	55
	보청기 사용을 인정한 사례	31
	음성에 의한 지시를 서면과 필답으로 제시	54
지체장애인	시험시간 연장(1.2배~1.5배)	16
	해답번호를 답지에 기입하거나 워드 사용 인정	14
	실기시험 시 체육·수영 실기시험 체력테스트 면제 배려	34

출처: 홍자영, 최종철, 이효성, 진홍섭, 한정훈 (2007).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③ 사법시험 장애인 시험편의

장애인 응시자가 사법시험을 볼 경우 장애 유형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장애인 응시자는 사법시험을 신청할 때 신체장애인 편의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야하며, 의사진단서 및 신체장애인수첩 복사본 등 장애 정도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시각장애인(약시), 상지장애인에게는 사법시험위원회에서 지정한 병원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보청기 사용을 신청할 경우에는 보청기의 종류나 형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및 사용설명서 또는 카탈로그를 제출해야 한다. 전파수신 기능을 이용한 보청기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상이한 시험편의가 제공된다(홍자영 외, 2007).

〈표 3-7〉 장애 유형 및 시험편의 지원사항

장애유형	등급	장애 정도	지원사항
시각장애	1급	① 양쪽 시력이 0.04이하 ② 양안 시야가 10도 이내 양안 시능률이 손실률 95%이상인 자	① 노트북을 사용하거나 점자로 답안 작성 ② 노트북을 사용한 점자시험용 법령집 대어 【논문식 시험에 한정】 ③ 점자기구(점자판, 점자라이터 등 사용가능) ④ 시험시간 연장 · 단답식 시험(2배 연장) · 논문식 시험(1.5배 연장)
	2급	① 한쪽 눈의 시력이 0.15 이하의 자 ② 양안의 시력이 10도 이 내거나 양안의 시야가 손실률 90% 이상인 자	① 시험시간 연장 · 단답식시험(1.5배 연장) · 논문식 시험(60분에 추가 20분연장) ② 확대문제집 배포 ③ 확대답안용지 배포 ④ 확대한 사법시험용법문 대어 【논문식시험】 ⑤ 문자식 해답【단답식 시험】
	3급	한쪽눈의 시력이 0.02이하, 다른 눈의 시력이 0.60이 하인 자	① 확대문제집 배포 ② 확대답안지 배포 ③ 확대사법시험용법문 대어 【논문식 시험】 ④ 확대독서기 지참 사용 ⑤ 확대경 지참 사용 ⑥ 보명기구 지참 사용 ⑦ 창(밝은 좌석) 배려
	4급	상기 구분 이외의 시각장 애인	3급의 지원사항과 동일
지체장애	1급	체간, 상지의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필답이 불가능 하며, 발음에 장애가 있어 서 의사 전달에 시간을 요 하는 경우	컴퓨터를 사용한 답안작성
	2급	체간, 상지 기능장애가 있어서 필기에 의한 해답 이 불가능한자	컴퓨터를 사용한 답안작성
	3급	체간, 상지에 기능장애가 있어 일반인과 비교 시 필 기 속도가 늦은 경우	① 확대답안지 배포 ② OMR용지 선택 란에 다른 표시를 사용하여 체크하는 방식 [단답식 시험]
	4급	체간, 상지에 기능장애가 있는 자로 지정된 방법에 의한 해답이 어려운 자	① 확대답안지 배포 ② OMR용지 선택 란에 다른 표시를 사용하여 체크하는 방식 [단답식 시험]
	1~4급 공통	편안한 자세로 시험 가능, 휠체어 사용 가능	
청각장애	주의사항 등을 문서로 전달		
	앞자리에 배치		
	보청기 사용가능		

출처: 홍자영, 최종철, 이효성, 진홍섭, 한정훈 (2007).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층 및 엘리베이터가 있는 시험실 배치
- 시험실 출입구 근처에 배치
- 시험시간 내 약물 투여
- 시험실 입·퇴실 시 보호자 동반
- 시험장 내 자동차 주차 배려

#### ④ 자격시험의 시험편의

장애인 시책 추진위원회(내각부 소속)는 2006년부터 자격취득시험시 통일된 편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지식, 기능을 적절하게 평가하도록 장애 상태에 따라서 점자 시험, 수화 통역, 이동 도우미에 의한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실기시험 시 보조공학기를 활용하여 최대한의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은 자격취득 시험 시 장애인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시험편의의 사례이다(홍자영 외, 2007).

〈표 3-8〉 자격취득 시험 시 장애인 시험편의

분류	내용
문제용지 및 해답용지	- 확대문제용지, 확대해답용지 제공 - OMR 답안지 대신 문자기입 해답용지 및 체크 해답용지 제공
도구 사용	- 확대경, 보청기 지참 허용 - 조명기구 지참 허용 - 휠체어용 테이블 제공
정보전달	- 주의사항을 문자로 전달
기타	- 시험시간 중 당질류 등 약물 복용 가능
시험안내 (홈페이지 등)	- 시험편의 내용 명시(공통적 시험편의 사항 및 각 시험제도에 대응 가능한 시험편의 사항을 열거) - 문의사항 시 FAX 번호 및 메일 주소 기재
신청서	- 시험편의 사항 표시 항목 설정(공통적인 시험편의 사항 및 각종 시험제도에 대응 가능한 시험편의 사항을 열거함과 동시에 기타 시험편의 사항 표시 설정) - 수험생이 희망하는 연락형태 기입란 설정(전화번호 이외에 팩스 또는 이메일 등 기재)

출처: 홍자영 외 (2007)

#### 4) 시사점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법적 근거와 사례를 통해 제도적 및 정책적인 시사점을 모색할 수 있다. 해외 사례를 통한 구체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법무부와 장애인법에서는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주체와 시험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위와 동등한 검정고시(GED 등), 고등학교 입학시험(SSAT, ISEE 등), 대학교 입학 시험(SAT, ACT 등), 법대, 의대 등 전문대학 입학 시험(LSAT, MCAT 등), 상용기술 자격시험(미용사 검정 시험 등), 전문자격시험(사법고시, 의사면허시험, 임상평가시험 등) 등과 같이 시험의 범위와 영역을 포괄적이고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주체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조치는 장애인의 사회 자립과 관련해 시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이 사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는 것이다.

둘째, 미국장애인법 및 영국평등법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 의하면 장애란 일상생활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경우에 장애로 간주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일상적인 제약을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비교해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이 수행 가능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대한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미국 혹은 영국의 장애에 대한 개념은 장애의 의료적 손상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일상생활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장애의 정도를 파악하는 사회적 관점에 기초하고 있다. 장애의 사회적 관점에 기초해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편의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양한 장애인을 시험편의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 이는 의료적 기준에 의해 획일적으로 시험편의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권리와 기회를 보다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셋째, 시험편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양한 증명 서류를 통해 장애 정도와 시험편의의 종류를 판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의료면허 시험의 경우 자격을 갖춘 전문가의 추천서 및 소견서, 과거 시험편의 제공 기록, 교육 관계자에 의한 관찰, 전문 심리평가 및 전문 심리검사 결과 보고서,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진단 경력 등 여러 형태의 문서를 통해 장애의 정도와 시험편의의 범위를 판정한다. 필요에 따라 여러 형태의 문서를 확인함으로써 의료 전문가에 의한 단순한 의료적 소견만을 참고하



여 장애의 정도를 부적절하게 이해하는 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장애인 응시자의 시간적 및 경제적인 부담 역시 줄일 수 있다.

끝으로, ETS의 경우 전통적인 시험편의를 포함해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추가적인 시험편의 역시 제공하고 있다. 즉, 감각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ETS에서 제시하는 시험편의가 본인의 장애와 맞지 않는 경우에는 응시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IELTS 역시 전통적으로 제공되는 시험편의 이외에 장애인 응시자가 추가적으로 편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에서도 통일된 배려사항 이외에 각 시험 제도마다 시험 문제 특성에 따라 추가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사항은 시험 주관 기관이 적절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융통성있는 시험편의 제공은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적인 장애 특성과 다양한 욕구를 고려하여 응시자에게 최적의 시험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추가적인 시험편의의 제공은 일률적인 시험편의 제공과 비교해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 특성에 따라 최상의 시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결국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이다.



## 제4장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 조사





## IV.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 개선을 위한 질적조사

### 1. 조사개요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성에 있어 장애인 당사자 및 시험 실시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를 키워드로 장애유형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장애인단체의 종사자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5조 사회적 인식개선 관련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및 동법 제46조의2와 관련한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관련 시행령 개정 등에 관한 의견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작성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기 위해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별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서식,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등에 대해 묻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전문가의견조사 대상과는 다른 장애인단체 종사자를 선정하였으며, 법률 전문가도 포함하였다.

간담회는 시험을 실시하는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한 각 기관의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다.

####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전문가의견조사는 장애유형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 1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사전에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메일로 전달하여 회수하였다. 회신하지 않은 2명을 제외하고 분석에 포함한 질문지는 총 9개로 응답자는 아래 <표 4-1>과 같다.



〈표 4-1〉 전문가의견조사 응답자

응답자	소속	성별	연령 (만)	장애 유무	현 업무 근무년수 (개월)
전문가1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	56	있음	360
전문가2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남	48	없음	1
전문가3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	49	있음	204
전문가4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남	51	있음	120
전문가5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	53	있음	90
전문가6	한국신장장애인협회	여	38	없음	168
전문가7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남	48	없음	48
전문가8	전)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남	60	없음	132
전문가9	한국척수장애인협회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여	38	있음	18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와 마찬가지로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인단체 전문가 및 법률전문가 10인을 대상으로 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초안을 가지고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질의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참여자는 〈표 4-2〉와 같다.

〈표 4-2〉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

응답자	소속	성별	연령 (만)	장애 유무
참여자1	굿잡자립생활센터	남	43	있음
참여자2	법무법인 제이피	남	41	없음
참여자3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남	49	있음
참여자4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	44	있음
참여자5	한국장애인부모회	남	58	없음
참여자6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강사	남	34	있음
참여자7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남	59	있음
참여자8	전) 한국농아인협회	여	50	없음
참여자9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여	46	없음
참여자10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남	51	있음

본 연구의 간담회는 시험실시 관련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장애 시험 편의 제공 의무를 가지는 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문을 발송하여 중앙, 지자체, 공인민간자격시험 담당 기관 실무자 8인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는 <표 4-3>과 같다.

<표 4-3> 간담회 참석자

응답자	소속	성별	장애유무
실무자1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여	없음
실무자2	교육부 대입제도과	남	없음
실무자3	전라남도 총무과 고시팀	남	없음
실무자4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남	있음
실무자5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인재채용과	여	없음
실무자6	한국산업인력공단 자격혁신팀	남	없음
실무자7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남	없음
실무자8	인사혁신처 인재개발국 채용관리과	여	없음

## 2) 조사도구 및 내용

전문가의견조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에 관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작성을 목적으로 크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 교육의 내용 및 방법,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시험의 범위, 시험편의의 내용·기준·방법 등으로 나누어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초안에 대한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는데 초점을 두고 초안의 세부내용에 대한 의견, 별지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서식,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등에 대해 질의하였다.

간담회에서는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을 가지고 시험 실시 기관의 전반적인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다.



〈표 4-4〉 전문가의견조사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일반국민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의 문제점</li> <li>•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li> </ul>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방법</li> </ul>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과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li> <li>•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li> </ul>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교육 내용의 범위 및 개선점</li> <li>• 교육 방법의 범위 및 개선점</li> <li>• 교육의 주체</li> <li>•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결과의 내용 및 범위</li> <li>• 기타</li> </ul>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편의 제공 대상 기관의 범위</li> <li>•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li> </ul>
	시험편의 내용·기준·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li> <li>•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li> </ul>

###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전문가의견조사지는 2016년 2월 12일부터 2월 17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발송 및 회수하였다.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전문가에게 제시하여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세부내용을 범주화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는 2016년 2월 24일(수), 여의도 이룸센터 2층 대회의실에서 15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연구진과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등 총 15인이 참석하였다.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녹음파일은 축어록으로 작성하여 자료화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에 대한 장애인단체의 의견에 대한 내용분석을 실시하여 내용을 범주화 하였다.

간담회는 2016년 3월 16일(수), 여의도 이룸센터 5층 대회의실에서 14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시험 실시 기관 실무자 및 연구진, 보건복지부 담당 사무관, 주무관 등 총 13인이 참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시험 실시 기관 실무자의 주요 의견을 간략하게 분석하였다.

## 2.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 (1) 일반국민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 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의 문제점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우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무엇을 교육해야 하는지 구체적 기준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교육 내용이 사회적 약자로서의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그들의 권리를 강조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교육 대상별로 교육 내용이 다양화되어있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식개선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 대상별 즉, 타깃별 교육 전략이 부재한 것이라 생각한다. (전문가 2)

교과용도서에 포함되어야 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내용이 구체화 되어있지 않음.(전문가3)

무엇을 교육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음.....(중략).....한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의 전반적인 문제점은 그 내용이 인권적이지 못하다는 점임. 즉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임. 대부분의 교육 내용이 사회적 약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지 그들의 권리를 강조하고 있지 않음. (전문가8).

교육 자료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않음. 대상별 교육 자료가 부족함. (전문가9)

한편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홍보가 ‘장애인의 날’ 등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 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보사업의 내용이 장애인을 보호 또는 배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장애극복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과 동떨어진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공익 광고의 경우 장애인의 날 등에 즈음하여 주로 실시되고 있으나 이를 연중 사업 등으로 확대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성공 사례 등을 중심으로 광고가 이루어지고 있음으로 장애인의 일반적인 삶과 동떨어진 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전문가1)

미디어와 언론에 투영되는 장애인의 모습은 장애극복에 포커스 되어있음.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전면적인 홍보보다는 ‘장애인의 날’과 같은 특정주간에 한정되어 있음. (전문가3)

장애인의 날 전후로만 등장하는 단발성 광고로 너무나 소극적인 방법임. (전문가4)

장애를 극복이나 시혜의 대상으로만 홍보한다는 것이 문제임. (전문가7)

.....(중략).....그 내용을 보면 장애인을 보호 또는 배려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음. 또한 그러한 공익 광고는 상업광고처럼 매우 짧게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더군다나 그러한 캠페인의 빈도수가 매우 낮아 효과적이지 못함. (전문가8)

## 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의 개선을 위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이 장애인 인권 전반을 커버해야하며, 장애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공익광고는 장애인이 사회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모습을 중심으로 만들어져야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한편 국회 및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 교육을 할 때, 그들의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교육 방법과 관련하여 사례위주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하며, 장애 관련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과 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강사 양성과 관련해서는 장애당사자 교육이 효과가 높으나,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사 양성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홍보사업의 경우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주체로 연속성 있게 실시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공익광고를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함. (전문가 3)

교육 내용이 단순 주입식이 아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함. (전문가4)

다시 언급하면, 일방적으로 장애정보를 전달하기 보다는 공감과 소통의 교육적 접근방법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교육 내용이 단순 주입식이 아닌 ‘내가 저 입장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스스로 생각하고, 그것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사례위주의 교육내용과 방식이 필요함. (전문가5)

앞서 언급했듯이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은 장애인 인권 전반을 커버해야 함. 기존의 교육이 주로 형식적 평등과 폭력, 희롱 금지와 같은 자유권적 권리만을 다루는데, 사회권적 권리도 다루어야 할 것임. 정부가 소속 공무원에 대해 그리고 국회 및 법원이 자신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때 반드시 그들의 직무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중략).....한편 많은 중앙정부부처와 지방정부가 인식개선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 실시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는바, 관련 정부부처(보건복지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자료를 만들고 강사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 실시해야 함. (전문가 8)

장애당사자 교육이 효과가 높으나 전문지식을 갖춘 장애인 강사가 필요함. (전문가9)

## (2)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 대상 장애 인식개선 교육

대학 및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방법으로 장애인 단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효과적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교재(교육내용) 등을 통합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이와는 상반된 의견으로 교재선정은 교육 강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교육 방법에 대한 의견으로 대학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프로그램 등과 연계하여 실제 장애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강의 형식보다는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교육 방법을 다양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외에도 대학생의 경우, 오리엔테이션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포함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였다.



교재 등을 통합으로 개발하여 교육의 질적 문제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전문가1)

교육내용은 국가에서 표준을 정해야 함.(전문가3)

특히 대학 이상에서는 이론이 아닌 자원봉사와 같은 실재를 접하면서 몸으로 체험하고 느끼도록 하면 좋을 것이라 사료됨. (전문가4)

교재선정의 어려움은 교육강사에게 전적으로 위탁하여 진행(강의 내용과 부합된 강의노트 혹은 자료를 배부하는 것으로)하면 될 것 같고.....(중략)..... (전문가 5)

집합교육보다는 소규모교육으로 간단한 체험(휠체어타고 이동, 흰지팡이 사용법, 수화등)을 통하여 직접 장애체험을 통하여 장애인들의 생활모습을 익히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6)

대학들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에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전문가 8)

### (3)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 ① 교과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내용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장애인이란?,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 ○×퀴즈,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자료),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학교 및 주변의 장애 인식설 점검, 장애인보조기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관련 법률, 일상 속의 장애인,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전문가1, 전문가3, 전문가4, 전문가6, 전문가7, 전문가9).

반면,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며, 장애와 관련된 단순한 지식으로는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2). 또한 인식개선의 전반적인 교육 접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서술 방식을 바꾸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5).

이외는 별개로 초·중·고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의 교과서 중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다루되, 이를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여기서 ‘인식개선의 관점’의 주요 포인트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인식 수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전문가8).

첫째, 장애 인식개선 내용은 모든 학년의 관련 교과서에 들어가야 하며, 고학년 교과서로 갈수록 점점 구체적이고 고차적인 내용을 포함시켜야 할 것임.

둘째, 관련 교과서에서 인식개선에 관한 내용은 반드시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으로 기술되어야 함.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반인권적 문구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함.

셋째, 고학년 교과서에서는 관련 국제규범(CRPD)과 국내법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있어야 함.

넷째, 인권에 기반한 접근법에 어긋나는 교보재는 채택하지 말아야 함. 핵심 교보재는 관련 정부부처가 제작하여 배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다섯째, 기본적인 권리 중, 접근권, 평등권, 학대·폭력·착취로부터의 자유, 교육권, 노동권 등은 반드시 다루어야 할 것임. 이때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능하다면 구체적 사례를 예시로 적시하는 것이 적절함. (전문가8)

## ②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장애 인식개선을 교육을 위해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에 대해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전문가1),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표현(전문가2), 장애를 질환으로, 장애인을 환자로 인지할 수 있는 표현(전문가3) 등은 교과서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반인권적 문구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전문가 8).

한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사회에서 일어나는 편견을 설명하는 경우, 그 자체로 편견을 습득할 수 있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전문가9).

## (4)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반

### ① 교육 방법의 범위 및 개선점

교육 방법 및 개선점에 대해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방법은 교육 대상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이론



교육의 경우,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단편적인 지식 교육은 인식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도 있었다.

또한 교육방법으로 장애체험 교육을 제시하였는데, 현재 지체, 시각, 청각 등 일부 장애유형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장애유형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장애체험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하며 이 외에도 일방적 강의 방식이 아닌 토론이나 참여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집합교육을 통한 장애 체험, 이론 교육의 경우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교육 방법은 각 교육 대상자에 맞도록 교수 학습법을 개발하여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전문가1)

집합교육은 20명 내외의 소규모로 실시하여 교육대상자의 몰입도 향상  
장애체험교육은 지체, 시각, 청각 등 일부에 한정되어 있음. 장애유형의 확대가 필요함. (전문가3)

일방적 주입식 집합교육이나 온라인교육이 아닌 함께 논의하고 공유할 수 있는 토론 방식의 교육  
으로 10~15명씩 교육하는 것을 권함. (전문가4)

집합교육을 통하여 주입식 교육 보다는 간단한 설명과 도구 없이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하여 진행하는 것이 필요함. (전문가 6)

장애체험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  
머무르면 안 됨. 이 교육은 그러한 어려움의 많은 부분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이나 제도에  
서 기인하며, 그러한 환경이나 제도를 철폐하는 것이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라는 점을 체  
험하는 과정도 반드시 포함해야 할 것임. (전문가8)

## ② 교육의 주체

교육의 주체와 관련하여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대부분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교육의 주체가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을 한 전문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장애인단체 관련 종사자,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과정을 수료한 강사 등의 응답이 있었다.

교육의 주체는 대상별로 다르겠지만 주로 장애인 강사가 하는 것이 가장 교육효과가 크며, 부모가 교육의 주체가 되어 교육을 할 때에도 커다란 효과가 있음. (전문가2)

장애인 강사, 장애인단체 임직원 (전문가3)

각 장애유형별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수료한 강사, 장애인 강사 등이 적합함. (전문가6)

교육의 주체가 어떤 부류의 집단으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는 없음. (전문가8)

### ③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결과의 내용 및 범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할 결과의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참여자 실인원, 교육 내용, 교육의 만족도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교육 결과 제출의 목적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 주체 기관의 속성, 교육 대상자의 집단 속성, 특정 교육 프로그램 내의 하위 프로그램인지 여부(또는 독립적 교육인지 여부), 교육 시간, 교육의 구체적 내용, 사용한 강의 자료, 강사의 속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교육 후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정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식개선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그 측정에도 다소 무리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 2)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 (1)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 ① 시험편의 제공 대상 기관의 범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험 실시 기관의 범위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 기관, 공기업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일반 사기업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도 많은 국가자격시험에서 민간의 영어능력시험점수를 요구하는바, 이들 민간영어능력시험의 주관 단체도 시험편의 제공 대상 기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국가 및 공공 기관 외에도 다수의 민간단체에 대해 채용시험에서의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때 법적 제재를 가하고 피해자를 구제할 수단을 구비하고 있다. 따라서 굳이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의 적용 범위를 민간단체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 ②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 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가들은 모든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해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자격시험의 범위는 국가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공인영어능력시험에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을 위해 실시되는 모든 유형의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 (2) 시험편의의 내용·기준·방법

### ①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시험편의의 내용에 대해 질의한 결과,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휠체어 전용 책상, 시험연장시간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장애유형별로 제공되어야 할 시험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각장애인의 경우 점자정보단말기와

컴퓨터 사용 명문화, 신장장애인의 경우, 의무실 이용 시 시험 장소 배치 요청, 장루·요루 장애인의 경우,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시험장소 배치 시 공간 확보 요청, 간질장애인의 경우, 의무실 사용 가능, 시험장소 배치 요청 등의 의견이 있었다. 기타 장애유형별로 의사소통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특히 내부장애인들은 장애가 외부로 표출되지 않기 때문에 편의제공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내부장애인을 고려한 시험 편의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한편 시행규칙을 마련할 때, 시험편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한 전문가도 있었다. 현재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편의를 목록 형태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치 못하며, 시험 편의의 내용은 예시로 제시되어야 하며, 이 내용에는 정책 또는 관행의 변형 조치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시행규칙에서 시험편의 목록을 열거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함. 시험편의 목록은 예시로 제시되어야 함.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그 시행령의 해당 조항의 문언들은 정당한 편의의 목록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적절하지 못함. 법상의 정당한 편의의 목록이 예시가 아닌 열거인 경우는 다른 나라의 관련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음. 정당한 편의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제2항) 개인별로 다양한 사정을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기에 몇 가지의 목록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이 아님. 참고로, 예시로 제시하는 편의에는 물리적인 조치(확대시험지 제공, 수화통역사 배치, 높낮이 조절 책상 제공) 이외에 정책 또는 관행의 변형 조치(시험시간 연장,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할 것임.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나열된 정당한 편의 목록에서 후자 형태의 항목을 찾기가 매우 어려움. (전문가8)

## ②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의료적 기준으로 기준을 잡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시험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그 필요성을 증빙해야 하는 방법을 구체화하는 것은 장애인 응시자들의 혼란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견 조사 설문지의 예시와 같이 ‘의사소견서 1부’ 등 증빙서류를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와 함께 필요 시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삽입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타 의견으로 장애인 응시자의 시험 편의와 관련하여 시험편의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을 포함해야 하며, 신청한 편의가 직무 수행의 요건 상 적절하지 않은 경우 등에 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정당하다는 등의 예외 요건을 규정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3.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포커스그룹인터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크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으로 범주화 하였고, 5개의 핵심내용이 도출되었다. 분석을 위한 최종 코딩체계는 <표 4-5>와 같다.

<표 4-5> 장애인단체 종사자 인터뷰 분석결과

범주	핵심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내용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적용 대상 시험의 범위
	적용 대상 시험의 단계적 적용
	시험편의 제공 내용 및 제출서류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하위범주로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내용’ 등에 대한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이에 하위범주별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유무와 관계없이 모두가 평등하며, 더불어 살아야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져야함에도 현재의 교육을 그렇지 못하다고 보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해서 인권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

해 교육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실천할 내용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중략).....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가 평등하다. 그런 취지이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한다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라면 장애인인권을 포함해서 인권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도 같이 교육되어야 취지나 목적에 오히려 더 부합하지 않나... (참여자 3)

.....(중략)..... 장애로 봤을 때에는 사회·환경에 대한 소개도 이 안에 들어가야지 장애인이라는 정확한 이해가 된다는 것이고 어차피 장애인권리협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때 환경적인 요소가 장애정의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있으면 좋겠고요.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갖다가 다 같이 인식을 개선해서 실천하자라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고...(참여자 7)

연구진은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으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초안〉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교육 등으로 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권리
3.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법·제도
4. 장애인의 능력 및 생활모습
5.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6.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장애인 차별 및 구제에 관한 내용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과 관련된 내용
9.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참여자들은 각 호의 내용에 대해 세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4호의 “장애인의 능력 및 생활모습”에서 “생활모습”이라는 표현이 부적합하며, “일상생활” 등의 표현으로 수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가 개정되는 과정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기관이 추가됐는데 연구진이 제시한 내용 중 8호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말하는 장애인 직업재활 관련된 내용’은 이에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대상에 따라 교육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문구를 추가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교육 내용 4항에 장애인 능력, 생활모습이라고 되어있는데, 일상생활이라던가 용어를 수정해야 할 것 같아요. 생활모습이라는 용어 자체가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참여자 8)

새로 들어간 내용 중에 하나가 「영유아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등등 이런 부분이 되는 것 같거든요. 법에 이런 내용을 집어넣었을 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장애인식교육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으나? 그런 것에 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내용이 법에서 추가가 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근데 법에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개정안에도 보면 .....(중략)..... 내용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거리가 먼 부분이 있는 것 같다. 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어린이집 원장이 장애인식교육을 그 대상학생한테 하는데 있어서 그 내용에 직업재활이라든지, 고용촉진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간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안 맞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오히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대상에 맞는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 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5)

한편 교육 내용에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조약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연구진이 제시한 내용은 원격교육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학습자와 교육자가 상호작용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명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중략).....장애인권리협약 등이 포함된 국제조약에 관한 교육 만약 이게 선택사항으로 들어간다면 “그런 것 하나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하다보면 실제로 원격교육만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져서 이게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교육들을 할 수 있다. 다만 상호 인권적방식의 교육방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인권교육은 이리이러해야 한다.” 라고 11년도인가요? 발표를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학습자와 교육자가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을 해야 한다.” 라고 하는 사실은 권고의 내용이기도 한데, 이게 실제 성폭력교육 같은 경우도 그냥 원격교육만 하고 딱 끝내버리고 그거에 따른 서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어떤 방법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한 줄 정도로 들어가서 교육에 지금 내용은 충분히 들어가 있지만 교육의 방식에 관련한 측면에서는 조금은 부족함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한편으로 들거든요. (참여자9)

## (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내용

연구진이 제시한 초안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보고하도록 명시했으나, 이에 대해 법 간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달장애인법’)에서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것은 발달장애인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되어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발달장애인 중앙센터 및 지역센터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발달장애인 관련 기관도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또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법상으로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작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발달장애인법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발달장애인법 구상 적용하는 것으로 법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발달장애인 중앙센터, 지역센터 있고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나름대로 이런 교육에 관한 부분도 나와 있는데, 그랬을 때 발달장애 영역에 있어서 이것을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쪽으로 보고해야 되는 건지, 발달장애인 영역은 발달장애인법을 우선 적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여자 5)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교육 결과 보고 양식에서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선 ‘대표전화’보다는 ‘담당자 성명’과 ‘담당자 연락처’를 넣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교육한 ‘강사의 성명과 소속’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로 일하고 있는 참여자는 교육을 요청하는 기관의 특성에 따라 교육 방식이 매우 다르고, 강사에 따라서도 그 내용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연구진이 제시한 결과보고 사항에 ‘만족도’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교육의 만족도라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이 항목이 들어갈 경우 만족도 항목을 가지고 강사를 평가하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강사로 교육을 하게 될 경우, 만족도는 비교적 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족도를 결과보고 항목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사를 표현했다.



저는 지금 강사로 아무래도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이제 학교나 이런 곳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양하거든요. 어떤 학교의 경우는 교실 하나 당 한 분의 강사가 들어가서 교육을 하기 원하는 학교들도 있고, 아니면 방송실에서 강사가 진행만 하면 그 방송이 각 교실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략)..... 그러다보니까 교육내용도 굉장히 중구난방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보고가 앞으로 작성이 되어서 제출된다면 누가 교육을 진행을 했고, 또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나왔었던 같습니다. (참여자 6)

만족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이라... 만족도를 묻는 것과 ‘인식이 정말 개선이 됐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조금 내가 변화 됐어.’ 이거하고 조금 다르긴 하더라고요. 만족도를 넣게 되면 이거는 철저하게 강사평가밖에 안 되는 결과예요. (참여자 9)

중증장애인들도 강사로 가게 되고 그랬을 경우에 만족도는 맞지 않는 용어인 것 같아요. (참여자 3)

## 2)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

### (1) 적용 시험의 범위

연구진이 제시한 편의제공 대상 시험 범위에 대해 참여자들은 대체로 동의하였다. 그러나 수능시험과 검정고시, 토익(TOEIC), 토플(TOEFL) 등 사회적 욕구가 높은 시험에 대해서도 시험편의 제공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또한 시험실시기관마다 다르게 제공 되고 있는 시험편의 내용들이 통일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근데 저희가 보통 보면 수능시험을 많이 보잖아요. 해마다. 그것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기준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에서도 수능이 포함되는건지.....(중략)..... 근데 또 시각장애인분들이나 일반장애인분들이 검정고시를 많이 봐요. 검정고시는 교육부 소관인데 거기에 대한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도마다 다르게 주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편의제공이 다 틀려요. (참여자 4)

요즘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회사나 유학가고 이럴 때 토익, 토플점수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토익, 토플시험이라는 게. 여기는 편의제공에 관련해서 내용이 많이 있어서 가능하다면 토익, 토플시험도 제공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참여자 8)

그러나 참여자들은 토익 및 토플의 실시 기관이 민간이기 때문에 제재 할 수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였다.

## (2) 적용 시험의 단계적 적용에 대한 의견

연구진에서는 국가자격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무와 관련해 적용 시기를 단계별로 적용할 수 있도록 두 가지 안을 제시하였다. 1안은 시험별로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은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2안은 국가기술자격시험, 국가자격시험은 2017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중 보건복지부 공인 시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중 보건복지부 이외 공인 시험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참여자들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 응시자가 응시료를 내고 시험에 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의 제공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내용이 시험 실시 기관에 크게 무리가 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단계적 적용을 해야 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

연구진이 제시한 안 중 2안의 경우, 보건복지부 이외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은 앞으로 5년 후에 시험편의 제공 의무를 지게 되는데 너무 늦게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근데 저희도 현직에 있을 때 수화통역사가 국가공인민간자격이어서 이런 시험편의 요청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해보는 대부분 이런 것들은 다 응시료라는 수입이 있거든요. 봤을 때 그렇게 부당한 요구라든가 아니면 굉장히 부담을 주는 내용이 없는 것 같거든요. (참여자 8)

정당하게 본인도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본다 할 때 그 부분은 편의제공이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민간자격 공인이 아니어도 등록의 경우에도 본인이 응시료를 내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편의제공이 당연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참여자 3)

저는 2안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 외 공인민간자격시험은 5년 뒤에야 하겠다는 거는 너무 늦지 않나.....(중략).....지금 2016년 2월이니까 이렇게 유예기간을 주는 이유가 납득이 가지 않아요. (참여자 7)

한편 연구진이 제시한 기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무를 부과하는 기관과 다르며, 현재 연구진이 제시한 단계별 적용은 일종의 면죄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즉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할 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 자체가 차별이며, 그와 관련해 별칙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 편의제공을 하지 않는 것이 차별이라고 하였다.

### (3) 시험편의 제공 기준, 내용 및 제출서류 관련

현재 제공되고 있는 시험편의 내용이 시험실시 기관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지원법」 시행령에서 장애유형별 시험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를 기준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시각장애인의 경우, 최근 약시자들을 위한 컴퓨터확대프로그램(소프트웨어)이 개발되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포함시켜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청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연구진이 제시한 시험편의 내용을 살펴보면, ‘시험장소는 출입이 용이한 곳에 일반응시자와 별도로 설치·운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황에 따라 제시한 장소가 적합하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응시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뇌병변장애인의 경우는 장애 특성상 퇴행성이다 보니 중복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신체적 장애에 복잡하게 나타날 수 있어 편의제공의 내용을 정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가 요청하는 사항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의 경우, 실시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응시자가 평소에 사용하던 것을 지참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 외에 연구진은 유형별, 급수별 편의제공 내용을 제시하였는데, 향후 장애등급제가 개정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편의주요내용에서 보면 전맹 응시자한테는 컴퓨터스크린리더가 제공이 되잖아요. 약시분들 보면 독서확대기로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은 약시분들도 시험을 볼 때에 컴퓨터로 많이 봐요. 컴퓨터 제공이 안되는데 컴퓨터 확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일상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확대프로그램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추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화면확대독서기하고 일반적인 보조기기잖아요. 그것들 외에 컴퓨터에 내장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있잖아요. 그걸 추가해주셨으면 어떨지... 요즘 추세가 컴퓨터세대인데 그것만 미진한 것 같더라고요. 빠져있는 것 같아서 그것 좀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참여자 4)

지금 필기시험의 시험편의 내용에 보면 “시험장소는 출입이 용이한 곳에 일반응시자와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격증 이 조항들이 안 맞는 청각장애인들이 있을 수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수어를 모르고 입모양을 보면서 상대방이 말하는 것을 보는 청각장애인도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같은 경우 오히려 이렇게 출입쪽보다는 감독이나 안내자가 말을 할 때에 입모양이 잘 보이는 위치, 정중앙쪽이라던가 그런 쪽들이 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선택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참여자 8)

뇌병변장애 같은 경우에는 퇴행성인 경우가 많다보니 중복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신체적장애가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뇌병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제공되는 보조기기를 굳이 딱 결정하지 말고 뇌병변장애인이 응시자 자신이 필요한 보조공학기기가라던가 아니면 시험에서 시간을 더 초과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게 어렵다면 필기시험이나 면접시험에서 제공되는 보조공학기기중에 뇌병변장애인들 중에서 언어장애, 중복장애를 갖는 경우가 70% 이상이거든요. 필기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면접시험 때도 마찬가지로 보완대체의사소통기기의 경우에는 자신이 쓰던 게 자기에게 잘 맞으니까 그런 것들을 지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참여자 3)

#### 4. 시험 실시 기관(규제대상 기관) 관계자 간담회 결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과 관련하여 규제대상의 의견수렴을 통해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개정 절차를 추진하기위해 규제대상 기관 관계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였다.

크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으로 나누어 관련 개정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에 대해 질의하였으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하여 도출된 의견은 다음과 같다.

##### (1) 시험편의의 구체적 내용을 주관기관에 위임 요구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한 공통적인 의견으로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그룹인터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건복지부에서 작성한 개정 내용에 담긴 편의 제공의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므로 최소사항 및 대략적인 방향을 정하고, 시험 주관 기관에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기관 홈페이지



지에 공고하도록 수정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 (2) 공인민간자격시험 대상 의무 부과

공인민간자격시험에 시험편의 제공 의무를 부과한 것에 대해 시험실시기관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공인민간자격시험이 취업 등 장애인의 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응시료 수입 및 장애인의 생활에 주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응시자 수 등을 기준으로 편의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안을 제시했다.

### (3)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화장실 사용시간과 관련해서 그 시간을 시험시간에 포함할지 제외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데 모두 공감했다. 이와 관련하여 장루·요루 장애인의 배변주머니 교체시간 기준으로 화장실 사용시간을 시험시간에서 제외할 시험을 규정해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 (4) 시험편의 제공 대상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개정 주요내용에 임산부 및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 시험편의 제공 대상을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 5. 소결

본 연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제공과 관련해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마련을 위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 시험편의 제공 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문가의견조사, 포커스 그룹인터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질적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과 관련하여 구체적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 결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이 장애인의 권리를 강조하지 못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에 초점을 맞추

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교육 내용이 다양하지 않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지 못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행령에서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과적인 내용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을 통한 교육 의무의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가 필요하며, 법적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소한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결과 보고를 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응시자에게 의무적으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채용시험, 국가자격시험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기준으로 장애인에게 시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채용시험, 비교적 수요가 많은 TEPS(영어능력검정), 한자능력검정시험 등과 같은 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는 장애인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으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청년실업 등으로 취업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의 취득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 공인민간자격 시험에서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편의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제공 내용과 관련한 표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시험마다 제공되고 있는 편의의 내용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장애인 응시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편의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해 혼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시험의 특성에 따라 시험 실시기관에서 유연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통해 규정될 필요가 있다.





##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V. 결론 및 정책제언

### 1. 장애 인식개선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자립을 위해 비장애인 및 사회의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심각한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으며,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개선하는 것은 장애인 사회참여 및 직업재활을 달성하는데 중요한 요소이다(Smart, 2009; Yuker & Block, 1997).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장애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위한 강의·교육, 자원봉사 등과 같이 장애인과의 접촉 빈도를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접촉기법, 장애 상황에 직접 노출하여 장애에 대해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장애 시뮬레이션, TV, 라디오, 기타 대중매체를 이용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대중매체기법 등 여러 형태의 방법과 내용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다(Smart, 2009; Yuker & Block, 1997).

구체적으로,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경험을 증대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으며 장애인과의 사회적인 교류가 많은 비장애인일수록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되기도 한다(Evans, 1976; Stovall & Sedlacek, 1983). 이와 더불어, 장애에 따른 사회활동의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해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장애 체험을 실시하고 있다. 직접적인 장애 체험은 경우에 따라서는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만 반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역시 증대시킬 수 있다(Smart, 2009).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특징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집합강의, 장애체험, 동영상 시청 등과 같은 방법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에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개정을 목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구체적인 개선을 위해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교육의 내용, 방법, 교육의 결과 등에 대해서 조사·연구하였다.

### 1) 인식개선 교육 실시 주체의 범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의 범위와 관련해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주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사회활동 참여와 관련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고용주의 인식개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3항에서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 및 채용 확대를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미실시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보다 강력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 미실시에 대한 강력한 법적 조치가 요구된다.

둘째, 전문가의견조사를 통해 교육기관의 경우에도 대학, 대학원, 평생교육 기관과 같은 고등교육 기관의 인식개선 교육 실시 역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었다.

인식은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형성되고 변형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하여 대학 및 평생교육 기관에서도 실시할 필요는 있다(Smart, 2009). 일부 포커스그룹인터뷰 참여자들은 대학이나 평생교육 기관 등은 교육과정의 특성상 집합교육을 일률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워 인식개선 교육의 주제로써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교육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충분히 인식개선 교육은 가능하다. 특히 인터넷이나 영상물을 통한 인식개선의 경우에도 일부 그 효과성이 입증되었다는 점에서 성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고등교육 기관 역시 적절한 방법을 이용해 인식개선 교육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Corrigan, 2004; Smart, 2009).

## 2) 인식개선 교육 내용

첫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관련해 연구에 참여한 대다수의 전문가들과 참여자들은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에 따른 적절하고 융통성 있는 교육내용을 구성할 것을 요구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에 의하면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 교과용 도서에 포함될 장애 인식개선 교육 내용은 학생들의 나이, 인식수준, 성숙도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이며 개별적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다.

교육 대상에 따라 구성 가능한 구체적인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의 분류,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퀴즈,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자료),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학교 및 주변의 장애인시설 점검, 장애인보조기구의 종류 및 사용방법, 장애인권 및 인식개선 관련 법률, 일상 속의 장애인, 장애인을 대하는 태도 등이 있다.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와 관련된 철학이나 차이, 다양성 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 역시 필요하며, 장애와 관련된 단순한 지식으로는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리고 인식개선의 전반적인 교육 접근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며 서술 방식과 같은 획일적인 교육방법보다는 문제해결이나 상황해결을 통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인식개선 교육방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교육 대상자들의 능동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위한 융통성있는 개별화된 교육방법은 일본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여러 연구에서도 효과적인 인식개선을 위해서는 피동적인 강의 위주의 교육보다는 장애인과의 직접적인 대면, 상호 동등한 접촉, 자발적인 자원봉사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Corrigan, 2004; Seo & Chen, 2009; Smart, 2009).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중 사회과목이나 윤리과목에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다루는 부분에서 장애인 인권을 포함시킬 수 있으며, 장애인의 인권 및 권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인식개선의 관점에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인식개선의 관점의 주요 포인트의 하나는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부당한 인식 수준에 대해 지적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내용,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리시켜 생각하는 표현, 장애를 질환이나 장애



인을 환자로 인지할 수 있는 표현 등은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며 이러한 비인도적인 내용은 교과서나 인식개선 교재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같은 반인권적 문구 역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육 내용은 장애인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의 기본 이념과도 배치되며 CRPD에서 주장하는 장애인의 궁극적인 사회통합의 이념과도 충돌하는 것이다(CRPD, 2009).

넷째,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장애인 당사자들은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부터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판정은 신체적 손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장애를 의료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환경에서 장애를 이해하는 새로운 정의와 시도가 요구된다(Smart, 2009).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서는 장애인 개인의 장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시 되어야하며, 환경적 요소를 감안하여 장애의 경증을 설명해야 한다. 즉, 사회환경 속에서 장애를 발생시키는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실천할 내용 등을 담을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선진 국가의 법률에서는 장애의 의료적인 손상만을 언급하기 보다는 장애인의 사회적 및 환경적인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장애의 사회적 패러다임을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적극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009; Equality Act, 2010).

다섯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비장애 전문가들 중에서 비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을 어떻게 대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등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장애인보조기구나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도 교육 내용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보조기기 이용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조기기를 이용한 장애인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직업재활 및 사회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장애 인식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Parker & Patterson, 2013; Rubin & Rosseler, 2003; Smart, 2009).

### 3) 인식개선 교육 방법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의하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해 집합교육을 할 경우 15-20명 내외로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야 하며, 교육 대상에 따라 교육방법을 유연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하였다. 전문가들 중에서는 이론 교육의 경우, 온라인 및 동영상 교육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단편적인 지식 교육은 인식개선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하였다.

여러 연구에서도 소규모 집합교육, 상호활동적인 문제해결 중심 교육, 장애인과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접촉 등은 장애 인식개선에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Corrigan, 2004; Seo & Chen, 2009; Smart, 2009; Yuker, & Block, 1986).

둘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조사자들 중 많은 수가 장애체험의 단점에 대해서 지적하였다.

장애체험 교육은 장애를 가진 개인이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험하는 수준에서 그쳐서는 안 되며, 그러한 어려움이 비장애인 중심적인 사회 환경 및 제도에서 기인한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 무엇보다도 장애체험은 오히려 장애에 대한 연민, 동정, 거부감 등과 같은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1990년대부터 비장애인에 의한 장애체험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였으며 일방적인 장애체험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배제되고 있는 추세이다(Corrigan, 2004; Smart, 2009).

### 4)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교육 결과 보고에 교육 참여자 실인원, 교육 내용, 교육 실시 횟수, 교육 강사에 대한 정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교육 결과 제출의 목적에 따라 교육의 효과성과 효율성,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교육 주체 기관의 속성, 교육 대상자의 집단 속성, 특정 교육 프로그램 내의 하위 프로그램인지 여부(또는 독립적 교육인지 여부), 교육 시간, 사용한 강의 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일본 사례를 보면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정보를 보고하거나 공표하도록하고 있으며, 공식적인 보고를 통해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들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남용현 외, 2011).

둘째, 교육 후의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 정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는 의견도 있었으나, 인식개선이 일회성 교육을 통해 쉽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인식 개선의 변화를 적절히 측정한다는 것은 무리라는 의견이 많았다. 특히,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교육 강사의 자질을 평가하는 불합리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 측정은 심도 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셋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9(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 등)에 의하면 국가는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장애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장애인복지법」, 2016).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주요한 사업으로는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대한 지원,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능력개발,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장애인학대 신고접수하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업무 등이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 학대·인권 침해 사건의 예방, 조사, 관련 교육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와 더불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결과 보고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적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 학대 및 인권침해 사건을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인권 증진과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업무 역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수행 가능한 업무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수집,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분석,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교재 및 교육 방법의 개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의 양성 및 교육, 장애 인식개선 홍보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 5) 전문인력 양성 및 예산 지원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서는 장애인 당사자가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그러나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가 특정 집단으로 한정되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었으며, 장애인단체 관련 종사자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과정을 수료한 강사 등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의 자질이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표준화된 제도적 및 정책적인 방법이 부재하여 비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강사의 전문성을 보장하기 위해 강사 교육 역시 필수적이며 인식 개선 교육 강사의 전문성을 공인하는 자격제도, 인식개선 강사 양성을 위한 전문 기관 등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각계각층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위해서 질 좋은 교재를 제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교재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 검증제도와 교재의 표준화작업이 필요하다. 이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내용마저도 각 장애인단체의 강사마다 상이한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장애유형마다 장애인 강사의 경험이 다른 경우에 다양한 강의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으나,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 인식개선은 표준화된 내용과 틀은 갖출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지원되어야 강사들의 질과 전문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단발성 예산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지속성에 한계가 있다. 교육부의 경우 각급 학교에서 양질의 강사에 의한 다양한 강의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인식개선 강의를 통해 장애인 강사들이 안정된 직업군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충분한 예산지원은 필수적이다.

## 6) 기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장애인단체 전문가들은 홍보가 ‘장애인의 날’ 등 특정 시점에만 일시적·단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체계적인 홍보사업을 위해 정부 주체로 연속성 있게 인식개선 사업을 실시해야 하며, 일본의 사례처럼 상시적으로 장애 인식과 관련된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여 지속적으로 인식개선을 할 필요가 있고, 유명 인사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남용현 외, 2011).

## 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현대 사회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직업활동을 통한 경제적 및 사회적인 자립을 장애인 복지의 중요한 모델로 여기고 있다(Rubin & Rosseler, 2003).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위해 경제적인 자립은 매우 중



요하며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직업활동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을 원하고 있고, 그러한 직업을 통한 재활을 위해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전문기술 및 전문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Parker & Patterson, 2013). 전문 지식·기술 등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전문자격 검정을 위한 시험을 들 수 있으며, 비장애인과 비교해 장애인이 공정한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애 특성에 맞는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 받아야 한다.

미국에서는 미국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에 제1장 고용 관련 차별 금지 조항에 의해서 자격을 갖춘 장애인은 응시·평가·채용과 관련해 비장애인 응시자와 비교해 차별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ADA, 2009). 이러한 미국장애인법에 의해서 모든 미국 연방 및 주정부에서 실시·운영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고등교육 기관은 장애인 응시자를 포함하여 장애 학생이 장애 유형에 따라 적합한 시험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시험편의에 의해서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학업 및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공되는 시험편의가 부족하거나 추가적인 시험편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도 장애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된 시험편의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있다(Michigan State University, 2016; University of Texas, 2016). 또한 영어능력을 검정하는 민간 교육기관인 교육평가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에서 실시하는 모든 종류의 영어 및 전문 검정 시험에서도 장애인 응시자의 유형에 맞는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다(ETS, 2016). 영국의 경우 평등법(Equality Act of 2010)에 의해서 장애인이 고용활동 및 직업유지를 위해 시행되는 시험이나 평가 과정에서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의 유형과 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도록 명시하고 있다(Equality Act, 2010).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서 사용자는 장애인이 해당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험과 관련해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2015). 또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사용자 제공 정당한 편의의 내용)에 의해서 장애인에게 시험시간 연장, 확대 답안지 제공 등 장애인 능력의 공정한 평가를 위한 보조수단을 마련할 것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장차법 시행령, 2015). 또한 인사혁신처 공무원임용시험령 제

4조(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등)의 4항에 의하면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이 시험에 응시한 경우 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2016년도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지원 안내문에 의하면 편의지원 대상 및 범위, 장애 유형별 시험편의 지원의 내용, 시험편의 지원 절차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인사혁신처, 2016).

그러나 국가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자격 및 채용 시험의 장애 시험편의와 관련하여 국가공인시험의 장애인 편의가 제각각 다른 기준으로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KBS한국어능력시험에서는 시각, 청각, 뇌성마비 및 기타 신체장애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뇌성마비의 경우 30분의 추가시간, 대필자 요청이 가능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시험인 한국어언어문화연구원 시행 국어능력인증시험에서는 청각, 시각장애에 대한 편의만이 제공되고 있다(장애인뉴스, 2015). 이처럼 아직도 시험편의와 관련해 다수의 장애인 응시자들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게다가, 법적 및 제도적인 체계의 미흡은 장애인 응시자들이 공정하게 시험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요한 요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불충분한 시험편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초래되고 있다. 이에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 응시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 기관·단체가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을 볼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구체적인 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을 조사·연구하였다.

### 1) 시험편의 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 공기업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자격시험의 범위는 국가 자격시험, 국가공인민간자격시험, 공인영어능력시험이 포함되어야 하며, 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 등 채용을 위해 실시되는 모든 유형의 시험을 포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미국장애인법이나 영국평등법의 경우에도 국가나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시험에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듯이 국가나 공공단체가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ADA, 2009; Equality Act, 2010).

둘째,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 사기업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사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조치가 없기 때문에 사기업을 포함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미국장애인법이나 영국평등법 등에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 제공을 폭넓게 적용하고 있듯이 시험편의의 제공 범위와 주체는 포괄적이어야 할 필요가 있다(ADA, 2009; Equality Act, 2010). 특히, 자격 취득과 관련된 시험편의는 취업과도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시험과 관련된 시험편의의 제공을 법적으로 규정해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ADA, 2009).

## 2)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기준·방법

첫째, 전문가의견조사와 포커스그룹인터뷰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응시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특정 장애 유형에 따라 일부 시험편의만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적인 필요를 충족시키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장애 유형에 맞는 시험편의를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그 중 장애인 응시자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시험편의를 선택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러 선진 국가에서는 장애인 응시자의 개별적인 욕구에 의해 시험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제시된 시험편의 이외에도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ADA, 2009; Equality Act, 2010). 예를 들어, 교육평가서비스(Educational Testing Service, ETS), 미국 의료면허 시험(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 USMLE) 등은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 특성에 따라 공표된 시험편의 이외의 시험편의도 의료전문가의 승인을 얻어 제공하고 있다(ETS, 2016; USMLE, 2016).

둘째, 시험편의를 제공해야하는 주체 기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포커스그룹인터

뷰에서도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범위와 내용을 일괄적으로 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법률에서는 시험편의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세부적인 시험편의의 범위는 시험주관 기관이 결정하여 공표하도록 할 수 있다. 시험주관 기관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사례는 여러 국가의 민간시험과 자격시험 등에서 찾아 볼 수 있다(ETS, 2016; UNMLE, 2016). 이러한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험편의 미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개정해 법적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에 대해 질의한 결과, 전문가들은 장애 정도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장애유형에 따라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의료적 기준에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장애인 응시자의 욕구에 맞게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장애의 의료적 특징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시험편의의 주요한 결정 기준이 되고 있다(서울특별시, 2016; 인사혁신처, 2015). 하지만 의료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응시자라도 시험편의가 필요한 응시자라면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즉, 의료 평가에 국한되어 장애인 응시자에게 시험편의를 제공하기 보다는 장애인 응시자의 환경과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험편의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Michigan State University, 2016; USMLE, 2016).

### 3.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개정에 대해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해 장애 관련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 및 분석하였다. 전문가의견조사 및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었다. 이와 더불어, 미국, 영국, 일본 등의 해외 사례 및 국제조약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와 관련된 제도적·정책적인 개선



을 위해 활용하였다.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

### (1)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주체

-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개정 목적** : 장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주체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로 인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개정안에서는 인식개선 교육 실시 주체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등으로 세분화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 교육 주체를 보다 명료하게 밝히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개정안에서는 일반 기업이나 단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직업재활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는 일반 사기업이나 특정 규모 이상의 단체 역시 장애 인식교육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 「장애인복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

는 주체를 추가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을 보다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장할 수 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사회통합이 바람직하게 이루어지는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주체가 확대되는 것은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2)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의 정의
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
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
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
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
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

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개정 목적** :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따라 서로 달라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파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객관성과 통일성을 높이며,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주체에 교육 내용과 관련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시행령을 통해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방대한 영역이나 내용을 모두 제시하기는 어려우며, 각 장애 유형에 따른 단체 및 기관에 따라 개별적이고 독창적인 교육 내용을 제시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육 실시 방법과 관련해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장애 인식개선을 포함하여 장애인 인권을 향상



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 비장애인과의 비교, 특정 장애인의 업적 과시, 장애 통계의 나열 등 현대의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내용과는 동떨어져 있었으나 개정안을 통해 장애 인권에 기초한 바람직한 인식개선 교육을 구성할 수 있다.

### (3)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

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목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대해서 법적인 강제력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복지법」을 통해 구체적인 법적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교육 결과를 보고하는 것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주체에 대한 간접적인 제재 조치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 대한 관련 자료를 보고함으로써 교육 방법, 교육인원, 교육 횟수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 및 분석할 수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를 보고받을 주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보고 주체의 역할이나 기능을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결과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주체들의 현황 및 실태 파악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 특히, 구체적인 통계 자료는 향후 인식개선의 방법, 교육내용, 방향 등을 재설정하는데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 가능하며 궁극적으로 장애 인식개선 교육과 관련된 제도적 개선에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표 5-1〉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p><b>제16조(사회적 인식 개선 교육)</b>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하여야 한다.</p>	<p><b>제16조(장애 인식개선 교육)</b> ①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li> <li>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li> <li>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li> </ol> <p>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이하 “장애 인식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p> <p>③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의 정의</li> <li>2.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li> <li>3. 장애인의 행동특성 및 능력</li> <li>4. 장애인과 의사소통하는 방법</li> <li>5. 장애인보조기구 및 장애인 편의시설</li> <li>6.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li> </ol> <p>④ 장애 인식개선 교육은 집합 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p> <p>⑤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경우 교육 내용, 방법, 참가인원 등의 교육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개정 목적**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 보고를 함으로써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실태 및 현황 파악이 가능하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미 실시 기관이나 미 결과 보고 기관에 대한 추가적인 제재나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도 실시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후 결과 보고에 대한 기한을 제시함으로써 교육 실시 기관의 책임성과 적극성을 강조할 수 있으며, 제도 정착에 일부분 기여할 수 있다.

〈표 5-2〉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b>제2조의2(장애 인식개선 교육)</b>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라 장애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를 작성하여 교육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표 5-3〉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개정에 따른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별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장애 인식개선 교육 결과보고

기관명				
주소				
담당자 성명				
담당자 전화				
교육기간				
교육 세부사항				
순번/ 실시날짜	교육내용	교육방법	참가인원	강사 성명/소속
1회/				
2회/				
3회/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 부칙

제2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행일 이후 최초로 공고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1. 제2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6년 6월 30일
2. 제28조제5호의 경우: 2017년 1월 1일
3. 제28조제6호의 경우: 2019년 1월 1일

○ **개정 목적**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 대상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가 채용 및 기타 시험을 응시할 때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 및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 등을 포함하여 국가 및 공공기관의 책임성을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과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 역시 규정하고 있어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하는 시험편의 제공의 주체를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험편의 미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부칙에 의하면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은 2017년 1월 1일부터,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험을 응시하는 장애인의 경우 시험편의 유예로 인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주체를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장애인이 채용 및 자격시험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하는 기초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직업 및 고용활동 참여가 증진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표 5-4〉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b>제28조(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b> 법 제46조의2에 따라 장애인 응시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는 기관·단체 및 대상 시험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채용시험</li> <li>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채용시험</li> <li>3.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 실시하는 채용시험</li> <li>4.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가 실시하는 채용시험</li> <li>5. 국가가 실시하는 「자격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li> <li>6. 「자격기본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인자격관리자가 실시하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의3에 따른 공인자격 취득을 위한 시험</li> </ol>

#### 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법 제46조의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
  2. 시험시간 연장
  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
  4. 시험실 별도 배정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개정 목적** : 보조기구 지참, 시험시간 연장, 특수 문제지 및 답안지 제공, 시험실 별도 배정 등과 같은 구체적인 시험편의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대상으로하는 시험편의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장애 유형이나 등급에 따라 구체적인 시험편의의 내용을 고시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시험의 종류나 특성을 적절하게 고려해 장애인 응시자에게 맞는 시험편의를 지정하도록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과 방법을 공개적으로 공표하도록하고 있다.
- **한계점 및 문제점**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미제공에 대한 적절한 법적 조치가 마련되어있지 않아 제도 실시 이후 시행률이 낮을 수 있다.
- **장애인의 권리나 사회변화에 미치는 영향** :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기본적인 시험편의를 제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편의 제공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표 5-5〉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p><b>제37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b> ① 법 제46조의 2에 따른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험의 특성, 장애인 응시자의 장애의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li> <li>2. 시험시간 연장</li> <li>3. 확대 문제지 및 확대 답안지 제공</li> <li>4. 시험실 별도 배정</li> <li>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li> </ol> <p>② 영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려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기관·단체의 장은 편의제공의 기준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p> <p>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p>

〈표 5-6〉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개정에 따른 고시 개정안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20호

「장애인복지법」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16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방법 등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의2제2항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3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 편의제공의 내용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험실시기관의 장”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8조 각 호에 따른 시험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을 말한다.
2. “편의제공”이라 함은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하는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 등을 말한다.
3. “장애인 응시자”라 함은 영 제28조 각 호의 시험에 응시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편의제공 대상자를 말한다.

4. “증빙서류”라 함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 결정에 필요한 서류로서 의사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등을 말한다.

### 제2장 편의제공의 대상·절차·방법 등

**제3조(편의제공의 대상자)** 편의제공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험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법 제32조제1항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로서 장애로 인해 시험응시에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
2.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으나, 기타 특수장애, 일시적 장애 등으로 시험응시에 현저한 어려움이 있는 자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편의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편의제공 여부 등의 결정 절차)**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규칙 제37조의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를 참고하여 해당 시험에 맞는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별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기준과 증빙서류 목록”(이하 “편의제공 기준 등”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시험 공고와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 응시자는 원서접수 당시 게시된 편의제공 기준 등을 확인한 후, 본인의 장애 종류 및 장애등급에 따라 제공받고자 하는 편의제공 사항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에는 증빙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편의제공 신청방법 및 증빙서류 제출 방법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시자가 제출한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장애인 응시자에게 제공할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편의제공 여부 및 그 세부사항을 장애인 응시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제공의 내용·방법 예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예시는 별표1과 같다.

**제6조(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관련 유의사항)** ① 시험 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응

시자에게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으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장애인 보조기구로 인한 부정행위 발생을 예방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애인 응시자가 지참하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장애인 보조기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별표 1]

**장애 종류별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

장애 종류	편의제공 내용·방법 예시
지체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li> <li>·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li> <li>·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li> <li>·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li> <li>· 시험시간 연장</li> <li>· 답안지 대필 지원</li> <li>·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li> <li>· 전담도우미 지원</li> <li>·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li> </ul>
뇌병변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li> <li>·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li> <li>·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좌석간격 조정)</li> <li>· 휠체어 전용책상 제공(휠체어 사용자)</li> <li>·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li> <li>· 시험시간 연장</li> <li>· 답안지 대필 지원</li> <li>·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li> <li>· 전담도우미 지원</li> <li>· 관련서식 확대 제공</li> </ul>
시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확대 문제지 및 확대답안지 제공</li> <li>· 점자 문제지 및 점자답안지 제공 (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li> <li>· 장애인 응시자가 점자정보단말기 및 스크린리더를 이용하는 경우 시험 문제지를 컴퓨터 파일형태(한글파일 등)로 제공</li> <li>· 축소문제지 제공(독서확대기 사용자)</li> <li>· 독서확대기 등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li> <li>·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li> <li>· 답안지 대필 지원</li> <li>· 답안(자료) 작성용 컴퓨터 제공</li> <li>· 시험시간 연장</li> <li>· 음성지원컴퓨터 제공</li> <li>·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li> <li>· 관련서식 점자 제공, 확대 제공</li> <li>· 전담도우미 지원</li> </ul>
청각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원 배치</li> <li>· 응시요령 등 관련자료 서면자료 제공</li> <li>· 장애인 보조기구 지참 허용</li> <li>·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li> <li>·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li> <li>· 필담 면접 허용</li> <li>· 의사전달용 컴퓨터 제공</li> </ul>

장애 종류	편의제공 내용 · 방법 예시
신장 장애인 심장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li> <li>·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li> </ul>
장루 · 요루 장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험 중 배변 · 배뇨 보조기구 교체를 위한 지원</li> <li>· 필요한 경우 시험실 별도 배정</li> <li>·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li> </ul>
기타 시험 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 특성에 대해 면접위원에게 사전고지</li> <li>· 장애 정도를 검토하여 편의 지원 내용 결정</li> </ul>



■ 참고 문헌

국가인권위원회 (2002). 국가인권위원회 2002년도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2016). 장애 인식개선 교육. <https://edu.humanrights.go.kr>

국립재활원 (2016). 장애 인식개선. [www.nrc.go.kr](http://www.nrc.go.kr)

남용현, 윤경인, 홍자영, 정광진 (2011). 2011 장애인식개선교육 개선방안. 경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서울특별시 (2016). 2016년도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시험계획 공고. 서울: 인재채용과.

인권교육및 인권개발의 추진에 관한 법률 (2016). [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

인사혁신처 (2015).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종합 안내서- 수험생이 알고 싶어하는 공무원 채용시험의 모든 것. 서울: 인사혁신처 인력개발국.

인사혁신처 (2016). 2016년도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 [www.mpm.go.kr/innovation2016/NewsPolicy/Newspolicy/index.jsp?...](http://www.mpm.go.kr/innovation2016/NewsPolicy/Newspolicy/index.jsp?...)

장애인뉴스 (2015). 국가공인시험 장애인 시험편의 '제각각' [sdcil.or.kr/bbs/board.php?bo\\_table=B42&wr\\_id=995&page=3](http://sdcil.or.kr/bbs/board.php?bo_table=B42&wr_id=995&page=3)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 (2016). 장애 인식개선. <http://www.wefirst.or.kr>

장애인기본법 (2016). [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

장애인차별금지법 (2016). [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http://world.moleg.go.kr/World/EastAsia/JP/law/2738?pageIndex=144)

장애인복지법 (2016). [www.law.go.kr/](http://www.law.go.kr/)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2016). [www.law.go.kr/](http://www.law.go.kr/)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등에관한법률 (2015). [www.law.go.kr/](http://www.law.go.kr/)

장애인차별금지및구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2015). [www.law.go.kr/](http://www.law.go.kr/)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인천전략. 서울: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16). 보조기기 지원사업. <https://www.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사이버연수원 (2016). 장애 인식개선 교육. <https://cyedu.kead.or.kr>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2016).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www.kesad.or.kr](http://www.kesad.or.kr)

한국장애인재단 (2016). 장애 인식개선. <https://www.herbnum.org/>

한국산업인력공단 (2016). 장애인 응시자 시험편의. <http://www.hrdkorea.or.kr>

---

홍자영, 최종철, 이효성, 진홍섭, 현정훈 (2007). 장애인을 위한 공직부문 필기시험 편의지원 가이드. 경기: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2009). [www.ada.gov/pubs/ada.htm](http://www.ada.gov/pubs/ada.htm)

College Board (2016). Request accommodations on College Board exams.

<https://www.collegeboard.org/students-with-disabilities/request-ac...>

Corrigan, P. W. (2004). Target-specific stigma change: A strategy for impacting mental illness stigma. *Psychiatric Rehabilitation Journal*, 28(2), 113-123.

Department of Justice (2015). Guidance on testing accommodations. [www.asha.org/.../2015/DOJ-Issues-Guidance-on-Testing-Accom](http://www.asha.org/.../2015/DOJ-Issues-Guidance-on-Testing-Accom)

Dijkstra, A. (1982). The cost of being visibly handicapped.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5, 519-541.

Educational Testing Service (2016). Test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https://www.ets.org/research/.../assessing\\_people\\_with\\_disabilities](https://www.ets.org/research/.../assessing_people_with_disabilities)

Equality Act (2010). [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

Evans, J. H. (1976). Changing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n experimental study.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19, 575-579.

Grand, S. A., Bernier, J. E., & Strohmer, D. C. (1982).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as a function of social context and specific disability. *Rehabilitation Psychology*, 27(3), 165-173.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IELTS) (2016). Test accommodations. [www.canberra.edu.au/uc-college/ielts](http://www.canberra.edu.au/uc-college/ielts)

Michigan State University (2016). Resource Center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rcpd.msu.edu/>

Olkin, R. (1999). What psychotherapists should know about disability. NewYork,NY: Guilford.

Parker, R., & Patterson, J. (2013). *Rehabilitation counseling: Basics and beyond*. Austin, TX: Pro-ed.

Rubin, S., & Rosseler, R. (2003). *Foundation of vocational rehabilitation*. Austin, TX: Pro-ed.

Seo, W.& Chen, R. (2009). Attitudes of college students towards people with disabilities. *Journal of Applied Rehabilitation Counseling*, 40(4), 4-9.

Smart, J. (2001). *Disability, society, and the individual*. Gaithersburg,MD:Aspen.

Stovall, C., & Sedlacek, W. (1983). Attitudes of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toward students with different physical disabilities. *College Student Personnel*, 26, 325-330.



- Triandis, H. C. (1971). *Attitude and attitude change*. New York: John Wiley & Sons.
- United Nations (201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ww.un.org/disabilities/convention/conventionfull.shtml](http://www.un.org/disabilities/convention/conventionfull.shtml)
- United Nations ESCAP (2016). *Incheon Strategy to “Make the right real”*  
[www.unescap.org/.../incheon-strategy-“make-right-real”-persons-...](http://www.unescap.org/.../incheon-strategy-“make-right-real”-persons-...)
- United States Medical Licensing Examination(USMLE) (2016). *Test accommodations*.  
[www.usmle.org/test-accommodations/](http://www.usmle.org/test-accommodations/)
- University of Texas (2016). *Services for Students with Disabilities*. [ddce.utexas.edu/disability/](http://ddce.utexas.edu/disability/)
- Wikipedia (2016).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www.wikipedia.org/](http://www.wikipedia.org/)
- Yuker, H. E., & Block, J. R. (1986). *Research with the Attitudes Toward Disabled Persons Scale (ATDP) 1960–1985*. Hempstead, NY: HofstraUniversity.



## 부 록





# [부록1]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 응시자 시험편의 전문가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서비스의 양은 과거에 비해 확대되었으나 아직도 많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인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놀이기구 이용의 거부, 저상버스 부족으로 인한 지체장애인들의 접근성 미흡, 정신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차별 등 장애인들은 여러 종류의 부당한 차별과 편견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장애 관련 단체, 교육기관 등에서 장애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장애의 이해, 장애 유형별 특징의 이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장애인에 대한 에티켓 등과 관련된 내용을 집합강의, 장애체험, 동영상 시청 등과 같은 방법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대상, 교육내용, 교육방법, 범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식개선 교육의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에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가 개정되었으며 장애 인식개선과 관련된 사업,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활동은 대표적인 사회활동 중 하나로서 장애인 및 비장애인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의 고용활동은 직업을 통한 경제적인 자립을 달성하는 수단임과 동시에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취업과 관련된 자격 및 채용 시험에 대한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불충분한 시험편의는 장애인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없게 하는 대표적인 사회적 장벽이며 이로 인해 취업을 하지 못하는 부당한 상황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장애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중요성을 인지하여 2015년 12월에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를 개정하여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시험편의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내용 등을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하위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장애 전문가,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단체 종사자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묻고자 연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공해 주시는 전문적인 의견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와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법령을 구성하는데 유용하게 반영되며 궁극적으로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 교육을 개선함과 동시에 장애인에게 적절한 시험편의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고용활동 및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키는 귀중한 의견입니다. 따라서 본 전문가 의견조사에서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시험편의와 관련해 장애 현장전문가, 정책전문가,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본 연구의 목적에 대해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하위 시행령을 개정하는데 소중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 2월



<b>문 의</b>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 연구1팀 (Fax.02-416-9567) 고아라 연구원 Tel. 02)3433-0720
----------------	--

☐ **설문지 회신 방법** : 작성하신 설문지는 **수당지급조사**와 함께 아래의 이메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아라 연구원 koara2015@koddi.or.kr

### A. 기본정보

1. 소속기관		2. 직함	
3. 성명		4. 전화번호	유선) H.P)
5. 성별	① 남성 ② 여성	6. 연령	세
7. 현 업무 근무년수	약 년 개월	8. 장애유무	① 있음 ② 없음
9. 장애유형			

### B. 「장애인복지법」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의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③국가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④제1항 및 제3항의 사업, 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과 방법, 결과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인식개선을 위해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국민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교육 및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의 문제점과 사업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1-1. 인식개선 교육의 문제점

1-2.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의 문제점(예: 매스미디어, 신문·방송 등)

1-3. 인식개선 교육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1-4. 공익광고 등의 홍보사업(예: 매스미디어, 신문·방송 등)의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2. 현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학생을 대상으로 1년에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의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2-1. 대학과 평생교육시설 등에서 장애 인식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교재 선정의 어려움, 집합 교육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 인식교육을 의무화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을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3.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 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그 내용 및 범위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자료(초등, 중고등용) 내용 (보건복지부 배포용)

- 장애인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과 편견
- 장애인이란?
- 장애인의 분류
- 장애인의 날 소개
- 장애인에 대한 상식점검 ○×퀴즈
- 숫자로 보는 장애인의 삶(통계자료)
- 장애인을 만났을 때 에티켓
- 주요 장애유형별 에티켓 소개
- 관련 애니메이션 시청
- 장애인의 삶 체험해보기
- [과제]학교 및 주변의 장애인시설 점검
- 장애인 인식개선 광고 감상



3-1. 인식개선을 위해 교과서에 포함해야 할 내용

3-2. 인식개선을 위해 교과서에 포함하지 말아야 할 내용

**4.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 직원·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4-1. 교육 내용의 범위  
(예: 인권, 장애인식개선, 장애발생예방, 장애체험 등)

4-1-1. 교육 내용의 개선점

4-2. 교육 방법의 범위  
(예: 집합교육, 온라인/동영상교육, 장애체험교육 등)

4-2-1. 교육 방법의 개선점

4-3. 교육의 주체(강사)

(예: 특수교사, 장애인 강사, 복지관 종사자 등)

4-4. 교육 실시 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할 결과의 내용 및 범위

(예: 참여인원, 교육내용, 예산사용 내역 등)

5.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C. 「장애인복지법」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의 하위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

**제46조(고용 촉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이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애인에게 적합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권유할 수 있다.

**제46조의2(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가 실시하는 자격시험 및 채용시험 등에 있어서 장애인 응시자가 비장애인 응시자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의제공 대상 시험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편의제공의 내용·기준·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6. 장애인 응시자를 위해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범위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시험(자격 및 채용시험 등)의 범위에 대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6-1.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의 대상

6-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가 시험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대상 시험의 범위 및 종류

7.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의 내용·기준·방법 등과 관련해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2015년도 국가공무원 공개 및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장애유형별 편의지원 내용 및 증빙서류

장애 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지체장애	중증 상지지체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선택형 시험 대필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없음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달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 상지지체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없음	
	하지지체	· 휠체어 전용책상(휠체어 사용자)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없음	
뇌병변장애	중증 뇌병변 (1급~3급)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선택형 시험 대필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없음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달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경증 뇌병변 (4급~6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없음	
시각장애	▶ 1급~2급 ▶ 3급호 4급2호 중 점자사용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7배, 논문형 1.5배) · 음성지원컴퓨터 · 점자문제지, 점자답안지(점자정보단말기 사용자)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축소문제지(확대독서기 사용자)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의사진단서 1부 없음 (단, 3급2호 4급2호는 의사진단서 1부)	· 장애특성 면접위원 사전고지 · 전달도우미 지원 · 자료작성용 컴퓨터 제공 · 관련서식 확대 제공
	3급~6급	· 시험시간 연장(선택형 1.5배, 논문형 1.2배) · 5급2호는 시간연장 불가 · 6급은 좋은 눈의 교정시력이 0.3이하일 경우 시간연장 가능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 [논문형 시험] 답안작성용 컴퓨터	없음 (단, 6급은 의사진단서 1부)	

장애 유형(등급)		필기시험		면접시험 (증빙서류 불요)
		편의지원 내용	증빙서류	
청각장애	2급~6급	· 수화통역사 배치 · 응시요령 등 서면자료 제공 · 보조공학기기 지참 허용	없음	· 면접시간 20분 이내 연장 · 장애 특성 면접위원 사전 고지 · 의사전달보조요원(수화통역사 등) · 필담면접, 의사전달용 컴퓨터 · 관련자료 등 서면제공
기타	▶ 특수 및 중복장애 ▶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한정한 지장이 있는 자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편의지원 내용 검토 후 의사전달소견서 제출여부 결정	· 장애정도를 검증하여 결정
	임신부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높낮이 조절 책상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소견서 1부	
	[논문형시험] 과민성대장증후군 또는 과민성방광증후군	· 별도시험실 배정(좌석간격 조정) · 시험 중 화장실 사용 허용	의사전단서 1부 의사소견서 1부 (서로 다른(상급)종 합병원 에서 발급 받아야 함)	
* 확대문제지 : A3 규격의 118%(14point), 150%(18point)로 확대된 2종류 중 택1 * 확대답안지 : A3 규격의 표기형과 기입형 총 2종류 중 택1 * 축소문제지 : A4 규격의 82%(10point)로 축소된 문제지로 확대독서기 사용자에게 한하여 신청				

7-1.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내용

7-2.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편의 제공의 기준

8. 장애인 응시자를 위한 시험 편의와 관련하여 가지고 계신 의견을 자유롭게 작성해 주십시오.

귀한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부록 2]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추진에 관한 법률(일본)

(2000년 12월 6일 법률 제147호)

### 제1조 목적

이 법률은 인권존중의 재정 관한 인식이 고조되어 사회적 신분, 가문, 인종, 신조(신념) 또는 성별에 의한 부당한 차별발생 등 인권침해 현상과 권리에 관한 내외 현상을 감안하여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지방공공단체(공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정함으로써 인권옹호에 더욱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정의

이 법률에서 인권교육이라 함은 인권존중의 정심함양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활동을 말하며 인권계발이라 함은 국민들에게 인권존중의 이념을 보급시켜 인권존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이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홍보와 이외의 계발활동(인권교육제외)을 말한다.

### 제3조 기본이념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권교육과 인권계발은 학교, 지역, 가정, 직장과 이외의 다양한 곳을 통해서 단계별로 국민의 인권존중 이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그것을 체득 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기회의 제공, 효과적인 방법 활용, 국민의 자주성 존중 및 시행 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취지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전조에 정해진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의 기본이념(이하 '기본이념')에 따라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의 제정 및 시행할 책무가 있다.

### 제5조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는 기본이념에 따라서 국가와의 연대를 도모하며 그 지역의 실정을 토대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대한 정책의 제정 및 시행할 책무가 있다.

### 제6조 국민의 책무

국민은 인권존중의 정심함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의 실현에 기여가 되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7조 기본계획의 책정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기본적인 계획을 책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8조 년차보고**

정부는 매년 국회에 정부가 강구한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제9조 재정상의 조치**

국가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에 관한 정책을 실시하는 지방공공단체(지방자치단체)에 당해 사업의 위탁과 그 외의 방법에 대해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 **제1조 시행기일**

이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시행 한다. 단, 8조의 규정은 이 법률의 시행일을 포함한 년도의 다음 년도 이후에 시행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계발 정책부터 적용 한다.

#### **제2조 재검토**

이 법률은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인권옹호시책추진법(1996년 법률 제320호) 제3조 제2항에 근거한 인권침해의 경우에 피해자 구제정책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대하여는 인권옹호추진심의회에의 조사 심의 결과에 따라 재검토 하도록 한다.



##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연구

---

발행일 : 2016년 6월

발행인 : 황화성

발행처 : (재)한국장애인개발원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22 이룸센터 5층

Tel. 02-3433-0600

Fax. 02-3433-0463

<http://www.koddi.or.kr>

편집·인쇄 : 한국나눔복지연합회

---

ISBN 978-89-6921-217-7

※ 본 연구보고서의 내용을 무단 복사하는 것을 금합니다.